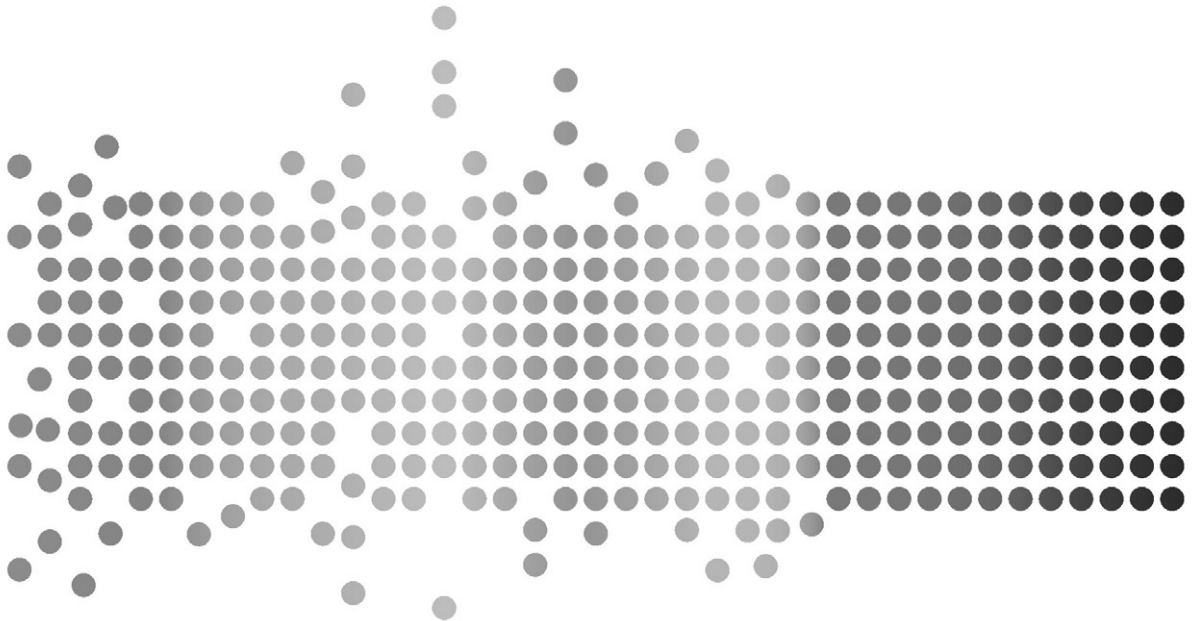


미래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

김용하 · 이삼식 · 배다영 · 최효진 · 이지혜
김태홍 · 서문희 · 이규용 · 이미화 · 이 석
이진면 · 장지연 · 정기선 · 황수경



연구보고서 2011-56

미래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

발 행 일 2011년 12월
저 자 김 용 하 외
발 행 인 김 용 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전 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대명기획
가 격 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978-89-8187-856-6 93330

제1장 배경	11
제2장 인구변동과 문제점 진단	15
1. 인구현황 및 전망	15
2. 인구변동의 위험	17
3. 인구문제 진단	22
제3장 외국의 인구정책	33
1. 주요국의 인구전략	33
2. 주요국 인구전략의 평가 및 시사점	43
3. 인구전략 유형 인구변동 시뮬레이션	47
제4장 우리나라 인구정책 평가	67
1. 성과	67
2. 한계	70
3. 시사점	71
제5장 미래 국가 인구전략	75
1. 인구전략 수립 환경분석	75
2. 중장기 단계별 인구전략	80
3. 세부인구전략 I: 출산율 제고(인구안정 선제투자)	91
4. 세부인구전략 II: 고용률 제고 및 외국인력 활용	115

제6장 국가 인구전략의 기반조성 133

1. 적정인구유지 관련 ‘(가칭)보성보호육아기금’ 구축 133
2.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가적 역량결집 134

참고문헌 135

부 록 141

1. 2011년 출산율 추정 및 국민인식조사 개요 141
2. 2011년 출산율 추정 및 국민인식조사 주요 결과 141
3. 2011년 출산율 추정 및 국민인식조사표 152

표 목차

〈표 2- 1〉	북한 인구센서스 결과(1993, 2008)	29
〈표 3- 1〉	주요국 이민자 유입이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효과	44
〈표 3- 2〉	외국 인구전략의 우리나라 적용시 시사점	63
〈표 5- 1〉	아시아 주요 국가의 인구고령화 전망	78
〈표 5- 2〉	GDP대비 가족지출 비율에 따른 합계출산율	94
〈표 5- 3〉	시기별 저출산 중점과제(2010-2050)	97
〈표 5- 4〉	가구형태 별 총 임금대비 조세격차 비교(2010)	107
〈표 5- 5〉	북한의 특이세대 인구 규모 및 비중(2015년 통일 가정) ...	129
〈표 6- 1〉	기금조성 내역(안)	134

그림 목차

[그림 2- 1]	인구증가율 추이(1970-2060)	16
[그림 2- 2]	출생아수와 사망자수(1970-2100)	16
[그림 2- 3]	노인인구비율과 경제성장률(2010, OECD국가)	19
[그림 2- 4]	주요국의 노인인구비율 비교(2010-2050)	20
[그림 2- 5]	경제성장률 전망	20
[그림 2- 6]	최근 출산율 및 1983년도 인구대체수준 유지시 인구 규모	23
[그림 2- 7]	최근 출산율 및 1983년도 인구대체수준 유지시 인구 고령화	23
[그림 2- 8]	최근 출산율 유지시와 목표출산율 달성시 총인구 전망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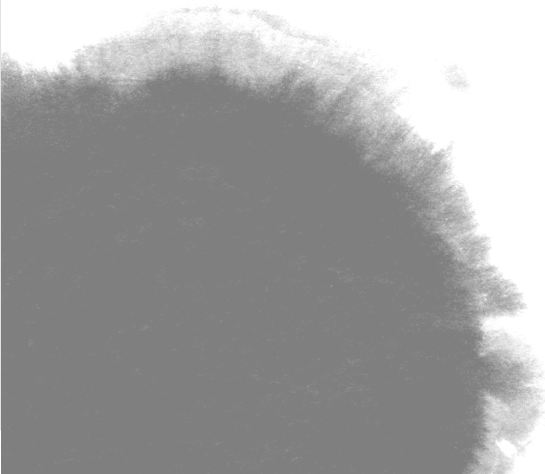
[그림 2- 9]	최근 출산율 유지시와 목표출산율 달성시 인구고령화 전망	24
[그림 2-10]	우리나라의 부양비 변화 추이(1960-2100)	25
[그림 2-11]	2030년 이전의 노동수급 전망	26
[그림 2-12]	2030년 이전의 고용률 개선 목표	26
[그림 2-13]	2030년 이전의 고령자 고용률 개선 목표	27
[그림 2-14]	체류외국인 증감추이(2004-2010)	27
[그림 2-15]	결혼이민자 증감추이(2004-2010)	28
[그림 2-16]	북한인구전망: 총인구(2010-2100)	29
[그림 2-17]	북한인구전망: 노인인구비율(2010-2100)	29
[그림 2-18]	중장기전 인구전략의 필요성	30
[그림 3- 1]	캐나다 인구변동요인과 인구전망	34
[그림 3- 2]	호주 인구변동요인과 인구전망	37
[그림 3- 3]	미국 인구변동요인과 인구전망	38
[그림 3- 4]	프랑스 인구변동요인과 인구전망	41
[그림 3- 5]	영국 인구변동요인과 인구전망	43
[그림 3- 6]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지출비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	46
[그림 3- 7]	미국 합계출산율 및 순이민율 변화	50
[그림 3- 8]	캐나다 합계출산율 및 순이민율 변화	51
[그림 3- 9]	영국 합계출산율 및 순이민율 변화	53
[그림 3-10]	프랑스 합계출산율 및 순이민율 변화	55
[그림 3-11]	일본 합계출산율 및 순이민율 변화	57

[그림 3-12]	독일 합계출산율 및 순이민율 변화	58
[그림 3-13]	외국 인구전략 적용시 우리나라 총인구 전망	60
[그림 3-14]	외국 인구전략 적용시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전망	61
[그림 3-15]	외국 인구전략 적용시 우리나라 인구 중 외국인 비율 전망	62
[그림 4- 1]	한국 인구전략의 전개과정	68
[그림 4- 2]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	69
[그림 4- 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	70
[그림 5- 1]	대륙별 인구규모 변동(1970-2050)	76
[그림 5- 2]	아시아 주요 국가별 인구규모 변동(1970-2050) ...	77
[그림 5- 3]	출산율 시나리오에 따른 GDP 및 1인당 GDP 변동 ·	79
[그림 5- 4]	적정인구와 통계청 추계인구 규모 비교(2010-2080)	82
[그림 5- 5]	적정인구와 통계청 추계인구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교	83
[그림 5- 6]	적정인구와 통계청 추계인구 노인인구비율(65세 이상) 비교	83
[그림 5- 7]	안정인구 규모(만명) 및 고령화(%)	85
[그림 5- 8]	최근 출산율 유지시 2100년 인구모습	85
[그림 5- 9]	정부목표 달성시 2100년 인구모습	86
[그림 5-10]	안정인구 2100년 인구모습	86
[그림 5-11]	미래인구전략	87
[그림 5-12]	OECD 국가 출산율과 정책수준	90

[그림 5-13]	프랑스 출산율 추이와 정책변화	93
[그림 5-14]	저출산대책 기본 방향	95
[그림 5-15]	다양한 가정 지원 방안	115
[그림 5-16]	고용률 제고 목표(2010-2050)	116
[그림 5-17]	외국인 유입의 효과: 총인구	124
[그림 5-18]	외국인 유입의 효과: 고령화(노인인구비율)	124
[그림 5-19]	외국인 유입의 효과: GDP	125
[그림 5-20]	외국인 유입의 효과: 1인당 GDP	125
[그림 6- 1]	저출산 대응을 위한 각 부문의 역할	134

01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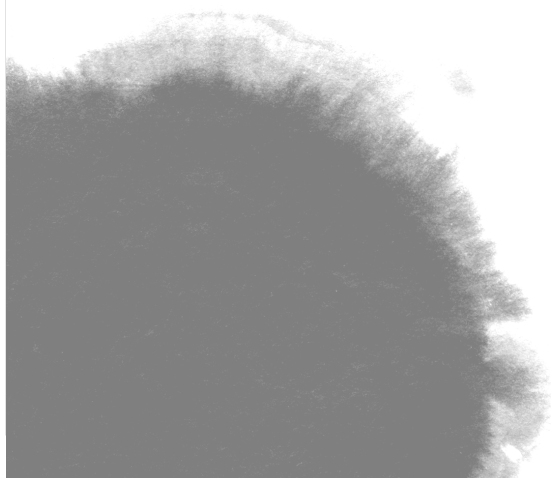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제1장 배경

- 인구의 급격한 변동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국민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는 경향성 존재
 - 그로 인하여 출산·육아에 대한 희망과 노후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보다 좌절 혹은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 존재
- 한편, 정부는 2010년도에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1년에 인구추계(2010-2060)를 다시 실시함
 - 2011년도 인구추계결과, 인구감소 시기와 인구고령화 속도가 기존과 다르게 전망됨
 - 총인구는 2006년 추계에 따르면 2018년 49,340,350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11년 추계에 따르면 2030년 52,160,065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50년 총인구는 2006년 추계시 42,342,768명 → 2011년 추계시 48,121,275명
 - 2050년 노인인구비는 2006년 추계시 38.2% → 2011년 추계시 37.4%
 -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006년 추계시 22,423,931명 → 2011년 추계시 25,347,026명

- 따라서 향후 인구 변동과 사회경제 간의 연관성에 관한 기간별 진단 필요
 - 베이비붐세대 은퇴, 초 저출산 세대(2000년 이후 출생) 노동층 진입, 100세 시대 도래 등의 요소 고려
- 인구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인구위험 관리(Population Risk Management) 필요
 - 경제성장관리(인구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영향)
 - 인적자원관리(학령인구, 병력자원 등)
 - 사회보장 및 재정부담 관리(노후소득 및 건강보장, 사회보장 예산)
 - 세대간 갈등 관리
- 이를 통해서 국민에게 인구변동 위험에 대한 막연한 불안보다 노력에 따라 성공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희망메시지 전달

02

인구 변동과 문제점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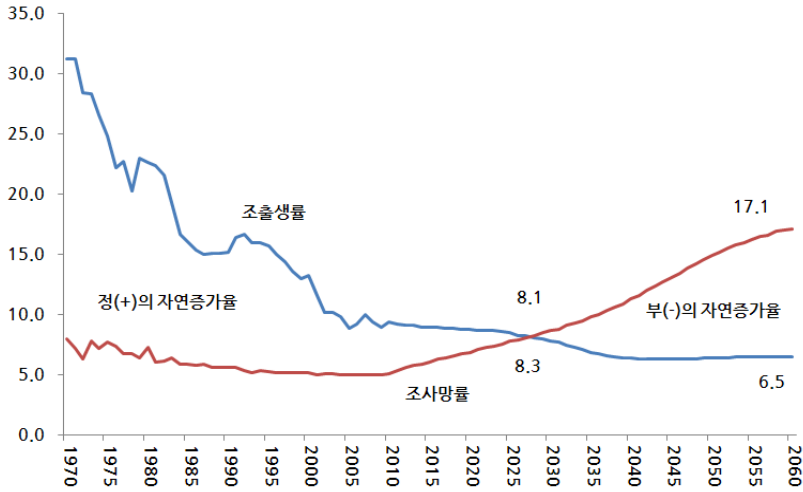


제2장 인구변동과 문제점 진단

1. 인구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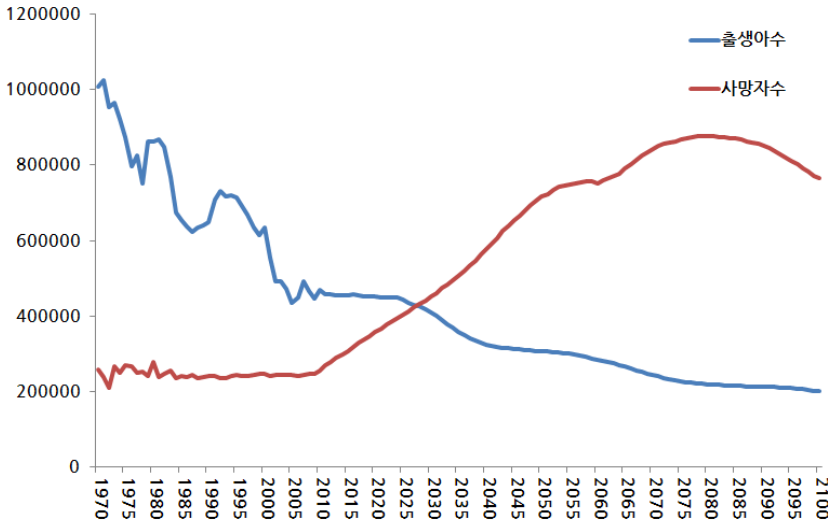
- 다산소사(多産少死)에서 소산다사(少産多死)로의 인구전환으로 자연 증가율 감소
 - 베이비붐 세대가 출생한 시기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3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1975년 이후 급감하여 1983년 인구대체수준에서 2005년 1.08명까지 감소, 2010년 1.23명으로 세계 최저수준 지속
 - 1970년 기대수명은 남성 58.7세, 여성 65.6세였으나 2009년 현재 남성 77세, 여성 83.8세로 급격하게 증가 (남성 18.3세, 여성 18.2세 증가)
 - 저출산, 저사망으로 인구증가율은 1970년 23.2명(인구천명당)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4.3명으로 1970년의 약 1/4 수준임.
 - 2028년부터 부(負)의 성장(출생 425천명, 사망 430천명), 2060년에 출생 285천명, 사망 751천명 사망이 출생을 압도예정

[그림 2-1] 인구증가율 추이(1970-2060)



자료: 통계청(2011), KOSIS

[그림 2-2] 출생아수와 사망자수(1970-2100)



자료: 통계청(2011), KOSIS, 2060년 이후는 본 연구에서 추계.

2. 인구변동의 위험

□ 생산가능인구 감소

- 노동력 부족으로 노동수급 불균형 전망
 - 고성장 시 현재의 고용률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17년경부터, 저성장 시 2024년부터 노동공급의 감소현상 발생 가능
 - 취업률은 2010년 96.6%, 2020년 기준 성장 98.3%(고성장 100.3%, 저성장 97.8%), 2030년 104.6%(107.1%, 102.6%)로 추정
 - 청년층 노동 수급 불균형 전망
 - 2010년 취업자수 유지를 위한 연도별 요구취업자수는 2020년 62만명에서 2050년에 217만명으로 증가(김상호, 2011)

□ 부문별 미스매치

- 학령인구 감소로 2020년 유치원 5천명, 초등학교 18천명, 중학교 9천명, 고등학교 35천명, 대학 74천명 교사(교수) 초과공급 예상(강동욱, 2011)
 - 학교는 2020년 798개교(초등 388, 중학 251, 고등 159) 초과 공급
 - 2016년부터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 초과(2020년 71천명, 2030년 218천명)
- 병력규모를 2020년까지 517천명으로 축소·유지시, 2022년부터 현역가용자원 부족(20년대 중반 이후 연간 4~6만명) (조관호 외, 2009; 조영진, 2010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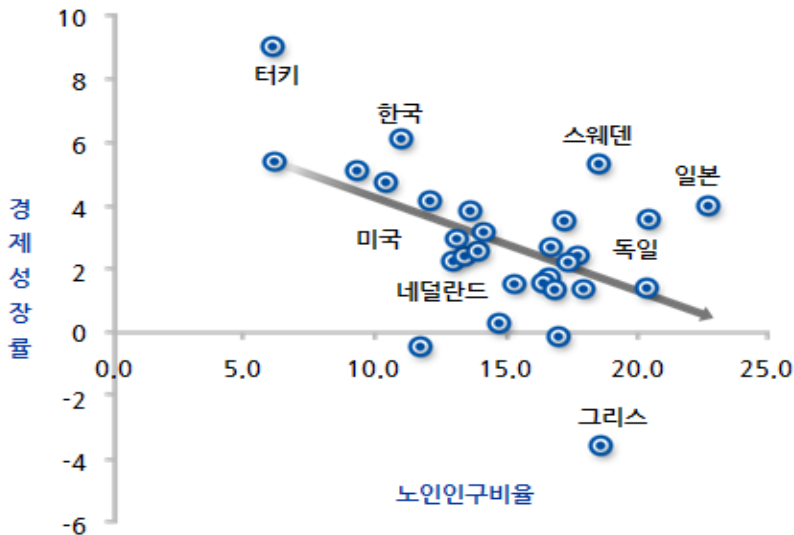
□ 노인부양부담 증가

- 국민연금 기금소진연도는 2059년(2차계획 목표출산을 달성시도 동일)
 - GDP대비 총지출은 2010년 0.8% → 2080년 5.9% → 2100년 7.8%(2차계획 목표출산을 도달시 2080년 7.7%, 2100년 14.3%)(윤석명, 2011)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민의 질병부담
 - 2015년 의료비부담은 암(4.3조원), 고혈압(2.7조), 대뇌혈관(1.7조), 기타배병증(1.4조), 신부전(1.4조), 골관절염(1.3조), 당뇨병(1.3조) 등의 순(신의철 외, 2011)
 - 2050년의 경우 암(5.9조), 고혈압(4.5조), 대뇌혈관(3.8조), 치매(2.7조), 골관절염(2.5조), 기타배병증(2.4조), 당뇨병(2.2조) 등의 순
 - GDP대비 건강보험지출비중은 2020년 5.24~7.13%, 2050년 5.64~21.74% 전망(신영석, 2011)
 - 건강보험지출은 2020년 78조~93조, 2050년 161~623조원 추정
 - 필요보험료율은 2020년 8.21~9.73%, 2050년 9.91~38.17% 추정
 - 장기요양보험 지출규모는 2015년 4.7조~5.1조 예상(김진수, 2011)
 - 필요보험료율은 2010년 6.55%에서 2025년 9~12%, 2050년 22~28%
 - GDP대비 비율은 2015년 0.3%, 2030년 0.63~0.75%, 2050년 1.7~2.1% 예상

□ 인구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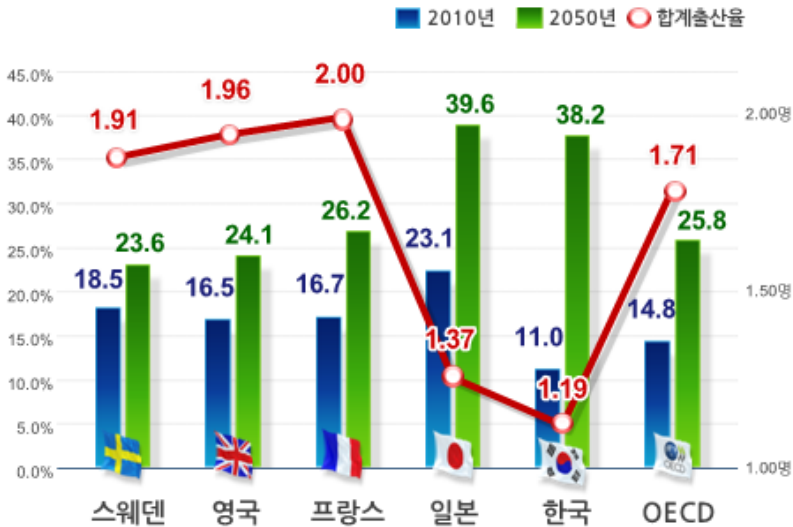
- OECD 국가의 노인인구비율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보면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은 경향을 보임. 인구총량보다도 인구구조가 중요함
- 저출산 현상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은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율이 높지만 2050년 이르면 25% 내외의 노인인구비율을 유지
-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스웨덴, 영국, 프랑스보다 낮아질 가능성 존재

[그림 2-3] 노인인구비율과 경제성장률(2010, OECD 국가)



자료: OECD Stat (<http://stats.oec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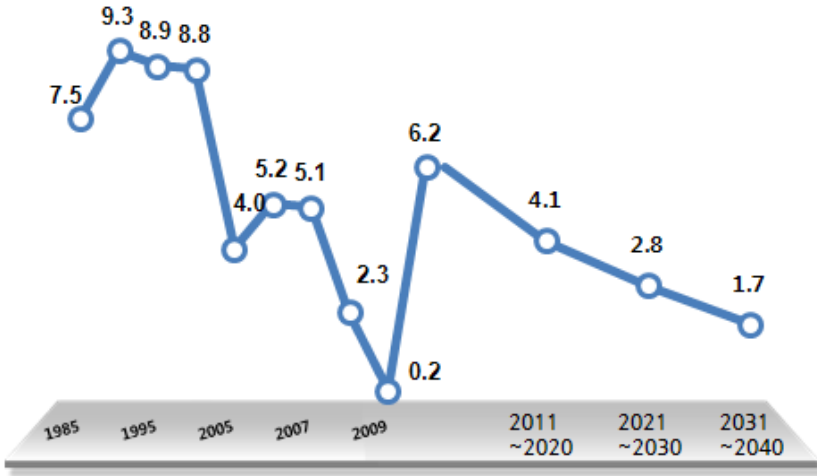
[그림 2-4] 주요국의 노인인구비율 비교(2010-2050)



자료: OECD Stat (<http://stats.oecd.org>)

- KDI 전망(2010)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점차적으로 하향하여 현재 4%대에서 2%~1% 대로 떨어짐
- 따라서 중장기적인 경제성장률 관리는 인구의 관리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인구를 주어진 변수로 볼 것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변수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 노인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증가와 세대갈등 문제도 고려 필요

[그림 2-5]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한국개발연구원(2010), 미래비전 2040.

□ 국가재정부담 가중 및 세대간 갈등 증폭

- 고령화에 따라 사회보장지출이 증가하나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세입기반이 약화되어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재정적자 확대 전망
 - 2050년에 GDP의 10% 수준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2009년도 재정수입·지출 기준)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 및 지출 감축 필요(성명기, 2009)
 - 2020년 보건·의료·교육 등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총지출 37% 증가(총 세입 15%만 증가), 재정수지는 35조원으로 악화 전망
 - 저출산·고령화관련 정부지출이 2060년 GDP의 13%로 G7 평균(약 4%)의 3배 수준 예상
- 재정 안정화를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부담 증가로 세대 간 갈등 우려(이삼식 외,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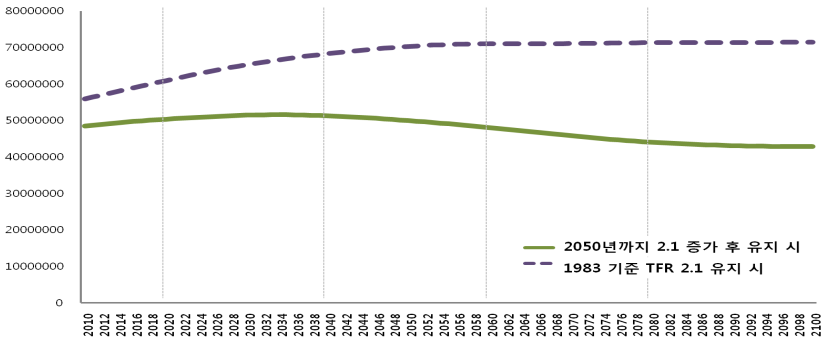
- 조세부담률은 2050년까지 현재보다 4~5%p(또는 20~25%)
상향조정 필요
- 국민부담률도 6~7%p(또는 22~26%) 상향 조정 필요

3. 인구문제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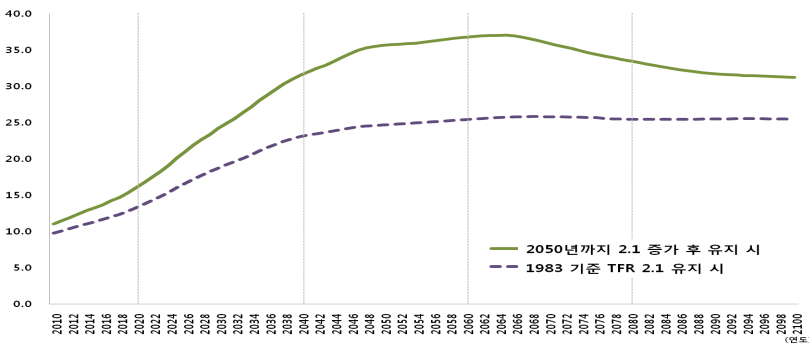
가. 총인구

- 고출산과 저출산 모두 경제·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인구대체수준 이상의 고출산율이 지속될 경우에는 경제성장 지체, 혼잡비용 증가, 환경문제 등 과잉인구(Over-population) 문제 발생 가능
 - 예로, 1983년 당시 인구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이 지속된다 고 가정할 경우 총인구는 1983년 3,991만명에서 2010년 5,596만명, 2050년 7,032만명, 2100년 7,151만명(2010년 현재 남북한인구 7,273만명 수준)으로 급격 증가 전망
 - 이와 반대로 현재의 초저출산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총인구는 2010년 4,852만명에서 2050년 4,454만명, 2100년 2,184만명으로 급감 전망
 -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depopulation)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

[그림 2-6] 최근 출산율 및 1983년도 인구대체수준 유지시 인구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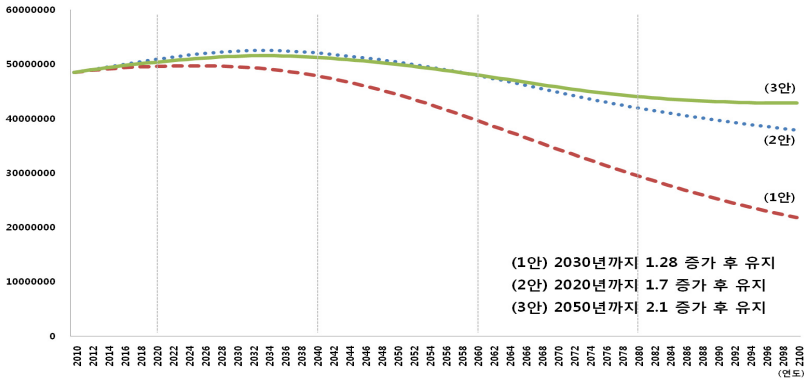
[그림 2-7] 최근 출산율 및 1983년도 인구대체수준 유지시 인구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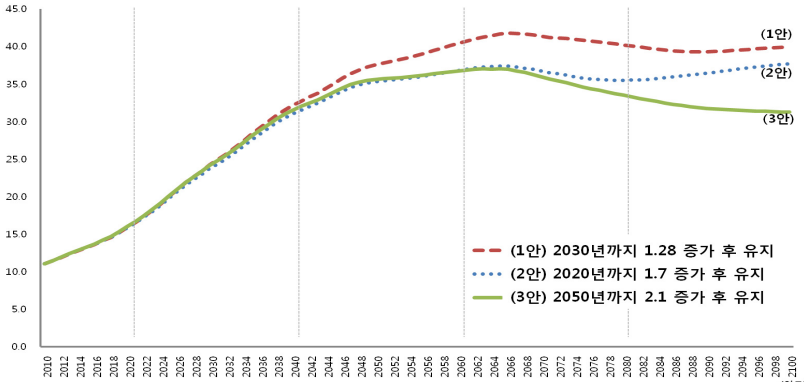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의 목표출산율(2020년 1.7 도달) 유지 가정 시에는 현 출산율 유지 가정 시에 비해, 총인구 감소폭은 다소 적어질 것이나 인구구조의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심각
 - 목표출산율 달성시 총인구는 2050년 5,044만명, 2100년 3,791만명으로 최근 출산율 유지시와 비교하여 2050년 590만명, 2100년 1,608만명 더 많을 것으로 전망
 - 목표출산율 달성 시에도 인구감소문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심화될 우려

- 목표출산을 달성시 인구고령화 수준은 2050년 35.3으로 최근 출산을 유지시 37.6%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음
- 결과적으로 목표출산을 달성 시에도 부양부담 등으로 인하여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 담보 곤란
 - 노년부양비(2050년) 목표출산율달성 66.9, 최근출산율유지 70.6
 - 총부양비(2050년) 목표출산율달성 89.5, 최근출산율유지 88.0

[그림 2-8] 최근 출산율 유지시와 목표출산율 달성시 총인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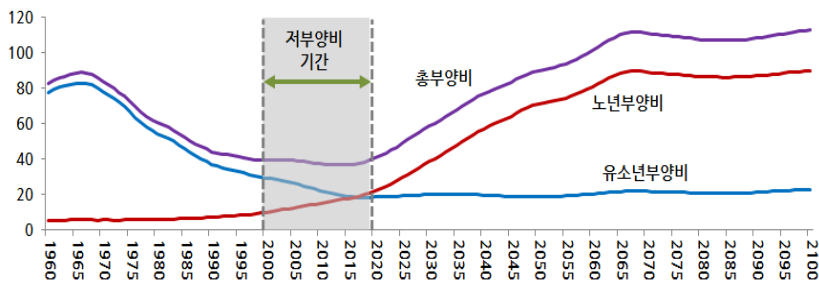
[그림 2-9] 최근 출산율 유지시와 목표출산율 달성시 인구고령화 전망



□ 인구부양비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담해야 할 총부양비는 2012년 36.8로 최저점에 도달 (2007-2018년 39미만으로 최저구간)한 후 계속 증가하여 2067년 111.6에 도달 전망
- 2010년을 중심으로 전후 20여년은 부양비율이 최저가 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음 (이전기간은 유소년부양비가 높은 기간, 이 후기간은 노년부양비가 높은 기간)
 - 향후 10년간은 인구측면 성장잠재력이 충분한 기간
- 저부양비율 기간동안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국가적 정책과제

[그림 2-10] 우리나라의 부양비 변화 추이(1960-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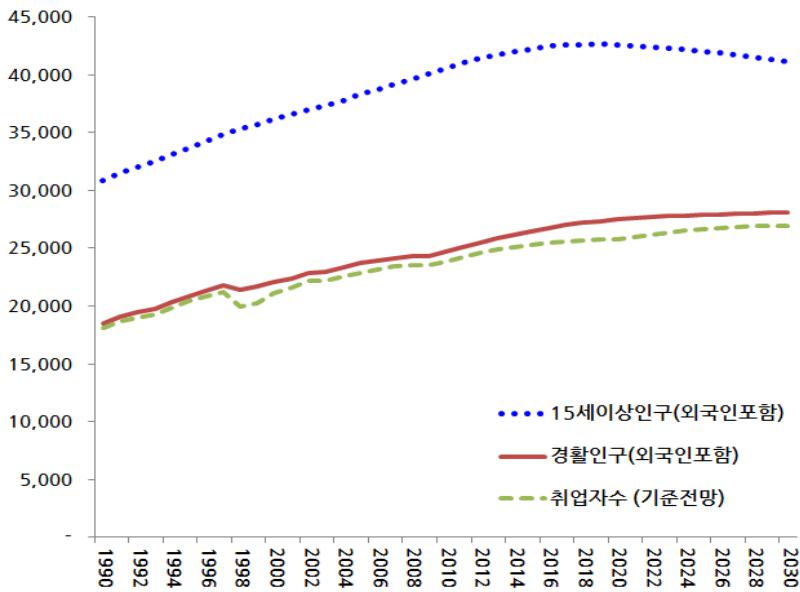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1), KOSIS, 2060년 이후는 본 연구에서 추계.

□ 생산인구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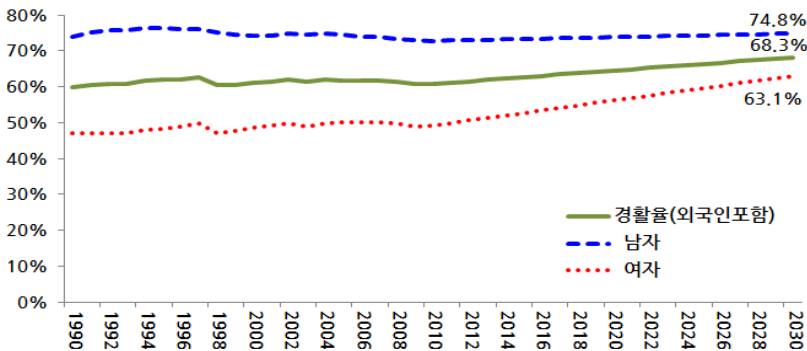
-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2년 총인구 중 73.1%로 최저점에 도달하며, 향후 계속 감소하여 2060년부터 50% 미만으로 낮아질 전망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실업, 낮은 여성고용률, 중고령층 노동인구의 존재 등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Buffer가 존재함으로써 2030년 까지는 공급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수급이 오히려 균형상태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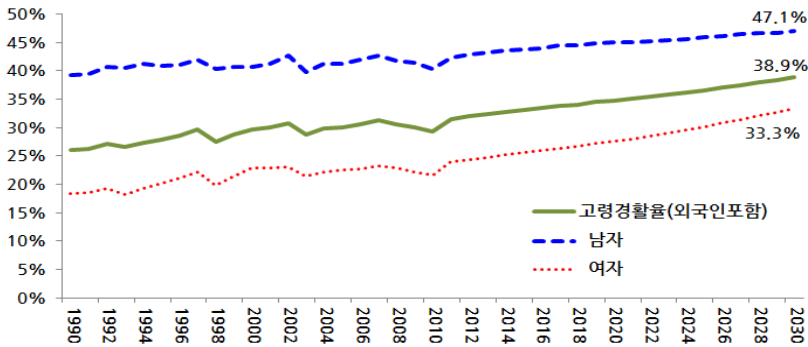
[그림 2-11] 2030년 이전의 노동수급 전망



[그림 2-12] 2030년 이전의 고용률 개선목표



[그림 2-13] 2030년 이전의 고령자 고용률 개선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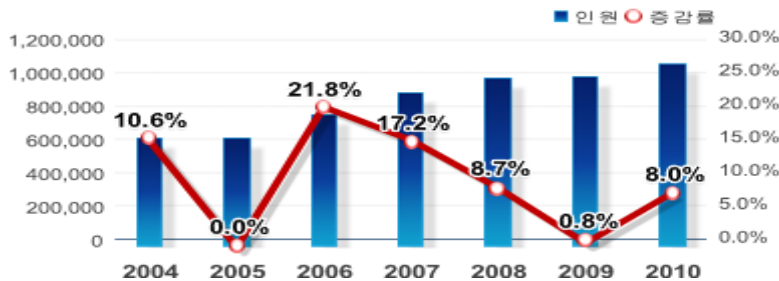


나. 외국인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체류외국인은 2000년 482천명에서 2011년 11월 1,393천명 (총인구의 2.7%)으로 증가
 - 외국인인력 603천명(비전문 555천명, 전문 48천명), 불법체류자 169천명, 결혼이민자 144천명, 유학생 91천명 등
 - 현재 외국인 인력정책은 중장기적 인구변동 관점보다 필요인력의 충원이라는 관점에서 단기적 대응방식 유지

[그림 2-14] 체류외국인 증감추이(2004-2010)



자료: 법무부(2011), 2010년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그림 2-15] 결혼이민자 증감추이(2004-2010)



자료: 법무부(2011), 2010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다. 북한인구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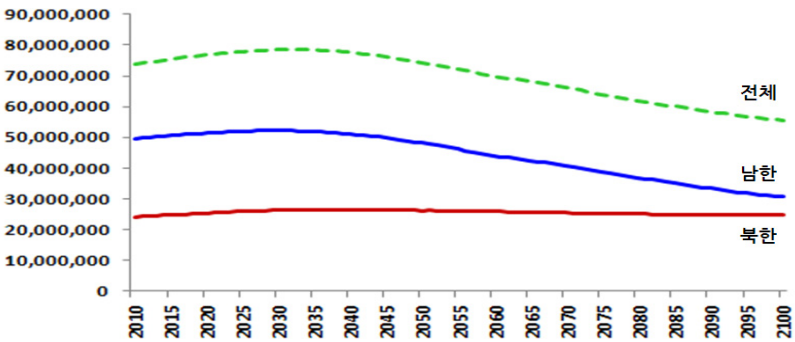
- 남북한 인구통합은 한국의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되기 어려움
 - 특히 통일 후 북한인구 대량 남하 시 북한은 노동력 이탈로 경제성장 지장, 남한은 혼잡비용과 임금복지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전망
- 남북한 인구통합은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인구문제를 악화시키는 부정적 인구충격으로 작용할 우려
 - 영유아 시기 장기간의 식량난으로 정상적인 생산가능인구로 성장 불가, 상당수 사실상 사회적 피부양인구로 전락 가능
- 남북한 별개 국가로 존재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북한 인구는 한 국경제에 중요한 가용 노동력의 원천으로 작용
 - 북한인구 중 노동력(일부)만을 투자 형태로 이용 가능

〈표 2-1〉 북한 인구센서스 결과(1993,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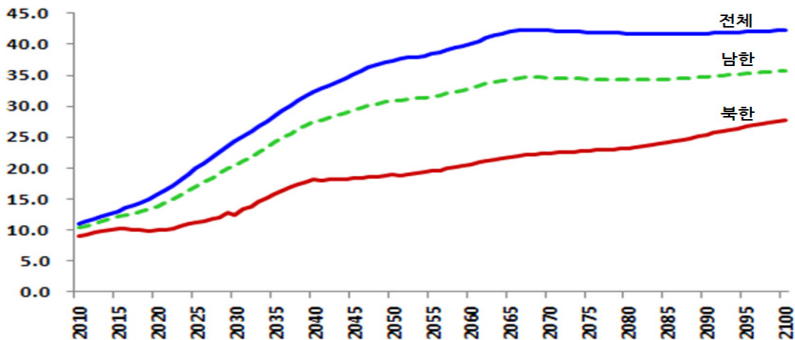
	1993년	2008년
총인구(명)	21,212,378	24,052,231
성비	94.9	95.1
도시인구 비율(%)	60.9	60.6
인구구조(%)		
0-14세	26.9	23.2
15세-64세	67.7	68.1
65세 이상	5.4	8.7
합계출산율(TFR)	2.1	2.0
평균수명(세)	72.7	69.3
평균수명(남자)	68.4	65.6
평균수명(여자)	76.0	72.7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 인구일제조사, 2011

〔그림 2-16〕 북한인구전망: 총인구(2010-2100)



〔그림 2-17〕 북한인구전망: 노인인구비율(2010-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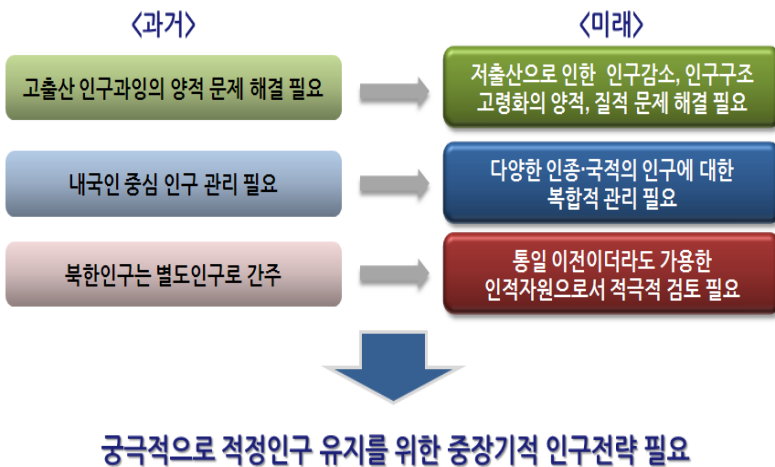


라. 인구문제 점검

□ 인구문제 점검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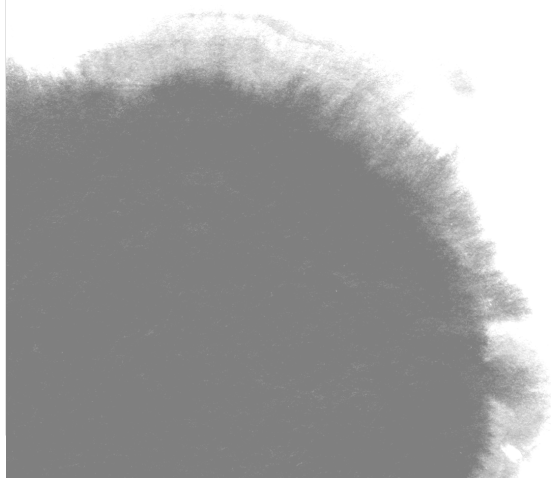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 과잉인구도 경제·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이나 과소인구 및 인구구조 고령화도 국가경쟁력 약화를 야기하는 새로운 인구문제로 등장
- 인구의 양적, 질적 변화에 따라 인구정책도 탄력적인 변화가 필요

[그림 2-18] 중장기적 인구전략의 필요성



03

외국의 인구정책



제3장 외국의 인구정책

1. 주요국의 인구전략

□ 캐나다

- 총 인구는 1970년 2,172만명에서 2010년 3,402만명, 2050년 4,364만명으로 지속 증가 전망(고령화수준은 7.9% → 14.1% → 24.9% 전망)
 - 30년 이상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 유지(2010년 1.69)로 1990년대 중반부터 자연증가보다 이민증가가 인구증가 주도(2006년 인구증가의 2/3는 이민, 1/3은 자연증가가 기여)
- 이민정책 변천
 - 1800년대 중반-1967년 배타적 이민정책 시행(중국인 이민 약화 목적)
 - 1967년 이민법은 인종차별 철폐(사회·경제적 목적 증진, 가족 재통합, 난민 보호 규정)
 - 2002년 이민·난민보호법은 세계적인 이민 압박과 9.11이후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을 난민 관련내용에 반영
 - 영구이민은 경제(숙련노동자, 사업이민, 입주 돌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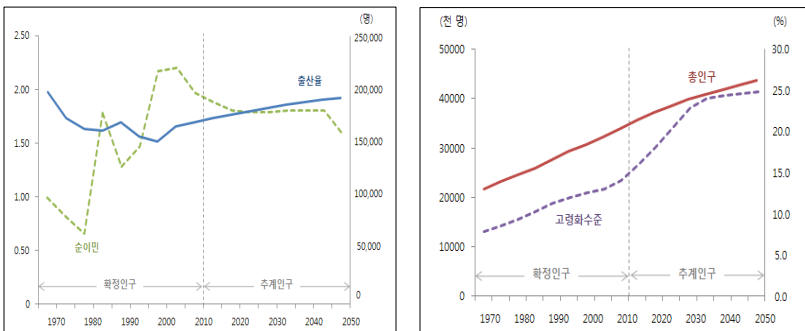
공사), 가족, 난민 등 3개 범주로 재분류하여 유지

- 2008년 이민·난민보호법 개정으로 정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민신청 비수용(숙련노동자의 근로능력 강조)
- 2010년 이민계획 조정
 - 경제회복의 중요성, 신규신청자 규모관리, 신청자의 공평성 확보 등을 고려, 신청자 규모를 연 20천명, 29직종당 유경험자 최대 1천명 제한

○ 이민정책 전략

- 캐나다인의 건강·안전·안보 보장 및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에 이익이 되는 이민(이민자의 소득 안정화 등 강력한 경제성장 지향)
- 캐나다 폭넓은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이민원칙의 국제적 인식과 수용, 그리고 난민의 보호(2010년 19~26천명 보호)
- 이민자의 성공적 사회통합과 캐나다 시민으로 전환(2012년까지 이민자 소득이 평균이상, 이민자에 의한 80% 기부, 20% 자원봉사)

[그림 3-1] 캐나다 인구변동요인과 인구전망



자료: UN(2011),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0

□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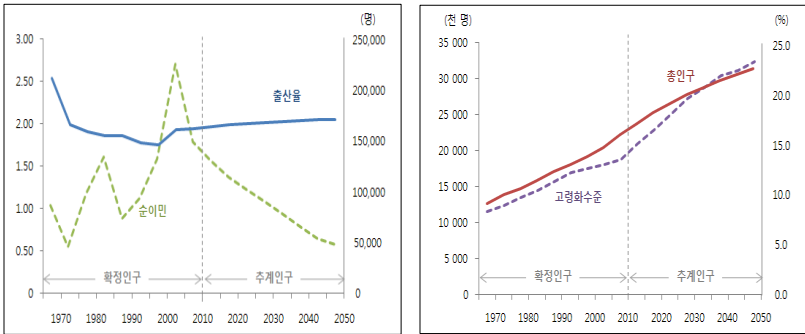
- 총 인구는 1970년 1,273만명에서 2010년 2,227만명, 2050년 3,139만명으로 지속 증가 전망(고령화수준은 8.3% → 13.4% → 23.1%)
 - 비교적 높은 출산율(2010년 1.95)로 매년 13~15만명이 자연증가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수준의 해외 순이입이 이루어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2000년 이후 이민증가가 인구증가를 주도하자, 최근 이민제한 개혁 시도
 - * 호주 수상 Julia Gillard는 2010년 선거 당시, 호주인구 증가에 따라 이민자 유입을 적극 제한할 것이라고 천명
- 출산관련 정책
 - 1970년대까지도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호주의 가족 정책은 뚜렷한 것이 없었으나 1985년 호주사회 내 전통적인 가족의 붕괴와 가족 구성원의 역할 변화, 인구의 고령화 등의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정책과 서비스 프로그램 발전
 - 보육에 관한 다양한 보조금 도입, 보육시설 확대, 아동수당 인상,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 확산, 가족세금혜택(Family Tax Benefit System) 도입 등
 - 최근에는 맞벌이여성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 도입 및 확대
 - 부모급여(Parenting Payment)를 “일하는 복지 프로그램 패키지(Welfare to Work Package)”에 따라 2006년 7월에 도입(막내가 8살 때까지 제공)
 - 보육시설 이용보조금(Child Care Benefit)

- 아기 보너스(Baby Bonus) : 일시불 \$5,294
- 유급출산휴가(Paid Parental Leave Pay) : 당초 52주의 무급 양육휴가이었으나 최근 최대 18주 주당 \$570 급여 제공
- 출산 후 예방접종 수당(Maternity Immunisation Allowance)
- 육아보조금(Parenting Payment)

○ 이민정책 변화

- 1947-1972년까지 대규모 이민 수용
 - 경제적 목적과 국방, 경제활동인구구조 유지와 인도주의의 목적 지향
 - 매년 이해당사자들과 협의, 노동시장 수요조사 등을 통해 이민수용분야(기술, 가족, 인도주의, 기타)별 이민규모를 사전 규정
- 1972년에 백호주의 이민정책을 포기하고, 다문화사회로 전환
- 1988년 기술인력 중심의 이민 및 1990년대 중반 임시노동이주 포용
- 2010년 이민정책 재검토
 - 총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증가분의 약 60%가 순국외 이민의 증가로 이루어짐으로써 이민에 대한 논쟁 증가
 - * 기술이민자의 역할 미약(이민 후 직종전환 등), 이민자 주택수요 증가 등
 - 기술이민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호주에 정착할 수 있었던 400여 종의 직업군을 180여 종의 “고가치 직업군”으로 축소·신규지정(기술이민의 무조건적 수용에서 수요 대응적 방식으로 전환)

[그림 3-2] 호주 인구변동요인과 인구전망



자료: UN(2011),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0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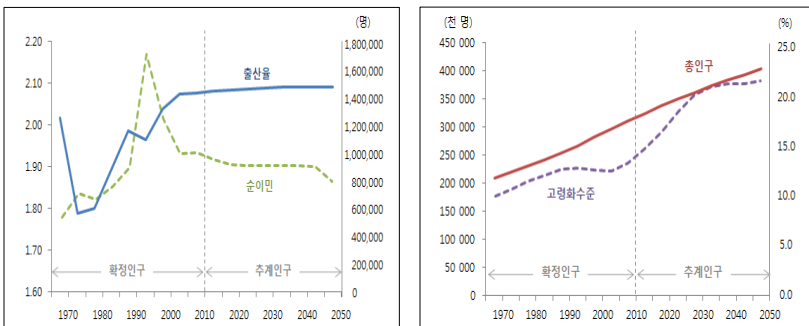
- 총인구는 1970년 2억9백만명에서 2010년 3억1천만명, 2050년 4억3백만명으로 증가(고령화수준은 9.8% → 13.1% → 21.2%)
 - 출산율이 1980년대 중반 1.84명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적극적 이민정책을 수용한 결과 이민자의 높은 출산력으로 2명 이상으로 회복
 - 최근에 들어와서 이민정책은 선별 및 봉쇄(gate-keeping) 강화
- 출산정책
 -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정책이 미흡하며,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약한 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타임노동 보급, 재취업 용이성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조세제도 등을 통해 고출산을 실현
 - FMLA(Family Leave and Medical Leave) 이후 출산율 증가 (Averett & Whittington, 2001)
 - 자녀세액공제, 자녀 및 부양가족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제공

- 또한, 국민의 대다수가 미국사회를 ‘자녀양육의 비용은 낮고 생활하기 쉬운 사회’로 생각하고 있어 출산율에 유리하게 작용

○ 이민정책

- 1960년 동화모형에서 1970년대 이후 다문화주의모형으로 전환
 - 전후 최초 이민법인 1952년 이민·귀화법(McCarran-Walter Act)에서 이민허용 우선순위 설정(최우선은 고도기술소지자 및 그 가족으로 전체 이민자의 절반 할당)
 - 1965년 이민·귀화법 개정으로 이민을 출신국별 할당 및 아시아이민 차별 철폐 및 이민허용 최우선순위도 고도기술자로부터 미국 시민권·영주권자의 가족으로 전환
- 1986년 이민개혁·조정법 제정을 통해 불법이민 억제
- 2001년 세계무역센터 폭파사건을 계기로 국제적 테러리즘, 이민자로 인한 사회복지제도의 혼란 등을 고려하여 불법이민 억제 강화
 - 범죄외국인 강제 송환, 1996년8월23일 이후 입국 외국인의 대부분 연방정부 사회복지 혜택권 박탈, 불법이민자 감소 및 사회복지 접근 제한

[그림 3-3] 미국 인구변동요인과 인구전망



자료: UN(2011),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0

□ 프랑스

- 프랑스 인구는 1970년 5,053만명에서 2011년 6,503만명으로 증가하여 EU 27개국 중 독일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국가로 부상
 - 19세기 초 프랑스는 유럽의 최대인구 보유국이었으나, 프랑스-프로이센전쟁, 1·2차세계대전으로 생산가능인구 상실 및 인구증가율 정체
 - 1970년대 이래 지속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한 출산율 증가(2009년 2.0), 이민 유입으로 높은 인구증가율 유지(2050년 7,282만명, 고령화수준은 2010년 16.6% → 2050년 24.9%로 완만한 증가)
 - 1982-2007년간 인구증가 1,000만명 중 이민증가는 약 10%(110만명)
 - * 2007년 이민인구는 514만명으로 총인구의 8.2%(이민은 1980년대-1990년대에 매년 15만명 증가, 2000년대 80만 여명 증가)
- 출산정책
 - 프랑스정부는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저출산을 정책적으로 극복해 갈 것임을 천명
 - 1983년 의회에서 인구추이에 관심을 표명한 이래 인구감소에 대한 공포에서 국가주의적 의식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1986년 인구감소대처민족연맹(Alliance Nationale contre Depopulation)이 설립되어 출생아 증가를 위한 정치적 지지 요구
 - 인구관련 국가주의적 운동과 가족강화운동은 가족정책의 발달 촉진

- * 가족수당·신생아환영수당·주택수당 등 도입, 조세정책, 공보육 확립, 일-가정양립 제고 등 GDP대비 가족관련 지출 비율이 2007년 3.71%로 세계최고 수준(우리나라 0.66%)

○ 이민정책

- 이민 활성화 정책
 - 19세기-20세기 초 인구저성장, 노동력 부족 등으로 유사한 종교·문화를 가진 유럽계 이주민(이탈리아, 스페인) 유입 및 적극적 동화정책 실시
 - 1960년대 이탈리아인의 이민 자제로 인하여 그 공백을 알제리인 대거 입국하여 메꿈(1962년 알제리와 에비앙 협정 체결).
- 노동자 중심에서 가족중심으로의 이민정책 전환
 - 1973년 석유파동에 따른 경기침체, 내국인-이민자간 반목 등을 계기로 고숙련노동자와 계절노동자를 제외한 이민을 공식적으로 중단
- 이민통제정책으로 전환
 - 미테랑 정부(1981-1995)는 한시적으로 이민유화정책을 실시하였으나(좌파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기인), 1983년 이민 반대 극우정당 민족전선이 선거에 등장하면서 프랑스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 및 자동 체류권 제한, 외국인의 불법입국 저지 및 불법체류자 추방강화, 이민자 규모 통제
 - 2006년 사르코지 대통령은 과거 이민정책이 실패했다고 언급하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선택적 이민시스템 확립(가족초청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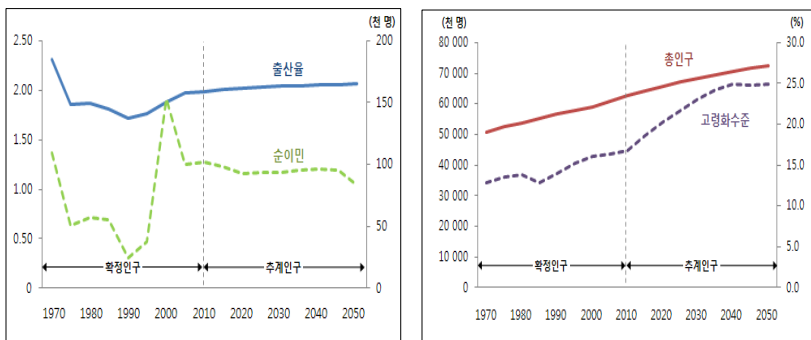
민 제한, 기술노동자 채용, 외국인학생 거주·노동장려)을 위한 ‘이민과 통합법’(일명 사르코지 제2법안) 발표

* 1970년대 초 노동이민을 중단했으나 기 이민자들의 가족 유입(초청이민, 2006년 기준 전체 이민의 65%)으로 이민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2005년 11월 방리유(Banlieu) 폭동사태는 ‘프랑스의 신념, 문화, 법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지역에서 이주한 통제되지 않은 이민 인구’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통제되지 않은 이민은 프랑스 경제에 부담을 과중하고, 사회통합에 장애를 가져온다고 인식

- 장기불법체류자 영주권 부여 폐지, 가족초청 시 18개월 이상 장기 체류, 사회보조금제외 최저임금 수령조건, 불어능력 시험 등 규정
- ‘이민, 통합, 그리고 국가정체성 및 개발연대부’ 설립 (2007)을 통해 매년 이민자수 한계 설정
- 가족재결합 신청요건 강화, 가족여부 확인을 위한 이민자 유전자 검사 등

[그림 3-4] 프랑스 인구변동요인과 인구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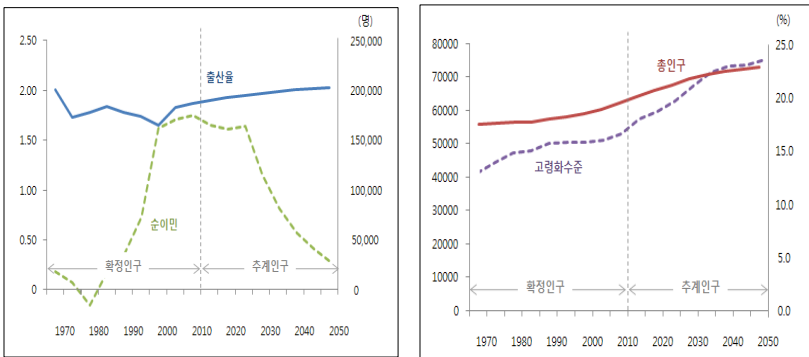
자료: UN(2011),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0

□ 영국

- 인구는 1970년 인구현황 5,565만명에서 2010년 6,204만명, 2050년 7,282만명 증가 전망(고령화수준은 7.9% → 16.6% → 23.6%)
 - 1970년대 이후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미만이나 이민증가로 인구 증가
 - 1980년대 유입 이민인구보다 외국 이주인구가 초과, 1990년대 이후 유입인구가 더 많아짐.
 - 그러나 향후 인구증가 전망에 따라 이민억제정책에 대한 공감대 가속화 및 정치권에서 다른 인구정책 필요성 제안
- 출산관련 정책
 -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16세 이하), 편부모가정의 경우 추가 수당 지급, 맞벌이는 세금감면 혜택을 통해 보육비의 70% 정도(자녀 1명당 70파운드·14만원) 환급
 - 자녀세액공제, 근로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 18주 출산 휴가, 39주 모성급여 수급 기간동안 임금의 90%를 지급하고 있으며, 모성급여(SMP)를 받는 기간은 연금에서 크레딧이 적용
- 이민정책 변천
 - 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력 확보와 연방의 강화라는 정치적 고려에 기초하여 신영연방 국민의 자유로운 영국 이주와 고용 허용
 - 그러나 폭발적인 이민자 증가로 1962년 영연방이민법, 1971년 이민법 제정 등을 통해 영연방출신 이민자 규제
 - 보수당-민주당 연정은 절대적 이민규모 축소를 공약으로 제시

- 2004년 EU에 가입한 동유럽 10개국에 대한 이민허용에 따른 폴란드 출신 등 이민자의 유입 급증이 각종 사회 문제(공공서비스에 대한 과부하, 주택난 등 경제적 혼란, 이질적 문화유입에 의한 정신적 불안감 등)를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 고조에 기인
- 2010년 ‘이민총량제’ 도입을 위한 사전 제도정비 실시
-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비유럽 출신 숙련이민 근로자의 숫자를 예년에 비해 5%정도 줄어든 수준인 2만 4,100명으로 제한

[그림 3-5] 영국 인구변동요인과 인구전망



자료: UN(2011),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0

2. 주요국 인구전략의 평가 및 시사점

- 각국은 노동력 부족, 출산율 감소 등의 시기에 인구 유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 추진하였으며, 전략 등은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 존재

- 프랑스의 인구유지전략은 출산과 이민을 동시에 촉진하되 출산 장려에 보다 역점을 두어왔음.
- 북유럽국가들의 인구유지전략은 여성인력 활용에 역점을 두어왔음.
- 영미계 국가들의 인구유지전략은 이민 장려에 보다 역점을 두었으나, 최근에 이민의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민 통제 방향으로 전환

□ 이민정책 평가

- 이민정책의 영향으로 인하여 출산율 증가(반드시 모든 국가가 동일하지는 않음), 단기간 노동력 부족 해소 등의 긍정적 효과(편익)가 발생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실업률 상승과 슬럼화, 사회문화적 갈등(소요사태, 사회불안), 사회보장부담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 등 부정적 효과(비용) 발생

〈표 3-1〉 주요국의 이민자 유입이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효과

	영국(2010)	미국(2009)	호주(2009)	프랑스(2000)	캐나다(2001)
전체(A)	2.00	2.01	1.93	1.87	1.57
내국인(B)	1.88	1.78	1.96	1.82	1.51
이민자(C)	2.45	흑인 2.03 원주민 1.78 아시아등 1.96 히스패닉 2.73	1.81	알제리인 3.19 모로코인 3.32 튀니지 3.29 터키 3.35	원주민 2.60 이민자 1.70
이민자 출산율 효과	6.4%	12.9%	-1.5%	2.7%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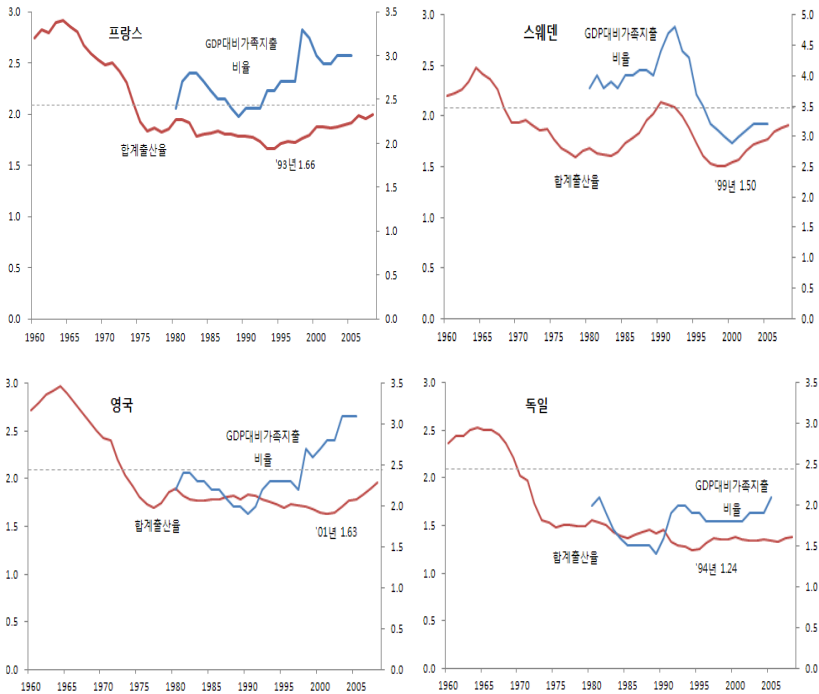
주: 이민자 출산율이 전체 출산율에 미치는 기여도= (A-B)/B×100(%)

- 이에 따라, 출산율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확신하는 경우 이민 억제(선별과 봉쇄, Gate- Keeping)로 정책방향 선회
 - 국민건강·안전·안보, 경제·사회문화 발전에 부적합한 이민 비수용
 - 기술이민의 무조건적 수용에서 고가치 수요대응적 방식으로 전환
 - 사회복지제도의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이민 억제 강화
 - 외국인의 국적 취득 제한 강화
 - 궁극적으로 이민자 규모 및 질 관리 강화

□ 출산장려정책 평가

-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출을 늘려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세제감면, 제 수당 지급, 보건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보육·돌봄서비스 양적 확충·질적 제고, 일·가정양립 제고 등 노력
 - 출산율이 빠르게 낮아지는 시기 또는 직후에 가족에 대한 GDP 지출 비율을 증가시켜, 일정한 시차(time-lag)를 두고 출산율이 상승하는 효과 발생

[그림 3-6] 주요국의 GDP대비 가족지출비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



자료: 합계출산율 - OECD(2011), Family Database.

GDP 대비 가족지출비율 - OECD(2011) Social Expenditure Database.

□ 시사점

- 우리나라의 인구변동에 대한 정확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출산장려정책, 국내잠재인력활용정책 및 이민정책 간 최적조합을 구축한 중장기적 종합적 인구정책 마련 필요
- 출산율 반등세 기조로의 전환을 위하여 적절한 재정 지출과 함께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보다 역점 필요
 -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토양의 배양 중요
- 이민은 국가의 경제·사회·문화에 적합(비용 최소화·편익 최대

화)하도록 기간별 양적·질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전략 수립 중요

- 이민자 유입은 시행착오가 허용되지 않은 중대한 문제로 인식

3. 인구전략 유형 인구변동 시뮬레이션

가. OECD 주요 국가의 인구전략 분류

☐ A 그룹 전략. 미국, 캐나다

- 사회문화 환경
 - 국토면적 광활(낮은 인구밀도)
 - 낮은 혈통주의
- 주요 인구전략
 - 이민에 의한 인구의 양적 및 질적 조정
 - 출산율 제고 정책 배려 없음(일반적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정책 실시)
- 인구학적 특징
 - 중간~인구대체수준 출산율
 - 높은 이민율(이민자에 의한 국가 건립)
 -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화 수준

☐ B 그룹 전략. 영국, 프랑스

- 사회문화 환경

- 국토면적 협소(높은 인구밀도)
- 장기간 저출산, 고령화 경험
- 지정학적으로 유럽 내 많은 국가들 인접
- 사회문화적으로 기존 토착민(내국인)의 (비유럽계)외국인 수용에 배타적

○ 주요 인구전략

- 출산율 유지를 통한 인구의 안정적 유지(고령화 대응)를 주요 인구 전략으로 채택
 - GDP 대비 가족지출 비율 3.0% 이상
- 단기적 노동력 부족 해소, 국제관계(난민 보호 등) 등을 위해 국내외 상황을 고려, 이민정책 탄력적 적용

○ 인구학적 특징

- 출산율: 1.9~2.0 높은 수준 유지
- 이민자 비율: 총인구대비 10% 내외 유지
-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화 수준(15% 이상)

□ C 그룹 전략. 일본, 독일

○ 사회문화 환경

- 전범국가로 2차 대전 중 우생학적 출산장려정책 도입
- 강한 가부장적 사회 지속
- 강한 혈통주의로 이민자 배척 경향

○ 주요 인구전략

- 주된 인구전략 부재(모호)
- 출산율 제고 정책 지연 도입

- 낮은 수준의 이민정책(독일) 또는 배타적(일본)

○ 인구학적 특징

-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율
- 상대적으로 낮은 이민율
- 인구 감소(일본 2005년 이래)
-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화 수준(15% 이상, 특히 일본 20% 이상)

나. 그룹별 인구전략

(1) A그룹

☐ 미국

○ 저출산정책

- 출산율 제고정책, 가족정책 전반적으로 미흡하며(2007년 기준 GDP대비 0.65%), 세액공제 형태 지원이 다수
 - 17세 미만 자녀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자녀수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
 -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등 소득보전
 - 가족친화적기업 인증마크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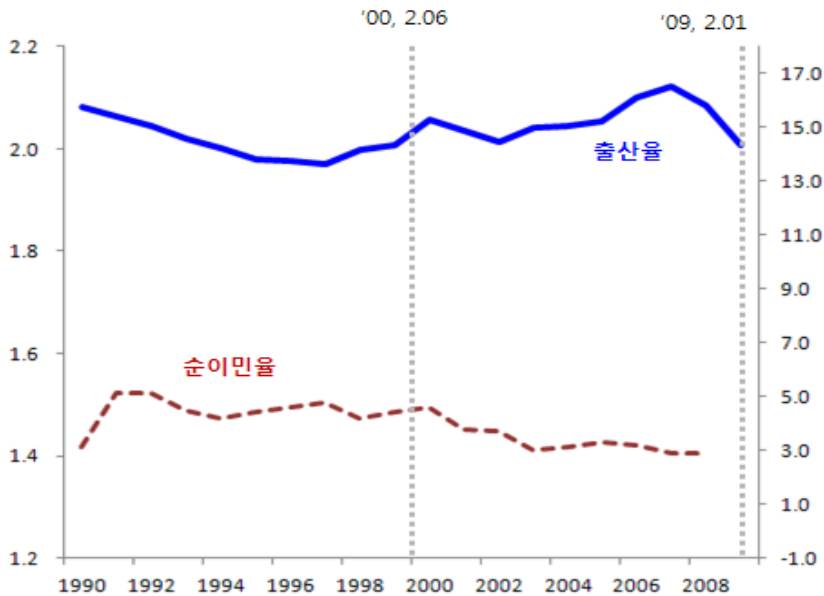
○ 이민정책

- 1960년 동화모형에서 1970년 다문화주의모형 전환
 - 1965년 이민귀화법개정, 아시아이민 차별, 고도기술자우선 이민철폐
- 1986년 이민개혁조정법 제정 통해 불법이민 억제
- 과거 이민장려에 역점을 두었던 정책이 최근 선별 및 봉쇄

(gate-keeping) 중심으로 변화

-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적 테러리즘, 이민으로 인한 사회비용부담 및 혼란 억제를 위해 불법이민 억제 강화
 - * 국민건강·안전·안보, 경제·사회문화 발전 부적합 이민 비수용
 - * 기술이민 무조건적 수용에서 고가치 수요대응적 방식 전환
 - * 궁극적으로 이민자 규모 및 질 관리 강화

[그림 3-7] 미국 합계출산율 및 순이민율 변화



자료: 합계출산율 - OECD(2011), Family Database.

순이민율 - OECD(2011) Factbook 2011: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사회문화경제적 배경

- 정부정책보다 민간시장 활성화를 통한 보육인프라 확충
 - 국가의 직접적 정책은 미흡하나 저비용 민간보육이용 활성화
- 양성평등이 주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이민수용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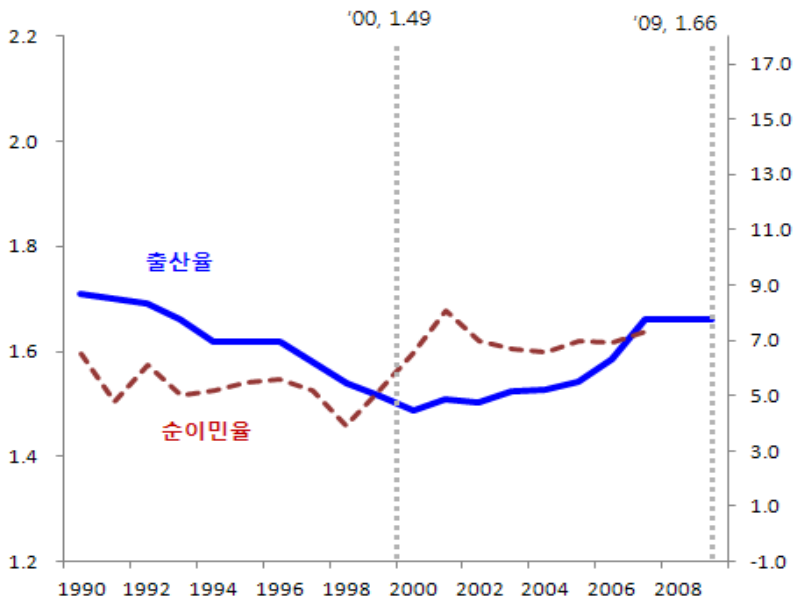
- 2007년 기준 혼외출산율 38.5%

□ 캐나다

○ 저출산정책

- 자녀 세액 공제 제도와 보편적 자녀양육 급여(6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0 지급)로 경제적 지원
- 이외 출산 휴가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노력

[그림 3-8] 캐나다 합계출산율 및 순이민율 변화



자료: 합계출산율 - OECD(2011), Family Database.

순이민율 - OECD(2011) Factbook 2011: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이민정책

- 기본 원칙은 경제성장(국가 경제 도움이 되는 고숙련 노동자 중심),가족 결합, 인도주의의 세 가지 목적
- 1967년까지 배타적 이민 정책 시행
- 1967년 이민법으로 인종차별 철폐(다인종 문화정책 전환), 포인트 시스템 도입(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적극적 이민정책)
- 2001년 이민 및 난민 보호법 제정. 캐나다의 자유로운 이민정책 정신은 고수하되, 국가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독립이민의 포인트 점수제 요건 등 강화

○ 사회문화경제적 배경

- 다민족, 다문화 배경의 양성평등적 기초사회
 -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이민수용성

(2) B그룹

□ 영국

○ 저출산정책

- 16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대상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자녀세액공제, 근로세액공제 지원
- 39주 법정모성급여 수급기간 동안 임금 90% 지급 및 연금크레딧 적용
- 모든 여성근로자들이 52주 산전후 휴가 사용 가능
- 최소 1년 근무 시 13주간의 무급 육아휴직 사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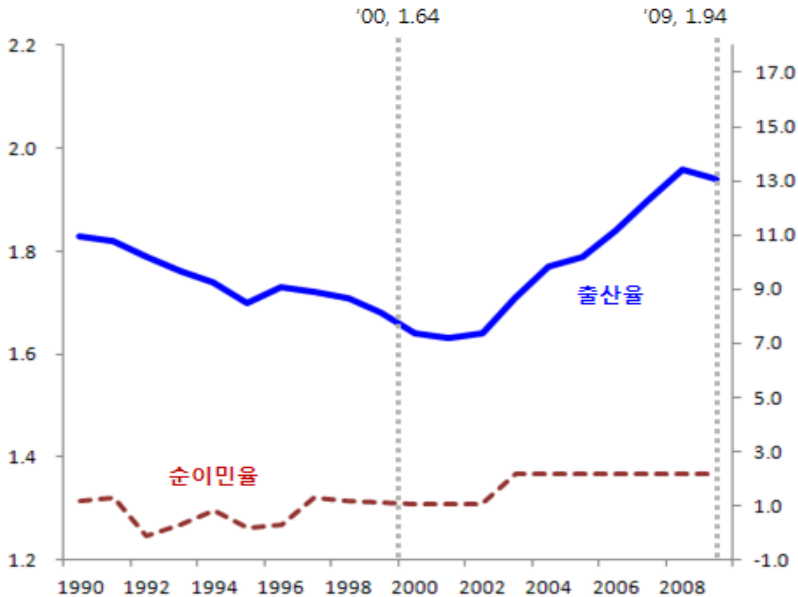
○ 이민정책

- 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력 확보, 연방 강화 목표 아래 신영연

방 국민의 자유로운 이주, 고용 허용

- 폭발적인 이민자 증가로 1971년 이민법 제정 통해 규제
- 2004년 EU가입 동유럽 10개국 이민 허용
- 폴란드 출신 등의 이민자 유입 급증으로 각종 사회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 증가(공공서비스 과부하, 주택난, 이질적 문화 유입으로 인한 갈등) → 보수당-민주당 연정 절대적 이민규모 축소 공약 제시
- 2010년 이민총량제 도입, 비유럽 출신 숙련이민자 수 제한

[그림 3-9] 영국 합계출산율 및 순이민율 변화



자료: 합계출산율 - OECD(2011), Family Database.

순이민율 - OECD(2011) Factbook 2011: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사회문화경제적 배경

- 구직 및 재취업 용이, 탄력근무, 파트타임 등 일과 육아 병행

이 용이 →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출산을

- 공공부문 여성 대상 파트타임, 서비스직 대폭 확대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 선도
- 다양한 가족, 이민에 대한 수용성
 - 2010년 혼외출산율 46.9%

□ 프랑스

○ 저출산정책

- 1970년대부터 저출산을 정책적으로 극복해 갈 것을 천명
- 1986년 인구감소대처민족연맹 설립, 출생아 증가를 위한 정치적 지지 요구 등 인구관련 국가주의적 운동 및 가족강화운동으로 가족정책 발달 촉진
 - 출산, 자녀양육을 국가 차원 문제로 인식, 자녀출산과 가족형성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정책 장기간 지속
- 각종 수당, 조세정책, 공보육 확립, 일-가정 양립 제고 등 다양한 정책 추진
 - 수당 및 조세 정책은 다자녀 가정에게 유리하도록 차등적 적용
 - GDP 대비 가족 관련 지출 세계 최고 수준(2007년 3.71%)

○ 이민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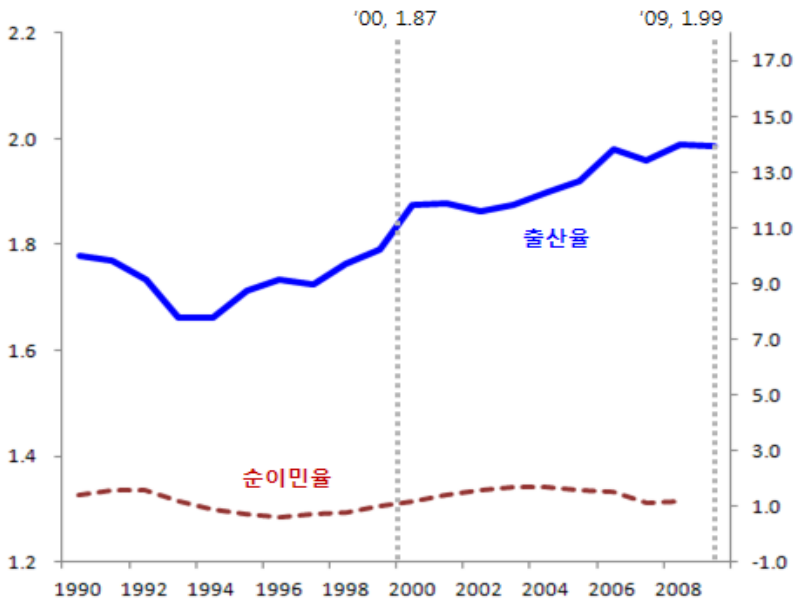
- 19-20세기 초 인구저성장, 노동력부족 등으로 유럽계 이주민 유입 및 적극적 동화정책 실시
- 1973년 경기침체(석유팽동), 사회 갈등 계기로 고숙련 노동자와 계절노동자 제외한 이민 중단

- 기존 이민자들의 가족 유입으로 이민자수 지속적 증가
- 2005년 이민자 통합 문제(방리유 폭동사태)가 불거짐에 따라 최근 선택적 이민, 미등록 외국인 추방, 합법체류 이민자의 통합(동화) 강조

○ 사회문화경제적 배경

- 동거부부, 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높은 수용성(혼외출산율 53.7%, 2009년)
- 양성평등 기초적 사회

[그림 3-10] 프랑스 합계출산율 및 순이민율 변화



자료: 합계출산율 - OECD(2011), Family Database.

순이민율 - OECD(2011) Factbook 2011: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3) C그룹

□ 일본

○ 저출산정책

- 1989년 출산율쇼크 1.57 이후 적극적 소자화 대책 실시
- 1994-1999년 엔젤플랜
 - 보육서비스 확장 및 질적수준 향상: 공립 어린이집, 영아보육시설 확충, 보육시간 연장, 초등학생 방과후 보육서비스 도입
 - 1995년 육아휴직 개선으로 휴직시 급여의 25% 지원
- 2000-2004년 신엔젤플랜
 - 육아휴직수당 임금 40%로 상향조정(2001), 육아휴직 3년으로연장, 아동수당 대상연령 기존 3세 → 6세 확대
- 2005-2009년 아동육아응원계획
 - 젊은층의 취업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노동방식 개선, 육아지원 거점 구축 등과 관련한 130개의 시책이 포함
- 이외 자녀세액공제 확대, 가족친화기업문화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만성적 재정 압박, 정책적 효과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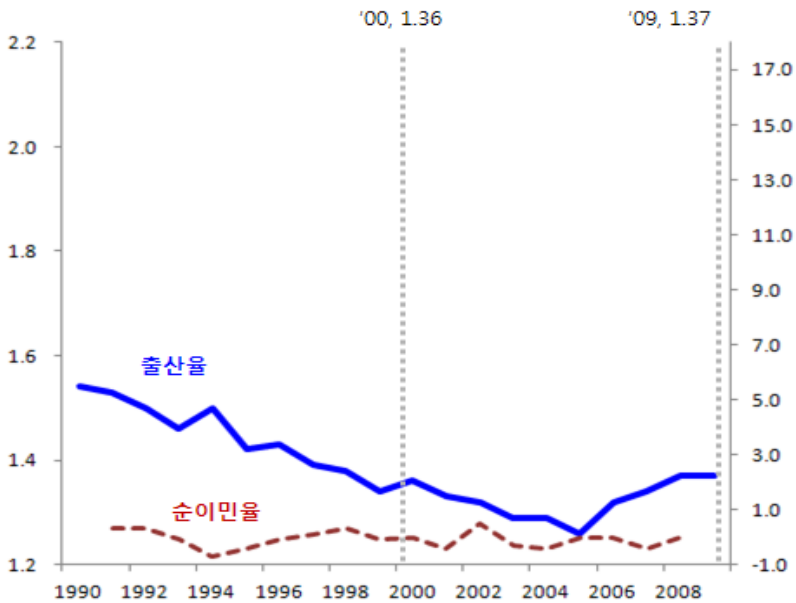
○ 이민정책

- 니케이진 우대제(1989년)를 통해 브라질, 페루 등 남미국가 외국인 동포 우대를 통한 3D업종 등 노동력 부족 해소
- 우수 외국인재 유치를 위해 유학생 30만명 계획(문부과학성, 2008) 수립

○ 사회문화경제적 배경

- 고용불안성,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 → 청년, 여성 구직 곤란
- 출산 후 노동시장 재진입 곤란 → 만혼 일반화
-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서의 외국인 수용에 대한 정부부처, 전국민적 합의 부재, 공식적 다문화정책 비추진

[그림 3-11] 일본 합계출산율 및 순이민율 변화



자료: 합계출산율 - OECD(2011), Family Database.

순이민율 - OECD(2011) Factbook 2011: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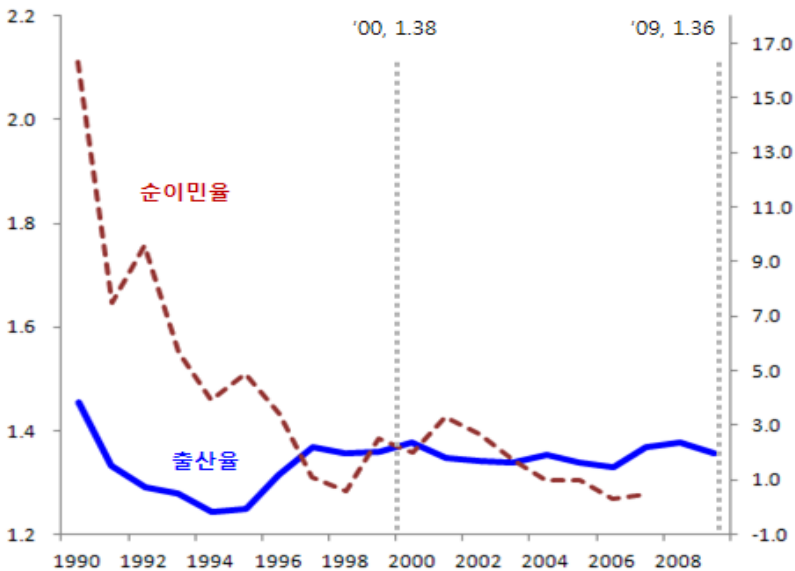
□ 독일

○ 저출산정책

- 1955년 아동수당, 1986년 아동양육수당 및 휴가제도 도입
 - 돌봄 기능 가족이 유지하도록 현금급여 중심
 - 출산·양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 대체 개념

- 2000년대에 들어 지속된 저출산에 대응 정책 시도
 - 아동양육수당을 출산 후 휴직 시 소득비례적인 부모수당 전환(미취업 부모에게는 기존 아동양육수당 형태 지급)
 - 돌봄인프라 구축, 여성 취업률 향상, 여성의 선택 범위 확장 유도
 - 2004년 주정부, 지자체, 지역사회 시민단체,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가족연대 조직, 가족친화 지역사회 및 기업 조성 노력 →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그림 3-12] 독일 합계출산율 및 순이민율 변화



자료: 합계출산율 - OECD(2011), Family Database.

순이민율 - OECD(2011) Factbook 2011: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이민정책

- 1960년대 단기노동자 형태로 외국인노동자 유입
 - 대부분 본국의 가족을 독일로 부르는 가족이민 선택, 이민자 급증

- 2004년 이민법 제정으로 적극적 이민정책 수립, 이민정책 추진체계 마련
 - 노동시장 정책 기반 이주와 이주민 통합(언어, 문화, 역사, 법규 등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강조
- 2007년 이민법 개정으로 이주민 통합 의지 강화, 외국인 투자자 입국요건 완화
 - 최근 이슈는 고급인력 이민과 이민자의 사회 통합
- 사회문화경제적 배경
 - 히틀러정권 영향으로 출산장려에 대해 신중, 소극적 접근
 - 보수적 가톨릭 문화로 남녀성별노동분리에 따른 일가정양립정책 미흡, 다양한 가족에 대한 소극적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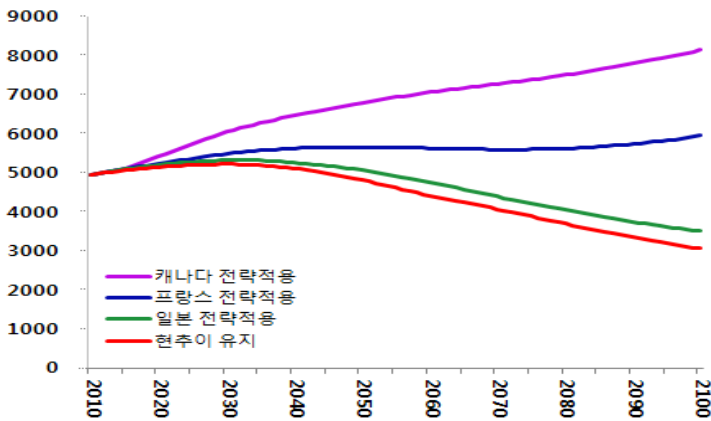
나. 인구전략에 따른 인구변동 시뮬레이션 결과

□ 총인구

- 2050년 총인구
 - 캐나다 인구전략 적용 6,791만명, 프랑스 전략 적용 5,657만명, 일본 전략 적용 5,065만명, 현 추이 유지 4,812만명
- 2100년 총인구
 - 캐나다 인구전략 적용 8,146만명, 프랑스 전략 적용 5,951만명, 일본 전략 적용 3,499만명, 현 추이 유지 3,060만명
- 주요특징
 - 캐나다 인구전략 적용시 지속적으로 증가

- 프랑스 전략 적용 2049년 5658만명 정점 후 감소, 2072년 5591만명 저점 이후 다시 증가
- 일본 전략 적용시 2032년 5319만명, 현 추이 유지시 2030년 5216만명 점점 이후 가파르게 계속 감소

[그림 3-13] 외국 인구전략 적용 시 우리나라 총인구 전망



주: 캐나다 인구전략 가정 : 출산율 1.7(2030년 도달), 순이동률 6.6
 프랑스 인구전략 가정 : 출산율 2.0(2045년 도달), 순이동률 1.6
 일본 인구전략 가정 : 출산율 1.4(2020년 도달), 순이동률 0.4
 한국 (통계청 연장) : 출산율 1.42(2035년 도달), 순이동률 0.7~0.6

□ 인구고령화

○ 2050년 인구고령화(65세 이상 노인 비율)

- 캐나다 인구전략 적용 31.3%, 프랑스 전략 적용 33.5%, 일본 전략 적용 36.4%, 현 추이 유지 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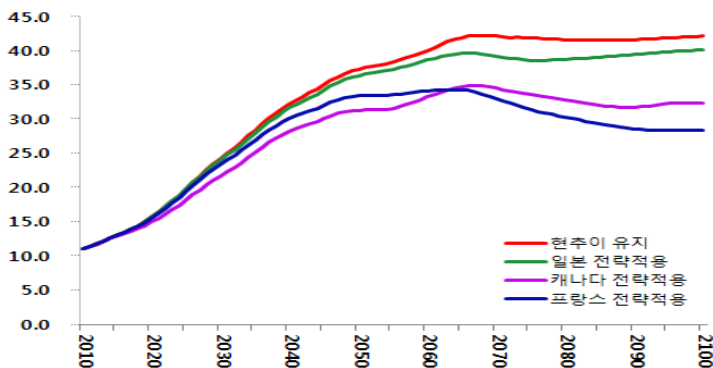
○ 2010년 인구고령화

- 캐나다 인구전략 적용 32.4%, 프랑스 전략 적용 28.4%, 일본 전략 적용 40.2%, 현 추이 유지 42.2%

○ 주요 특징

- 캐나다 인구전략 적용시 그간 저출산 추이와 평균 수명 증가로 증가, 장기적으로 30~35% 사이에서 안정
- 프랑스 전략 적용 64년부터 캐나다보다 낮아지며, 장기적으로 25~30% 사이 유지
- 일본 전략 적용시 계속 높아져 장기적으로 40% 수준 접근
- 현 추이 유지시 장기적으로 40%대 초 유지

[그림 3-14] 외국 인구전략 적용 시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전망



주: 캐나다 인구전략 가정 : 출산율 1.7(2030년 도달), 순이동률 6.6
 프랑스 인구전략 가정 : 출산율 2.0(2045년 도달), 순이동률 1.6
 일본 인구전략 가정 : 출산율 1.4(2020년 도달), 순이동률 0.4
 한국 (통계청 연장) : 출산율 1.42(2035년 도달), 순이동률 0.7~0.6

□ 외국인 비율

○ 2050년 외국인비율

- 캐나다 인구전략 적용 26.8%, 프랑스 전략 적용 9.8%, 일본 전략 적용 6.2%, 현 추이 유지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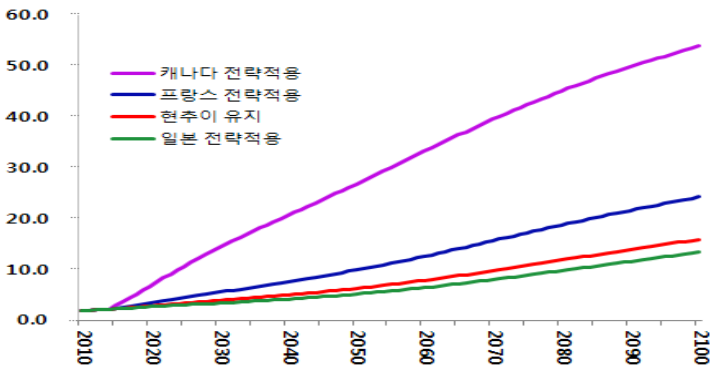
○ 2100년 외국인비율

- 캐나다 인구전략 적용 53.8%, 프랑스 전략 적용 24.2%, 일본 전략 적용 15.8%, 현 추이 유지 13.3%

○ 주요 특징

- 캐나다 인구전략 적용시 외국인 다량 유입으로 외국인구 비율 급상승
- 프랑스 전략 적용 완만한 속도로 지속 상승
- 일본 전략 적용 시 출산율 기여분의 영향으로 현추이 유지시 보다 다소 낮은 수준 유지

[그림 3-15] 외국 인구전략 적용 시 우리나라 인구 중 외국인 비율 전망



주: 캐나다 인구전략 가정 : 출산율 1.7(2030년 도달), 순이동률 6.6
 프랑스 인구전략 가정 : 출산율 2.0(2045년 도달), 순이동률 1.6
 일본 인구전략 가정 : 출산율 1.4(2020년 도달), 순이동률 0.4
 한국 (통계청 연장) : 출산율 1.42(2035년 도달), 순이동률 0.7~0.6

다. 종합평가

□ 결론적으로 B 그룹 국가전략 지향

- 출산율 제고와 인력정책(외국인력 포함) 최적조합 수립 필요

□ 조합형태는 노동력 수급 고려, 기간별 탄력적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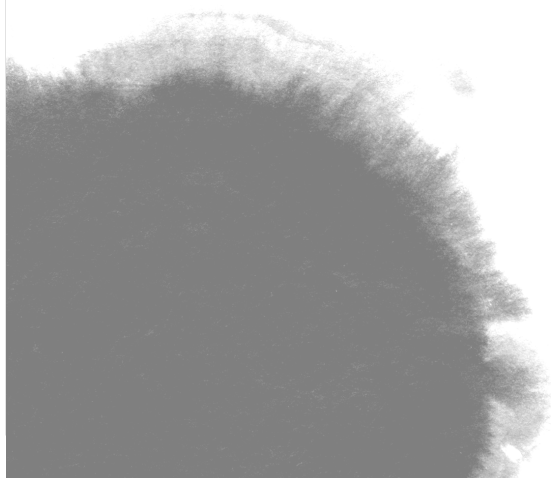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 2010-2030년대 전반(노동력 공급초과)
 - 출산율 제고(미래 노동력 부족 대응)
 - 인력정책(미스매치 해결 차원)
- 2030년대 후반-2060년대(노동력부족)
 - 출산율 제고 및 2.1 수준 지속
 - 인력정책(생산가능인구 2066년 2,781만명 저점시기 고려)

〈표 3-2〉 외국 인구전략의 우리나라 적용시 시사점

	장점	단점	시사점
A그룹 전략 (미국, 캐나다)	· 풍부한 생산가능 인구 확보 용이	· 지속적 인구 증가 (8천만명 이상)로 과잉인구문제 발생 우려 · 높은 외국인구 비율(장기적 50% 이상) · 30% 이상 고령화 (유입외국인구의 고령화에 기인)	· 외국인구 지속적 대량 유입으로 인구규모는 증가하나 외국인구 비율이 높아 사회적 비용이 높고 고령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우려
B그룹 전략 (영국, 프랑스)	· 인구의 안정적 유지(5~6천만명) ·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화(20%대)로 낮은 부양부담 · 풍부한 생산가능 인구 확보 용이	· 비교적 높은 외국 인구 비율(장기적으로 25% 내)	·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나 외국인구비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사회통합의 문제는 지속 가능
C그룹 전략 (일본, 독일)	· 비교적 낮은 외국 인구 비율	· 인구의 지속적 감소(장기적 3천 만명대) · 아주 높은 고령화 수준(40%) 유지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부양부담 급증 우려	·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해지며 외국인 인구비율이 점차 높아지나 저출산·고령화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사회통합문제 발생 우려

04

우리나라 인공지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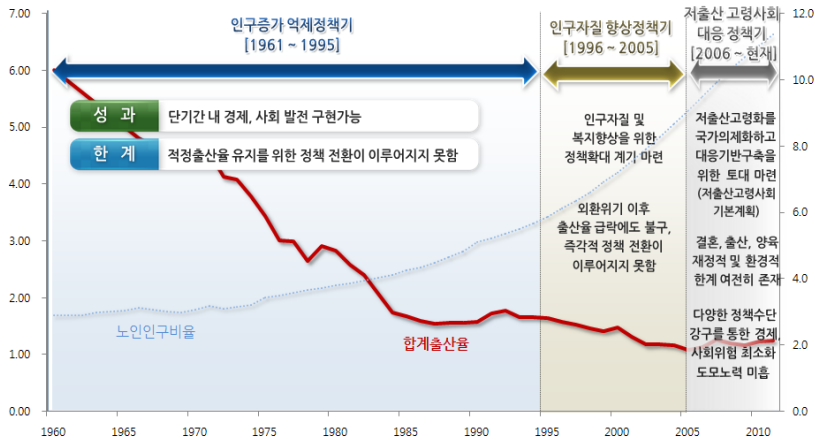
제4장 우리나라 인구정책 평가

1. 성과

□ 인구증가 억제정책(1961-1995)과 성과

- 1960년대 초 폭발적인 인구증가율로 인한 낮은 경제성장률 잠식 및 빈곤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하여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부터 인구증가억제정책을 통합 추진
- 정부주도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을 통해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한 결과, 출산율이 1960년 6.0명에서 1983년 인구대체수준(2.1명)으로 급속하게 낮아져 단기간 내 경제·사회 발전 구현 가능
 - 1974년 부쿠레슈티 세계인구회의에서 논의된 경제사회발전을 통한 인구문제 해결 노력과 가족계획사업을 접목함으로써 현재까지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되고 있음.
- 산아제한 정책: 필요하였던 정책
 - 고출산과 저출산 모두 경제·사회에 부정적 영향
 - 인구대체수준 이상 고출산율이 지속시 경제성장 지체, 혼잡비용 증가, 환경문제 등 과잉인구(over-population) 문제 발생 가능

[그림 4-1] 한국 인구전략의 전개과정



□ 인구자질 향상정책(1996-2004)과 성과

- 1984년 이후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보다 낮게 유지됨에 따라, 1996년 인구정책심의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인구증가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 증진정책’으로 전환
 - 주요 내용으로 유병율과 사망률 개선, 출생성비 균형, 인공임신중절 방지, 남녀평등 및 여권 신장, 청소년의 성활동 예방,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인구분포의 균형, 가족보건 및 복지 증진, 노인복지 증진 등 포함
- 대내적으로 사회발전 정도에 부합하여 인구자질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
 - 대외적으로는 1994년 인구개발국제회의(ICPD) 행동강령을 반영하여 국제사회의 결정에 적극 참여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2005-현재)

- 2000년대에 들어 1.2 미만의 초저출산율이 장기화되고 향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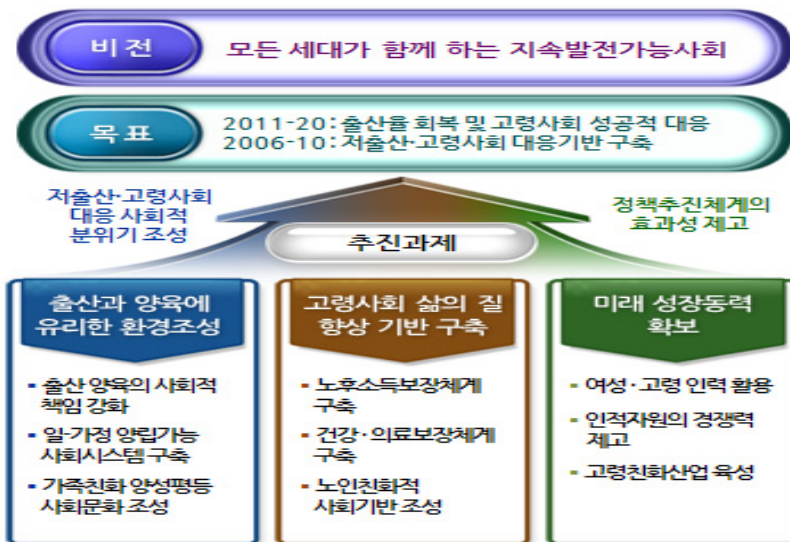
고령화가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본격적인 대응 시작

- 저출산·고령화를 국가의제화하고 법·제도 정비, 추진체계 구축 등 대응기반 구축을 위한 토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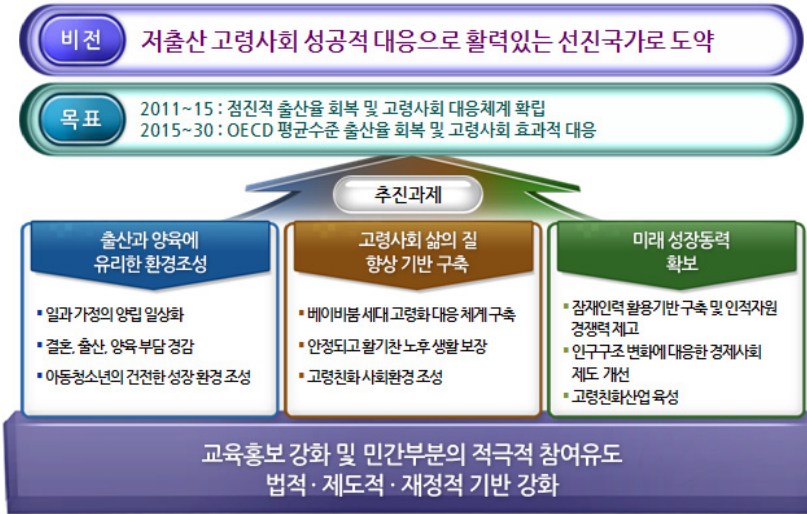
○ 범정부 차원의 대응 본격화 및 다양한 사회주체와 일반국민의 공감대 형성

- 출산율이 2005년 1.08을 저점으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1.2 이상으로 증가
-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10-20년간 정책 추진 후에 출산율이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5년간의 짧은 정책기간에도 불구하고 의식 변화, 출산율 추가감소 억제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가능

[그림 4-2]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



[그림 4-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



2. 한계

- 출산력 조절과 함께 인구변동에 대한 다양한 정책수단 모색 필요
 - 과잉인구 또는 과소인구(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그간의 국가전략은 출산장려에 주력
 - (인구증가 억제 정책기) 1983년 이후 인구대체수준 미만의 출산율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과잉인구 억제에 역점을 두어 적정출산율 유지를 위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인구자질 향상 정책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출산율이 1.5 미만으로 급속하게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즉각적 정책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함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기)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적 역량을 집중하여 출산을 회복의 단초를 마련

- 결혼·출산·양육관련 사회구조적인 장애들을 단기간에 제거하는 데에는 재정적 및 환경적인 한계(직장문화 등)들이 여전히 존재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 저출산대책 미흡

- 한계점 : 1) 정책의 사각지대 존재

* 저소득층 중심으로 중산층, 맞벌이, 비정규직(임시
일용직 등) 제외

2) 출산을 제고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실정

3)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양육
안전망 미흡

4) 기업의 참여 부재

5)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미흡

○ 선진국에서는 출산을 제고, 잠재인력 활용, 이민정책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자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정책수단 선택 또는 정책
간 조합을 통해 접근

-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잠재인력 및 외국인력 활용을 일부 추진 중

- 선진국의 경우처럼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함으로써 경제·사
회위험 최소화 또는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할 필요

3. 시사점

□ 중장기 구체적 목표 설정 및 국민 참여 필요

○ 출산장려와 함께, 잠재인력 활용 및 이민정책 등 인구변동을 고려

한 기간별 정책방향, 정책 강도, 수단 선택 제시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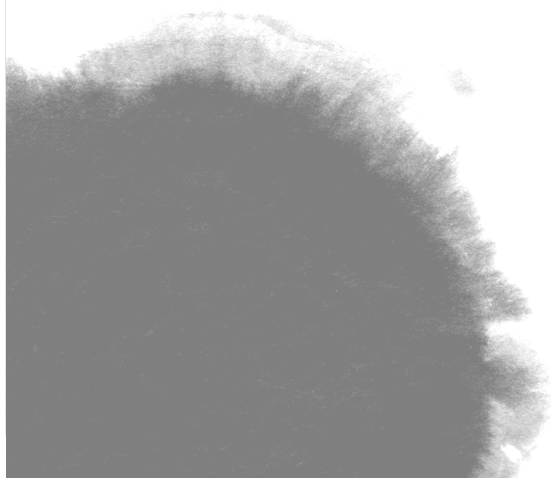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 고령자 고용, 외국인력 활용 등 인구변동 대응에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주체 간 적정분담이 이루어질 필요
- 저출산·고령화 인식확산을 위해 미래사회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부각
 - 지금부터는 이러한 인식기반하에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인구변동에 대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를 논의할 필요

□ 인구안정 기반 국가비전 수립 필요성

- 향후 인구안정 관련 장기적인 국가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인구변동 경로에 따라 체계적·종합적 정책 추진 필요
 - 출산율 제고와 함께 가족해체에 따른 자녀양육안전망 구축, 출산율 회복속도에 따른 인력수급문제, 해외동포 및 통일 등 대외적인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인구전략 수립
 -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여 우리의 미래가 희망적·낙관적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

05

미래 국가 인구전략



제5장 미래 국가 인구전략

1. 인구전략 수립 환경분석

가. 인구와 자원 · 에너지 · 식량 · 환경

-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재화의 생산·유통·소비과정에서 자원 고갈 및 환경오염 발생효과 감소(박호정, 2011)
 - 에너지 다소비국가(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직장은퇴, 자가소비 감소 등 가정·수송부문 에너지 소비감소(탄력성 -0.25, -0.21)
 - 가정부문 2050년대 중반 15백만TOE 하회, 수송부문 2010년 35백만TOE에서 2050년 22~24백만TOE로 감소
 - 인구고령화로 식생활의 서구화, 편의 중시(외식 증가) 경향이 높아져 식량자원(쌀) 소비 감소 전망(수요보다 공급관리 측면 접근 필요)
 - 1인당 쌀 소비량은 2010년 약 70kg에서 2050년 32~45kg로 감소

나. 국가간 인구규모의 변화와 역학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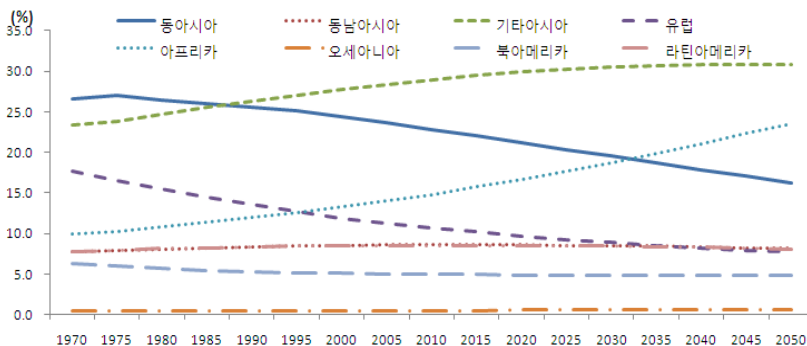
□ 세계인구가 2010년 69억명에서 2050년 93억명으로 증가하나 동아시아·유럽은 저출산으로 세계인구분포에서 열세, 기타아시아·아프리카는 우세 전환

- 전체 아시아 인구는 2010년 60.4%에서 2050년 55.3%로 감소
 - 동아시아 인구는 22.8%에서 16.2%(15.7억명 → 15.1억명) 감소, 나머지 아시아는 37.6%에서 39.1%로 증가 전망
- 아프리카 14.8% → 23.6% 증가, 유럽 10.7% → 7.7%, 북미 5.0% → 4.8% 감소

□ 동아시아인구의 고령화가 2010년 9.5%에서 2050년 26.5%로 가장 빠르게 진행

- 세계 7.6% → 16.2%, 동남아시아 5.6% → 18.0%, 유럽 16.2% → 26.9%, 아프리카 3.5% → 6.6%, 북미 13.2% → 21.6% 등

[그림 5-1] 대륙별 인구규모 변동(1970-2050)



자료: UN Population Prospects, 2010 Revision

□ 우리나라와 일본 및 중국의 인구가 2050년까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현재 및 미래의 경쟁국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계속 증가 전망

○ 중국 2010년 13.41억명에서 2050년 12.96억명, 일본 1.27억명 → 1.09억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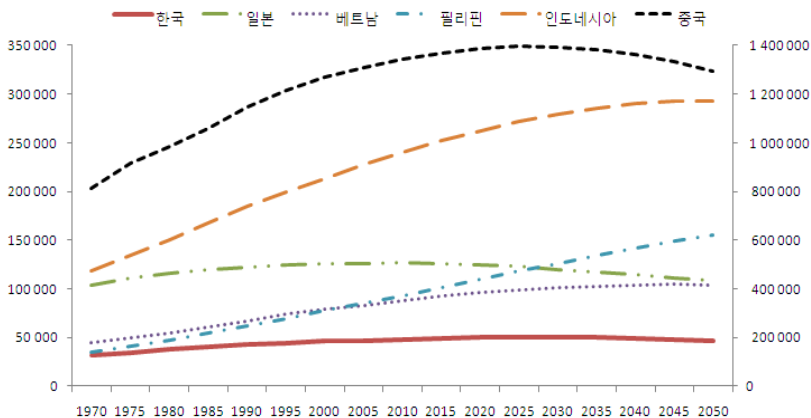
- 베트남 0.88 → 1.04억, 필리핀 0.93 → 1.55억, 인도네시아 2.40 → 2.93억명 증가

○ 2050년 우리나라 인구는 중국의 1/30, 일본·베트남의 1/2 이하, 필리핀의 1/3 이하, 인도네시아의 1/6 이하 수준

□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2010년 11.1%에서 2050년 37.6%로 가장 빠르게 진행

○ 중국 8.2% → 25.6%, 일본 22.7% → 35.6%, 베트남 6.0% → 23.1%, 필리핀 3.6% → 10.8%, 인도네시아 5.6% → 19.2%

[그림 5-2] 아시아 주요 국가별 인구규모 변동(1970-2050)



자료: UN Population Prospects, 2010 Revision

〈표 5-1〉 아시아 주요 국가의 인구고령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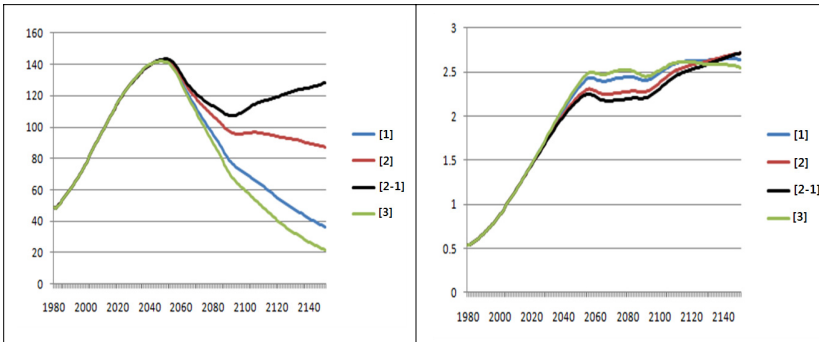
	2010	2030	2050
한국	11.1	24.2	37.6
중국	8.2	16.5	25.6
일본	22.7	30.3	35.6
베트남	6.0	12.8	23.1
필리핀	3.6	6.7	10.8
인도네시아	5.6	10.5	19.2

주: 한국은 본 연구에서 추계, 다른 국가는 UN(2010) 추정

다. 저성장과 소득분배 악화

- 출산율이 현 수준에서 2050년 1.4까지 상승 시 총인구 감소로 GDP가 감소하나 1인당 GDP는 2120년경까지 상승 전망(전영준, 2011)
 - 1인당 GDP의 상승은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인하며, 이는 기업의 R&D투자와 가계의 교육비투자로 인해 형성된 인적자본 형성에 기인
 - 그러나 장기적으로 인구감소로 시장규모가 축소되어 R&D 투자가 줄어들(수익률 감소) 전망이며, R&D투자 감소효과가 자녀 1인당 교육비 투자 증가효과보다 커져 노동생산성 향상이 정체되어 1인당 GDP도 감소
 - 조세부담률 상승과 노동생산성 향상 지체에 따른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1인당 GDP가 기준 경제에 비하여 하락하여 미래세대의 후생수준 하락

[그림 5-3] 출산을 시나리오에 따른 GDP 및 1인당 GDP 변동



주: [1] TFR 2050년까지 1.4로 상승, 이전지출 반영; [2] TFR 2050년까지 1.8로 상승, 이전지출 반영;
 [2-1] TFR 2050년까지 2.0으로 상승, 이전지출 반영; [3] TFR 2050년까지 1.2유지, 이전지출 반영
 자료: 전영준(2011), “출산과 경제 성장의 Dynamics”, 인구전략과 국가 미래 제 1권,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인구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리나라에서 고령화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노령계층 내 소득불평등도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남

- 노인집단의 가처분소득은 전체평균 가처분소득의 약 41~49% 수준
- 가처분소득 기준의 빈곤율은 2009년 50세 미만에서 15%인 반면, 노인인구는 50% 이상(65~69세 57.8%, 70~74세 65.8%, 75세 이상 68.8%)
- 가처분소득 기준의 소득불평등지표로 5분위배율은 65~69세 집단의 경우 2003년 6.26배, 2009년 3.68배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1999-2009년 간 연령집단내뿐 아니라 연령집단간 소득불평등도가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
 - 시장소득기준으로 연령집단내 소득불평등도의 기여(2009년)는 13.4%, 연령집단간 소득불평등도의 기여는 28.3%, 나머지

지 58.3%

- 가처분소득기준으로 연령집단내 소득불평등도의 기여는 14.1%, 연령집단간 소득불평등도의 기여는 20.9%, 나머지 65.0%

2. 중장기 단계별 인구전략

가. 적정인구 개념과 인구안정 필요성

- 적정인구는 인구학적, 경제학적, 환경학적 측면에서 논의
 - (인구학적 관점) 적정인구성장률은 인구학적 총부양비를 최소화 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최대화하는 것(경제적 부양비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 정의
 - (경제학적 관점) 적정인구는 ‘그 사회/국가의 기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선택 가능한 경로 위에서 현재와 장래의 세대에 걸쳐 사회후생수준을 극대화하는 인구경로’로 정의
 - (환경학적 관점)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하여 후세대의 복지(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구규모로 정의
- 위 관점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 접근방법으로서 “지속가능한(sustainable) 인구(안정인구)”의 개념 검토
 - 인구학적인 차원에서는 특정 인구의 규모가 사망으로 인한 감소 없이 유지되는 것을 두고 지속가능한 상태라고도 함.
 - 인구는 일정한 연령구조를 유지하면서 안정상태에 머물러 있

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속가능한 상태인지는 불분명하므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치하는 “지속가능한 인구”의 개념 필요

- 인구의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맥락에서만 의미를 가지며, 인구의 지속가능성을 논할 때 인구변화가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인구와 경제발전과의 관계는 다음의 산식으로 정리 가능

$$C/N \equiv (C/Y) (Y/L) (L/N)$$

C : 총소비, N : 총인구, Y : 국내총생산, L : 취업자수
 C/N : 국민 1인당 평균소비지출, C/Y : GDP에 대한 소비지출비율,
 Y/L : 평균노동생산성, L/N : 고용율

- 환경학적으로 접근하는 지속가능 성장 개념과 접목 필요
- 지속가능발전을 경제, 사회, 환경분야를 통해 평가하고 있으며, 공통적인 지표로 깨끗한 공기, 토지(land), 물, 생태계 등의 지속가능성과 경제, 형평성, 건강, 교육, 고용, 참여 등의 발전을 포함.

나. 우리나라 적정인구

□ 적정인구 시나리오

- 국가적 위상(세계 GDP 2.2% 기여)
- 지속가능 발전
- 성장·복지지출 간 재정적 균형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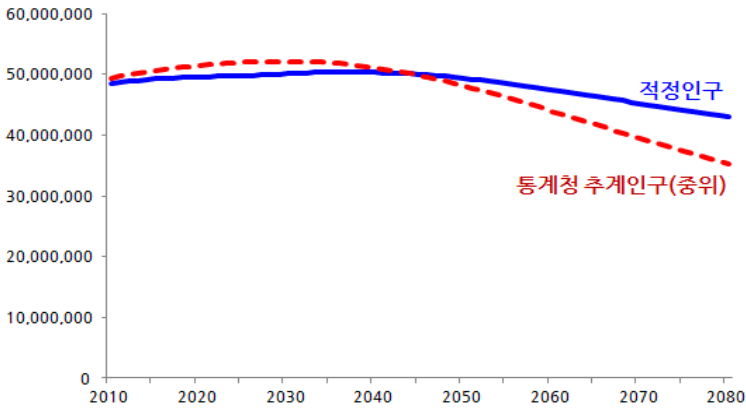
□ 적정인구 시나리오

- 최근 인구동태을 지속 시 총인구는 2045년경부터 적정인구에 미

치지 못하며, 차이는 빠르게 커짐

- 통계청 추계(중위): (2020년) 5,144만명 → (2040년) 5,109만명 → (2060년) 4,396만명 → (2080년) 3,518만명
- 적정인구: (2020년) 4,960만명 → (2040년) 5,031만명 → (2060년) 4,747만명 → (2080년) 4,299만명

[그림 5-4] 적정인구와 통계청 추계인구 규모 비교(2010-2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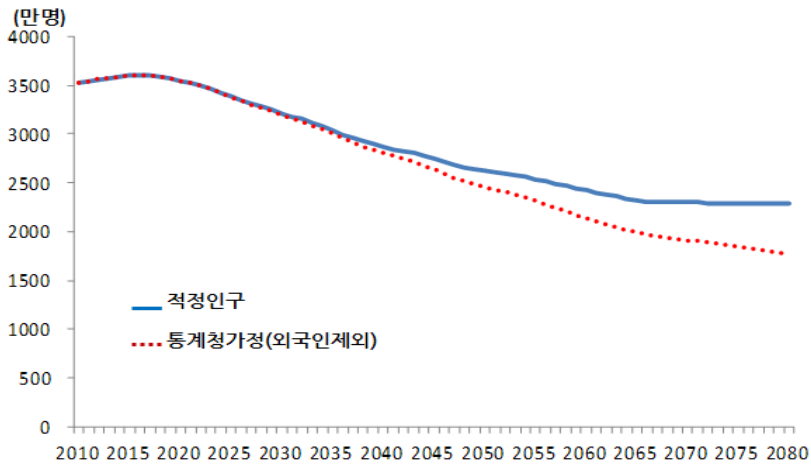


이삼식 외(2011), 미래 인구변동에 대응한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근 인구동태을 지속 시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경부터 적정인구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차이는 빠르게 커짐
- 통계청 추계: (2030년) 3,196만명 → (2040년) 2,805만명 → (2050년) 2,460만명 → (2060년) 2,140만명 → (2080년) 1,764만명
- 적정인구: (2030년) 3,210만명 → (2040년) 2,870만명 → (2050년) 2,627만명 → (2060년) 2,423만명 → (2080년) 2,285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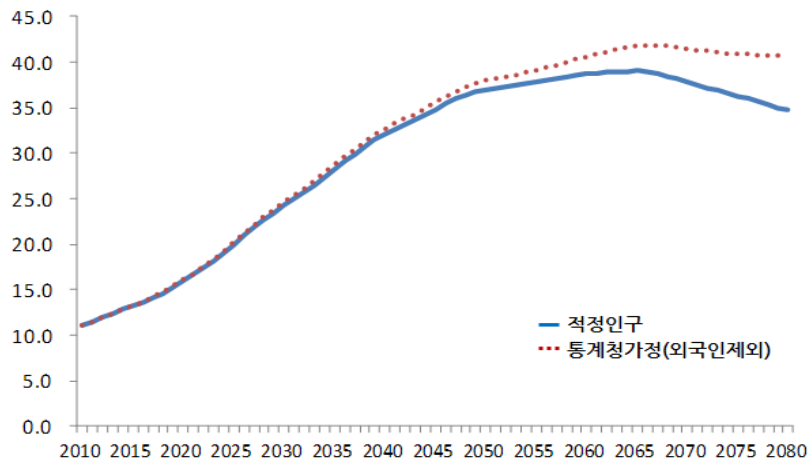
- 적정인구의 고령화수준은 2050년 37.0%로 최근 인구동태을 지속 시 37.9%와 큰 차이가 없으나, 2080년 경 적정인구의 고령화수준은 34.7%로 최근 인구동태 지속 시(40.8%)와 큰 차이 발생

[그림 5-5] 적정인구와 통계청 추계인구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교(2010-2080)



이삼식 외(2011), 미래 인구변동에 대응한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5-6] 적정인구와 통계청 추계인구 노인인구비율(65세 이상) 비교(2010-2080)



이삼식 외(2011), 미래 인구변동에 대응한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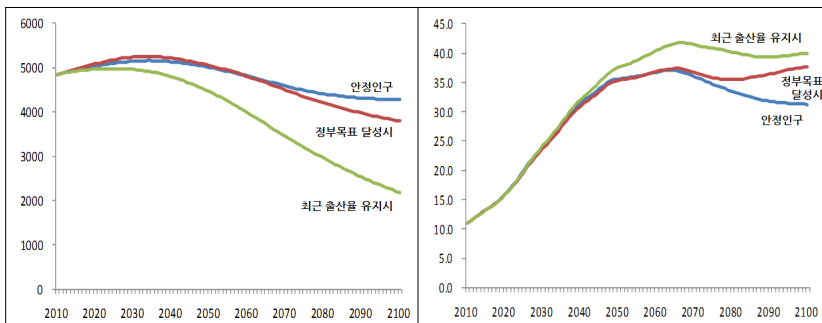
다. 안정인구 목표 설정

- 걱정인구의 노인비율이 높아져 2080년 이후에는 부담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합계출산율이 2.1에서 장기간 유지 필요 (안정인구)
- 안정인구 달성에 근간이 되는 적정출산율(2.1)에 도달 후 지속되는 시간기준(목표)으로 2050년 설정
 - 이는 현 출산율 1.22에서 2.1로 증가하는데 향후 40년이 소요됨을 의미
 - 출산율 회복에 가장 성공한 프랑스의 경우 1994년 1.66 최저점에 도달한 이후 약 15년 후인 2009년에 2.0에 도달(인구대체수준 2.1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다소 더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1.2로 아주 낮은 수준이고 프랑스만큼 전폭적인 재정지출(GDP대비 3.7%, 2007)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안하면 약 40년 소요 가정이 현실적
 - 출생아수 기준으로는 2010년 약 46만명에서 2040년경 42만명 수준으로 감소하며, 이후 증가하여 2045년 이후에는 45만명 내외에서 안정화
 - (2010년) 1.2 → (2020년) 1.45 → (2030년) 1.66 → (2040년) 1.88 → (2050년) 2.1
- 안정인구 경로는 2010년 4,852만에서 2034년 5,158만명으로 정점에 도달 후 2050년 5,001만, 2075년 4,486만, 2100년경부터 약 4,300만명(4,285만) 수준에서 안정
 - 기존의 인구구조로 인해 인구대체출산율 도달 후 인구안정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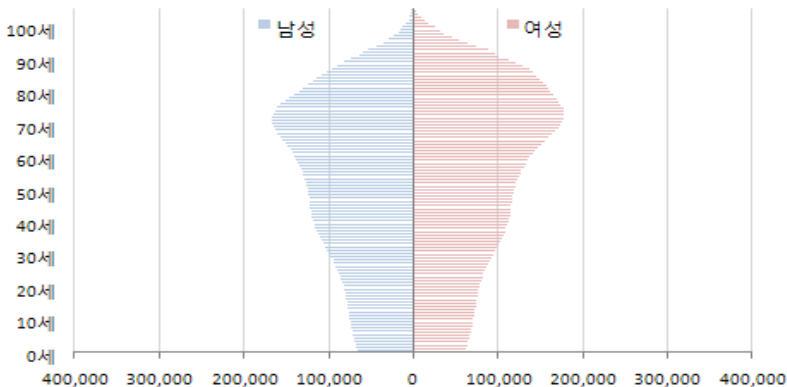
50년 소요

- 안정인구 규모는 2100년 기준으로 최근 출산율 유지시(2,184만 명)와 정부목표 달성시(3,791만명)에 비해 각각 약 2,100만명과 500만명 차이
- 안정인구의 고령화수준은 2050년 35.6%로 정부목표출산율 도 달시 35.3%와 최근 출산수준 유지시 37.6%와 큰 차이가 없 으나, 안정화되는 2100년경에는 31.3%로 다른 두 인구의 고 령화수준 37.7%과 40.0%에 비해 큰 차이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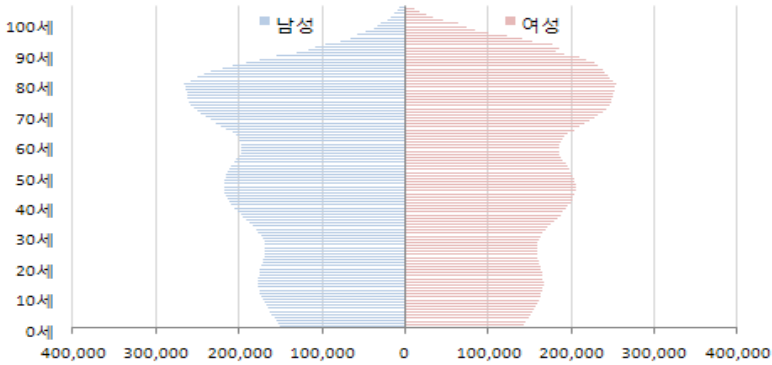
[그림 5-7] 안정인구 규모(만명) 및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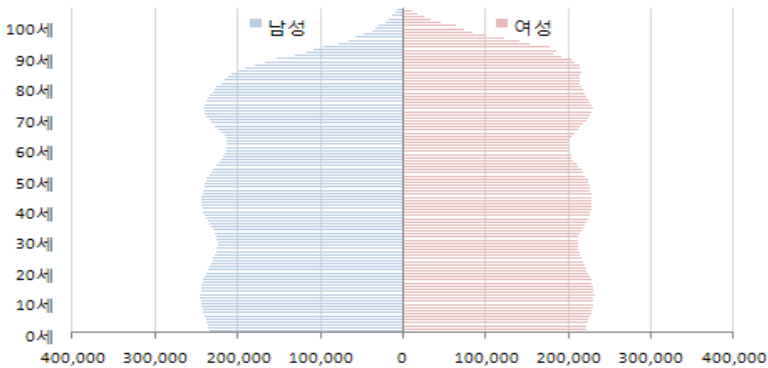
[그림 5-8] 최근 출산율 유지시 2100년 인구모습



[그림 5-9] 정부목표 달성시 2100년 인구모습



[그림 5-10] 안정인구 2100년 인구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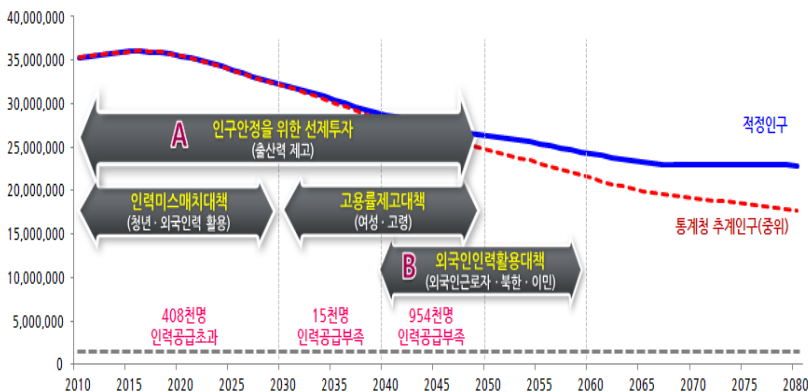
라. 단계별 인구관리 정책

□ 인구 변동기예의 체계적 대응 (기간별 탄력적 적용)

- 걱정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와 최근출산수준 유지시 생산가능인구 간의 차이는 초기에 크지 않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빠르게 커지는 추세

- 2050년 약 125만명, 2080년 약 800만명 등 증가폭 상승
- 생산가능인구의 갭(Gap)이 시기별로 다르므로 인구변동에 대응한 전략은 구간별로 다르게 설정 필요
 - 2030년까지 총량적인 생산가능인구의 차이는 아주 미세하므로 노동력 수급문제는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mis-matching) 해소, 여성고용을 제고, 퇴직고령자 활용 등 국내인력으로 충분히 대처 가능할 것으로 판단
 - 2030년 이후부터 인구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2050년대 후반까지 기존인력활용으로 한계가 있어 새로운 대안 필요
 - (A): 지금부터 태어난 인구가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층에 진입한다는 점에서 출산율을 2050년까지 인구 대체 수준으로 높여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2,000만명 수준에서 유지토록 적극적이고 선제적 인구투자 정책 필요
 - (B) : 출산율이 단기간에 2.1로 올라가지 않으므로 외국인 인력과 북한인력의 활용대책을 보완적으로 추진 필요

[그림 5-11] 미래인구전략



□ 단계별 인구관리정책 시 유의점

○ 베이비붐 세대와 청년고용

-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2010-2030년간 직장 이탈, 민간 부문은 2차 베이비붐(1968-1974년생)도 은퇴 시작
- 따라서 2020년부터는 노동시장 숨통이 트임: 1990년대 후반 생부터 미스매치를 제외한 청년고용불안정 해소 가능
 - 일본의 경우 2005년에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가 은퇴를 시작함으로써 청년층의 고용이 증가함

○ 대학진학 대상 인구 감소

- 대학입학 대상 연령(18세) 인구가 현재(2011)에 비해 2020년 79.5%, 2030년 60.2%로 감소
 -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직장 여유, 대학진학연령 인구 감소 등 대학진학 용이, 사교육 수요 급감, 자녀양육비 급감 기능 → 단, 대학 등 구조조정 문제 심화

□ 인구안정을 위한 선제투자 (기간별 출산율 조정 목표)

- 2040년 이후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수준을 1.2에서 2020년 1.45, 2030년 1.7, 2040년 1.9, 2050년 2.1로 높이기 위한 단계별 전략 필요
 - 그간 보육인프라 구축 및 보육·교육비 지원확대로 보육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된 것으로 평가 가능(질적 수준 제고는 여전히 필요)
 - 그러나 가장 주된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인 만혼화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국문화의 특성상(법률혼 출산 98%수준) 보육정책만으로 근본적 해결 곤란

- 보육이나 자녀양육비용 경감은 결혼 후 출산 시에 한정된 효과를 가짐
- 따라서 2020년까지 만혼화 완화에 역점(이는 청년층 미스매칭 과도 연계)
 - 출산을 회복 유럽국가들의 초혼연령 및 초산연령 증가세 둔화
 - * 서유럽, 북유럽, 미국 등은 문화적으로 법률혼 이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의 비율이 높은 성향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적어도 단기간 서구문화로의 변화를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만혼화 및 만산화 경향을 둔화시키는 것이 중요
 - 일-가정 양립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혼층만 아니라 미혼층의 결혼 결정에 중요한 여건이므로 ‘일-가정 양립 제고정책’을 동시에 역점 필요
- 2021-2030년 기간에는 본격적인 양육비용 지원에 역점
 - 만혼화 둔화시 본격적 양육비용지원은 출산장려에 보다 효과적 판단
 - *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주로 보육·교육비 지원에 중점을 두었을 뿐, 서구사회와 같이 본격적으로 자녀양육비용을 보편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 가능

마. 외국의 단계별 인구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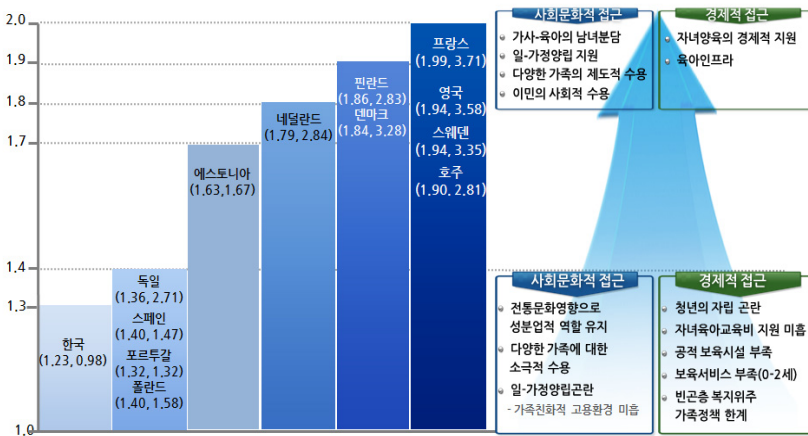
□ OECD 국가별 정책수준 및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른 출산율 수준

○ 초저출산(1.3 미만)

- 낮은 정책 수준, 사회문화환경 부적응

- 고청년실업률
- 상대적 중수준 출산(1.6~1.8 수준)
 - 높은 양성평등(일-가정양립 용이)
 - 다양한가족 비교적 높은 수용도
 - 상대적 높은 이민율(출산 기여도)
- 상대적 저출산(1.4 내외)
 - 낮은 수준의 정책 장기간 지속
 - 고 청년실업률 / 가부장사회 유지(일-가정양립곤란)
 - 다양한가족 낮은 수용도
 - 상대적 낮은 이민율(출산 기여도)

[그림 5-12] OECD 국가 출산율과 정책 수준



주1: 각 국가별로 괄호 안 숫자는 각각 출산율과 GDP 대비 가족정책 투자비율을 의미함

주2: 한국은 이들 국가에 비해 제한 투입 수준이 낮음

주3: 독일은 GDP대비 투자비율은 높으나 사회문화적 접근 부재로 낮은 출산을 지속

자료: OECD(2011), Family Database

- 상대적 고출산(1.9~2.1)
 - 높은 수준의 정책 장기간 지속
 - 양성평등(일-가정양립용이)
 - 다양한가족 높은 수용도
 - 상대적 높은 이민율(출산 기여도)

3. 세부인구전략 1: 출산율 제고(인구안정 선제투자)

가. 추진전략

- 2050년대 이후는 궁극적으로 출산력이 회복된 건전한 한국인구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된 인구규모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계획
 - 이를 위해 실현가능한 출산율 제고정책을 수립하여 단계적 추진 필요
- 기혼인구의 출산감소뿐 아니라 미혼인구의 만혼화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처
 - 저출산현상은 미혼인구 만혼화와 기혼인구의 출생아수 감소에 기인
 - 전통적으로 법률혼 후 자녀출산 규범이 지배적으로 만혼화 시 생리적 장애, 늦은 출산으로 인한 자녀양육 문제 등으로 인하여 출산율 감소 불가피
 - 초혼연령(여) 28.9세, 초산연령 30.1세(OECD 국가 중 최고령 국가 중 하나)
 - 2010년 혼외출산 비중 2.1%(유럽국가 대부분 30~50% 수준)

- (초혼연령별 출생아수) 25세 이하 초혼시 1.96명, 30~31세 초혼시 1.59명, 35세 이상 초혼시 1.08명(이삼식 외,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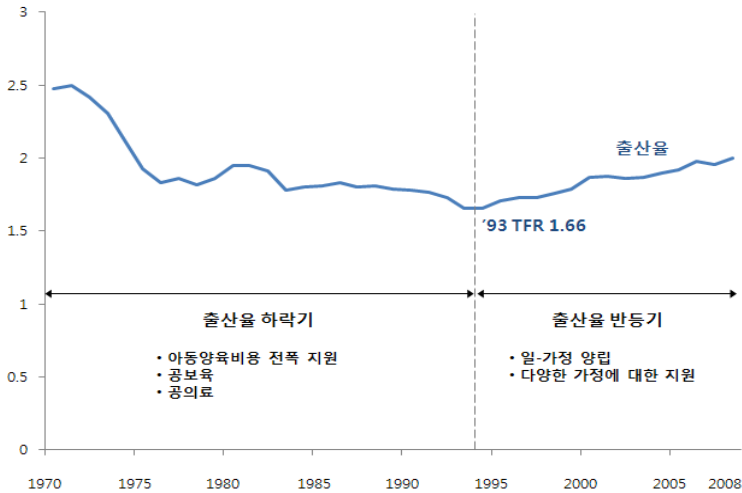
- 미혼남녀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결혼비용·주택마련곤란, 결혼일양립곤란, 소득·고용불안정, 마땅한 이성 못 만나 등
 - 미혼여성의 경우, 소득·고용불안정 13.5%, 주택·결혼비용 부담 19.5%, 결혼일양립 곤란 14.2%, 결혼생활 구속 9.9%, 마땅한 이성 못만나 10.8%(이삼식 외, 2009)
 - 미혼남성의 경우, 소득·고용불안정 27.8%, 주택·결혼비용 부담 19.4%, 결혼일양립곤란 9.0%, 마땅한 이성 못만나 9.1%

□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투자적 정책과 출산율의 직접적인 제고를 위한 정책의 두 Track으로 추진

- 기존에 다양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함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곤란, 그로인한 낮은 국민체감도 등 문제 제기
 - 대부분 사회적 투자의 간접적인 성격이 강하며, 출산율을 단기간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정책들은 미흡
- 출생아수 유지가 인구 구조 상 중요하므로,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출산율 제고가 가능한 정책들을 추가적 실시
- 이를 위해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와 스웨덴과 같이 GDP의 3% 이상을 투입하는 양적인 정책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나 단계별 출산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예산 투입 확대가 필요
 -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추이를 보면, 1.66명이 최저 수준이었고,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음.

- 프랑스가 1.66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가족지원 및 일가정 양립제도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부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었기 때문임.
 - 하락기에 해당하는 1960년대부터 1994년까지 지속적으로 가족지원 범위를 확대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왔음.
- 반등기에 해당하는 1994년 이후에는 수당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제도를 지속 보완함.
 - 특히 다양한 가족의 수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동거부부 지원을 확대하였음.
 -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주당 근로시간 35시간제 도입

[그림 5-13] 프랑스 출산율 추이와 정책 변화



자료: OECD(2011), Family Database

- 프랑스 등 대부분 유럽국가들의 경우 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출산율이 1.5 이하로 낮아지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출

산율 1.5수준까지 도달하기까지 전폭적인 지원 필요

- 단계별 출산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확충 수준은 2013-2015년간 GDP의 1.0%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 한국 0.66, 프랑스 3.71, 일본 1.30, OECD 평균 2.20
- 재원 확충을 통해 지금까지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서비스의 유형과 질을 선택’해온 것과 달리 ‘수요자적인 측면에서 국민이 서비스의 유형과 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정책체감도를 제고

□ 획기적인 저출산 예산 투자 필요

- GDP대비 가족지출비율을 증가시킬 경우 조혼인율 상승 등을 유발하여 출산율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
 - 가족지출비율이 현 일본수준(1.3%)으로 증가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1.61
 - OECD 국가의 평균수준(2.2%)로 증가할 경우 1.70
 - 프랑스 수준(3.7%)로 증가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1.85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

〈표 5-2〉 GDP 대비 가족지출 비율에 따른 합계출산율

남녀평등지수 (GDI)	혼인율	GDP 대비 가족지출 비율			
		0.7%	1.3% (일본)	2.2% (OECD평균)	3.7% (프랑스)
0.93('93)	6.2(2009)	1.27	1.33	1.42	1.57
	9.1(IMF직전 5개년 평균)	1.55	1.61	1.70	1.85
0.97 (호주수준)	6.2(2009)	1.29	1.35	1.44	1.59
	9.1(IMF직전 5개년 평균)	1.57	1.63	1.72	1.87

주: 혼외출산율이 현 2.1%(2010)에서 5%까지 올라갈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
 자료: 이삼식 외(201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출산정책의 기본방향

-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구조를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위하여 다면적 접근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경제적 접근
 - 만혼화 원인 해소
 - 보육인프라 확충 및
 - 질적수준 제고
 - 자녀양육 비용 경감
- 사회문화적 접근
 - 가족·생명존중 사상 강조
 - 일가정양립 제고
 - 다양한 가족 수용성 제고

[그림 5-14] 저출산대책 기본 방향



□ 시기별 저출산 중점과제

- 장기적 인구안정을 위해 1.2(2010) → 1.45(2020) → 1.7(2030) → 1.9(2040) → 2.1(2050)
- 그간 보육인프라 구축 및 보육·교육비 지원확대로 보육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된 것으로 평가 가능(질적 수준 제고는 여전히 필요)
- 가장 주된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인 만혼화를 해소하지 않고는 한국 문화의 특성상 보육정책만으로 근본적인 해결 곤란
 - 보육이나 자녀양육비용 경감은 결혼 후 출산 시에 한정된 효과를 가짐
- 2020년까지 만혼화 완화에 역점(이는 청년층 미스매칭과도 연계)
 - 출산을 회복 유럽국가들의 초혼연령 및 초산연령 증가세 둔화
 - 일·가정양립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혼층만 아니라 미혼층의 결혼 결정에 중요한 여건
 - 일·가정양립 제고정책을 동시에 역점 필요
- 2021-2030년 기간에는 본격적인 양육비용 지원에 역점
 - 만혼화 둔화시 본격적 양육비용지원은 출산장려에 보다 효과적 판단
 -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주로 보육교육비 지원에 중점을 두었을 뿐, 서구사회와 같이 본격적으로 자녀양육비용을 보편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 가능
- 전체적으로 자녀양육 경제적 지원수준을 2050년까지 OECD 평균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표 5-3〉 시기별 저출산 중점과제(2010-2050)

	1단계(1,2-1,4) (2010-2020)	2단계(1,4-1,6) (2020-2030)	3단계(1,6-1,8) (2030-2040)	4단계(1,8-2,1) (2040-2050)
만혼화 원인 해소	• 대졸자·대기업 위주 고용안정에서 고졸자 고용안정 확대 • 결혼비용 부담 경감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 대졸취업자 전공·직무 일치 정도 및 대학교육·직업업무 간 상관성 제고 • 통한 기업부담경감 및 결혼지원 원인 해소		
보육인프라 확충 및 질적수준 제고	• 취약보육해소			
자녀양육 비용경감 가족· 생명존중 사상강조	• 아동수당도입 • 학교교육 강화 • 사회교육 강화	• 다자녀가정 조세 감면혜택 확대		
일·가정양립 제고	• 일가정양립제도 사용 확대 • 사회주체별 인구 모니터링체계 도입	• 비정규직 등 고용 보험 미가입자 사각 지대 해소		
다양한 가족 수용성 제고	• 이혼자녀 양육책임 강화 • 입양, 미혼모/부(미성년 동거부부) 지원 강화			

나. 세부정책방안

(1) 만혼화 원인 해소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저출산은 약 50%가 만혼화에 따른 자녀수 축소에 기인
- 현재 청년층의 만혼화는 고용불안정과 결혼비용부담(주택마련 등)에 주로 기인

- 남성의 결혼하지 않는 사유: 소득부족 14.3%, 실업·고용불안정 13.9%(이삼식 외, 2009)
- 결혼비용은 한국과 일본이 유사하나 주택마련 비용 포함 시 한국이 월등히 높은 수준(신혼집 마련은 신랑, 신부 스스로 64.4%, 부모지원으로 31.5% 등)
- 따라서 청년층 고용과 주택마련은 스스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 보조 또는 획기적 지원 노력 필요
- 대졸취업자의 전공과 직무간 높은 불일치정도 및 대학교육과 직업업무 간 낮은 상관성으로 인해 기업의 재교육 부담이 높고, 청년실업률이 높아 결혼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
- 국내기업의 신규채용인력 재교육기간은 평균 19.5개월, 비용은 1인당 6,088만원(100인 이상 기업의 재교육 비용은 2조3049억원(한국경영자총협회, 2008))

□ 취업준비기간 단축 방안

- 대졸자·대기업 위주의 고용안정에서 고졸자의 고용안정까지 확대
 -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진로교육 강화(학년 단계별 국가 차원의 진로지도·표준모델 개발·보급 등)
 -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후진학(後進學) 체제 구축(사내대학 활성화, 전문계고 우선 고용제 등) 등
 - 고졸자 취업 할당제(고졸 취업가능 종사직 중 일정비율 고용 의무화, 비충족시에는 분담금. 예) 장애인 또는 고령자 의무 고용률)
- 대졸취업자 전공·직무 일치 정도 및 대학교육·직업업무 간 상관

성 제고 통한 기업부담경감 및 결혼지연 원인 해소

- 대학교육의 산업요구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학교-노동시장간 원활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교육에서의 도제제도 강화
 - 이탈리아의 경우 노동부 지원에 의해 대학단계의 도제제도가 시범운영중인데, 현재까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 현재 기업·사업주 단체가 대학 및 자체시설에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제도(청년취업아카데미, 2011년 50개소, 359억원)를 확대
 - 도제제도 확대를 위한 관련규정 제정(도입가능한 전공분야에 시범사업)
 - * 학교에서의 이론교육과 기업체에서의 OJT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벤처·중견기업 이상의 참여와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 학교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직무능력개발형 인턴제 정착을 위한 Co-op 프로그램

- 산업별,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대학 전공이나 수준별(전문대, 대학, 대학원)로 현장실습인정을 정하고 이를 자격제도와 연계하는 등의 조치 및 지원
 - 유럽 대학의 유사 도제제도나 미국, 영국, 호주 등이 실시하고 있는 Co-op제도는 기업들의 주도적 역할과 정부의 지원 및 감독, 그리고 근로자단체나 조직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관여, 엄격한 학사관리로 소기의 성과 달성

□ 결혼비용 부담 경감

○ 결혼지원계좌(매칭 펀드) 도입

- 20~30대 결혼을 앞둔 커플이나 신혼부부 중 저소득층을 대상

으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1:1매칭, 최대 매칭액수를 360만원 (3년)까지로 제한

- 결혼비용 사용 출처를 제한(결혼식 비용, 주택 자금 등)하며, 증빙 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접 해당 사용처로 지급
- 이를 위해 결혼기금재단 설립, 결혼기금을 결혼자금대출 신원 보증계정 및 결혼자금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치(결혼기금조성 관련법 신설)

○ ‘절약결혼 문화조성’ 범시민 운동 전개 및 모델 개발·보급

- 호화예식 등 허례허식을 줄이는 결혼다이어트 캠페인 지속 추진
- 간단하고 검소한 형식의 ‘미니결혼식’ 모형 개발, 지원 등
- 결혼식 비용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의 강당·부속건물을 저소득층에 일정기간 무료 개방
- 신혼여행 비용절감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교통비와 숙박요금의 일부를 정산할 수 있게 저소득층에 교통·숙박쿠폰 발행·지급

□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높은 주택자금 및 최근 전세금 상승 고려)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제도 개선

- 신혼부부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 뿐만 아니라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의 소득자격 요건을 신혼부부에 한하여 보다 완화
- 주택구입 및 전세금 마련을 위한 저리의 자금지원 폭 확대(최근 전세금 상승 고려)

○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주택의 획기적 확대

- 획기적으로 저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을 국가가 매입한 이후 신혼부부 대상으로 장기 임대

- 스페인: 팔리지 않는 주택을 정부가 사서 젊은이들에게 공공주택으로 싸게 공급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에게 넘어가게 됨으로써 주택에 대한 젊은 층 수요와 공급이 매치되지 않아 청년층 독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짐.
- 현재 시행중인 공공부문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전월세 주택 공급과 연계
-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의 전세전환(현행 보증부 월세 지출에 따른 주택구입 자금 축적 어려움 완화)
- 신혼부부 대상 월세의 소득공제액 확대, 소득공제 급여기준 및 주거면적 기준 완화
 - 현재 총 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월세액의 40% 공제 → 예)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소득의 25% 감액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등
- 젊은층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수도권 및 산업도시 인근에 ‘신혼부부 타운(가칭)’ 조성
 - 임대주택, 저렴한 소형아파트 등 대량 공급
 - 보육인프라, 육아쉼터 및 안전시설, 육아정보센터, 보건의료시설(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기반 구축
 - 주거지(타운)-직장(타운외 지역)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망, Smart Office 등 구축 (일-가정 양립 차원) 등
 - 재건축, 재개발 등에서도 일부 비율은 신혼부부용으로 지정 할당 고려
- 신혼부부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 (복층형, 신세대 공감형)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 확대

- 결혼준비 비용 마련기간 단축을 위해 대기업, 연금공단 위주로
입사 초년생을 대상으로 관사 제공 등

(2) 한국형 Speed-Premium(둘째아 출산기간 단축 방안)

- “스피드 프리미엄”은 첫째아 출산 후 둘째아 출산 기간을 단축시키
기 위한 제도로 출산을 제고 등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음
 - 스웨덴 정부는 1985년 “스피드프리미엄” 제도를 도입하여 30개
월 이내에 추가적인 자녀를 출산하면 첫째아 출산 당시 임금수
준에 준하여 육아휴직급여 제공
 - 최근 독일에서 36개월 이내의 스피드프리미엄 도입
- 첫째아 출산 후 36개월 내 둘째아 출산시 스피드프리미엄 제공
 - 현행 육아휴직급여를 평상 시 임금의 40% 수준으로 정률제(최
소 50만원, 최대 100만원)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둘째아 출산기
간 단축 시 육아휴직급여를 첫째아 육아휴직 시 급여(혹은 상당
액)의 2배를 지급하는 혜택 제공
 - 두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육비
등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 발생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우선권을 부여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등 기존의 주거지원제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여 자격요건 완
화, 대출금액 상향 조정 등에서도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동
시에 고려

□ 다자녀가정 주택용자지원제도 개선

- 주택용자조건으로 거주면적의 제한을 폐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해 주택 용자 대출 이자율을 추가 하향 조정
 - 다자녀가구는 보다 넓은 주택면적이 필요하나, 현재 85㎡이상 거주 저리의 용자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전세(매매)대출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문제점 개선 효과 발생
- 다자녀가구가 자가주택 구입 및 건축시 소득수준과 자녀수와 연동하여 보조금 지급방안 검토

□ 둘째아 이상 자녀 출산에 대한 양육수당을 매칭방법으로 제공

- 신혼부부 또는 1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등 이용과 무관하게 다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둘째아 이상 출산시 월 최대 10만원(소득수준별 차등적용)까지 1:1 매칭하여, 최대 매칭액수를 360만원(생후 36개월)까지로 제한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는 양육수당은 차상위계층에 한정하여 정책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문제점 개선 효과
 -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은 보육료 이외에 많은 지출항목이 존재(분유·이유식·보조식품, 기저귀, 보건의료지출, 장난감, 육아용품 등)하고 있으며, 특히 다자녀의 경우 그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둘째아 이상 출산 촉진 효과)
 - 외국에선 공보육이 구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 등 각종 수당제 발달

(3) 보육인프라 확충 및 질적 수준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보육정책은 수혜대상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양적 기반을 구축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2011년까지 차상위계층에서 2013년까지 소득하위 70%로 확대
 - 보육료 지원: 2013년 0-5세 전 아동 공보육 실현
 - 교사근무환경개선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확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 보육(농어촌, 맞벌이 등), 낮은 보육 서비스 수준 등 질적인 문제 지속
- 따라서 향후 보육정책은 서비스 질 향상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강화 필요

□ 취약보육 해소방안

- 보육취약지역(농어촌 등) 소규모 국공립시설 확충
 - 폐교나 공공기관 등 유휴 시설을 활용하여 소규모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통합 시설 확충
- 시설보육과 시설외보육 간 균형 발전
 - 아이돌보미 교육 및 자격 부여 제도로 영리시장에 교육 이수 인력 확대를 통한 가정내과건보육서비스 확대 및 질적 제고
 - 아이와 부모를 위한 이용시설(서울시 육아플라자 등) 확대(기존 보육정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이용 가능)

○ 근로와 보육서비스간 연계 강화

- 취업여성 등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및 이용자 조건별 차등 지원
- 보육시설 기준운영시간 준수에 대한 감독 강화 및 토요일 보육, 휴일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취약보육문제 해소를 위한 거점형 어린이집 설치(공공형 보육시설 활용)
-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 불이행 시 분담금 징수
- 시차별 출퇴근제, 하루 30분 이내의 짧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장기간 이용, 근로시간저축휴가제 활성화
-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의무 교육 도입

○ 보육교사 처우개선

(4) 자녀양육 비용 경감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중 자녀양육비용 부담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이삼식 외, 2009)
 - 기혼여성의 출산중단 이유로 무자녀 여성은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이 40.9%, 1자녀 여성은 43.7%로 높음
 - 미혼남녀의 1자녀 출산 희망 이유로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이 남성 45.1%, 여성 49.7%로 높음
- 현재까지 보육료 지원을 주로 시행하고 있을 뿐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에 대한 보편적 접근 미흡
- 따라서 자녀양육의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양육할 수 있는 보편적 제도 도입 필요

□ 아동수당 도입

- 보육료 외에 의료비, 학습비, 식비 등 지원 필요
- 방안: 점진적으로 양육수당을 아동수당화(소득수준, 보육시설 이용 여부 제한 없이)
 - 1단계: 0~2세 둘째아 이상(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
 - 2단계: 0~5세 둘째아 이상(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
 - 소요예산: 1단계 시 연간 약 1조 2,251억원 소요, 2단계 시 연간 약 2조 189억원 소요
- 선진국 사례
 - 2008년 기준 전세계 88개국에서 아동수당제도를 운영, OECD 국가 중에서는 2006년 기준 멕시코, 스페인, 미국, 한국만이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
 - 주요 국가 사례: 스웨덴은 만 16세 이하 아동 대상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급. 덴마크는 18세 미만을 대상 연령대별로 차등 지급, 핀란드는 1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 대상 자녀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 등

□ 다자녀가정 조세감면 혜택 확대

- 다자녀가정의 높은 조세 부담률
 - 총임금대비 조세부담률
 - OECD 평균 : 2자녀 기혼자가구 부담률(18.8%)과 무자녀 독신자가구 부담률(24.3%) 간 5.5%p

- 한국 : 2자녀 기혼자가구 부담률(9.4%)과 무자녀 독신자가구 부담률(11.9%) 간 2.5%p

○ 다자녀가정의 조세 부담 경감 방안

- 다자녀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폭 확대
- 다자녀가족에게 유리한 세액공제(과세단위를 개인이 아닌 가족으로 규정)로 전환
- 프랑스의 n분의 n승제 :
 - * 가족 총소득 합산 금액을 가족계수로 나누어 계수 1당 과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가족계수를 곱하여 가족 전체 세액 계산
 - * 동일한 소득의 경우, 가족계수가 많을수록 계수 1당의 과세 소득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누진세 하에서는 세부담 완화
 - * N분의 N승 세제는 가족형성 초기에는 부담액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고소득 세대일수록 감세효과가 커지며, 특히 다자녀가족에게 세율의 누진성 완화

〈표 5-4〉 가구형태별 총 임금 대비 조세격차 비교(2010)

(단위: %)

구분	총임금대비 부담률		총임금 대비 순 부담률	
	무자녀 독신자	2자녀 기혼	무자녀 독신자	2자녀 기혼자
한국	11.9	9.4	11.9	9.4
OECD 평균	24.3	18.8	24.3	12.5

자료: OECD(2011), Taxing Wages 2009-2010.

(5) 가족·생명존중 사상 강조

☐ 학교교육 강화

- 관련 교과목 차시 증가, 육아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교원 관련 프로그램에서 일정 시간 비율 할당
- 교자재 등 확충

☐ 사회교육 강화

-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회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강화
-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지속(연속극, 다큐멘터리 등)
- 출산양육에 관한 코디네이터 배치

(6) 일가족양립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관련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 인력 대체수준, 사각지대 존재(비정규직 등), 기업문화 미성숙 등으로 실효성이 낮음
- 제도실천을 위한 기업 경영진 등 인식개선, 분위기 조성 급선무
- 기업과 종사자 부담을 모두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도입 필요

☐ 일가정양립제도(육아휴직, 근무시간단축, 탄력근무제 등) 사용 확대

-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교육 및 홍보 강화
 - 중앙정부, 지자체의 CEO 포럼 구성 및 지속적인 개최
 - 기업 내 가족친화기업경영 교육 정례화

- 가족친화기업경영을 위한 기업별 현장, 강령 발표 및 준수
- 일가정양립제도 이용 홍보 강화(제도 종류, 신청 자격 등을 포함한 안내책자 배포 및 대중매체 이용)
- 육아휴직급여 현실화(현 평상시 임금의 40%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및 인력대체 활성화(고용부 시범사업 추진 후 확대)
- 부성휴가급여 도입

- 배경

- 현재 모성휴가의 경우 출산전후 90일간 평상시 임금 지급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여성육아휴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그러나 일-가정양립정책의 성패는 기업과 함께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가사 참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대체수준과 인력대체수준 등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여성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1년간 부여)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방안

- 출산 초기에 산모 및 신생아의 보호 차원 그리고 직접적인 육아체험을 통한 신생아와 아버지간의 정서적 교류 촉진 등을 위해 1개월 정도 유급부성휴가(평상시 임금의 80~100% 수준, 고용보험+직장)를 제공
 - * 현행 배우자출산휴가(3일 유급+2일 무급)로는 위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다는 한계성 보완
-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며, 다만 부성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

<기준>	남성육아휴직 12개월(임금의 40%, 100만원 상한, 고용보험)	
↓		
<개선>	부성휴가 1개월(임금 80~100%, 고용보험+직장) *배우자출산휴가 3일(유급) 제외	육아휴직 11개월(임금의 40%, 100만원 상한, 고용보험)

□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사각지대 해소(부모보험제도)

- 중기적으로는 국가와 기업(자영업자)이 공동으로 분담하여 보험 수익금 구성
 - 예) 국가 : 기업(자영업자) = 7:3
(국가는 모성보호기금 등을 통해서 필요 재원 확보)
 - 스웨덴의 경우 기업은 급여의 2.2%, 자영업자는 순소득의 2.2% 보험료 지불
- 장기적으로는 기업(자영업자)과 근로자의 보험료로 재원 확보
 - 예) 캐나다는 근로소득자 0.559%, 고용주 0.782%, 자영업자 0.993%

□ 사회주체별 ‘인구모니터링체계’ 도입

- (필요성) 저출산 등 인구문제는 그 속성상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사회주체의 적극적 참여 및 역할 분담을 통한 인구유지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
-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사회주체별로 인구유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주체별로 기존의 평가시스템 등에 관련 평가항목(높은 가중치 부여) 포함하여 평가·관리

- 지자체
 - 현행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평가항목으로 “지자체의 합계 출산율(연령구조 표준화)” 포함(아주 높은 가중치 부여)
 - 이를 위해 합계출산율을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영역 중 하나의 항목이 아닌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류하여 특별관리
- 공공기관
 - 공공기관(624개) 대상 평가(경영실적부문)에 “기관 자체의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실적”을 포함
 - * 출산 시 승진 및 임금 평가에서 가산점 부여
 - 중앙행정부처와 지자체의 기관단위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인구정책 경진대회”를 통해 평가 등 실시
- 기업
 - 기업의 육아참여 활성화
 - * 예) 시차출퇴근제, 요일탄력근무제, 임산부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직무공유제, 출산축하금, 배우자 출산휴가, 직장보육시설 설치, 자녀 학자금 지원, 육아안식년, 수유실 및 산모휴게실 설치, 육아휴직 연장(2년), 정시 퇴근제, 합동결혼식 지원 등
 - 현행 가족친화기업인증제 기업의 참여 의무화 및 인센티브 강화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적용하고, 평가 및 조치 의무화
 - 실적 우수기업에 출산양육친화기업장려금과 기타지원(법인세 감면, 사회보험료 분담금 지원, 정부·지자체 지원 시 우선순위 부여 등) 제공
 - * 가족친화우수기업 대상 지자체에서 지방세 감면, 공장부지 등 혜택 제공 등
 - 일정기간 인센티브 제공 후 출산친화기업경영 부진 시 환수

등 실적 부진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순위) 발표 고려

(7) 다양한 가족 수용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없이는 결혼기피, 출산억제(낙태 등)로 인하여 높은 수준으로 출산을 이행 곤란
- 미성년자녀가 있는 이혼 62.9%(통계청, 2010), 이중 동거자가 모(母)인 경우 84.1%(김승권 외, 2009)
 - ‘이혼모+자녀’ 가족의 소득수준이 100만원 이하가 50.8%(여성가족부, 2006)로 빈곤한 반면, 부모부터 조금이라도 양육비를 받은 비율은 16.6%에 불과(김승권 외, 2006)
- 법적 양육비 수급권리가 있으나 수급 받지 못한 비율은 35.0%(여성가족부, 2011)
 - 결혼의 불확실성 및 이혼 시 자녀양육부담으로 결혼 기피 또는 결혼 후 자녀출산 기피

□ 이혼자녀 양육책임 강화방안

- 이혼부부에 대한 자녀양육비책임보험제도 도입(고금자, 2009)
 - 이혼 신고 시나 이혼판결 시 보험가입 의무화(강제보험 방식)
 - 미성년자 자녀 수 및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 차등 적용 등
- 부모재산분여제도 도입
 - 이혼 당시 부부 각자의 보유재산에서 일정부분 금원(현금화)을 미성년자에 강제할당하여, 이를 국가가 관리하여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자활자립금 등에 활용

- 선취특권 : 비양육부·모의 재산 점유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 금지
 -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의 동산·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비 점유적 권리 부여(비양육부·모의 재산 점유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 금지)
 - 근로소득이외 소득자원(부동산, 상속 등)으로부터 자녀양육비 징수
 - 근로소득 이외 소득자원(부동산, 상속 등)으로부터 자녀양육비 징수 (강지원, 2010)
 - 양육비 선급제도 도입 : 국가기관의 자녀양육비 선지급, 책임 있는 부·모에게 후 구상(박복순, 2006)
 - 국가기관의 자녀양육비 선지급, 책임있는 부·모에게 후 구상
 - 개인의 양육책임 강화를 위해 간접강제 등 이행제도 도입
 - 여권발급 제한, 면허취소,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표, 양육비 기준 공표 등
 - 양육비 이행강제기관 설치(법률구조공단·법인 등에 위임·위탁) (강지원, 2010)
 - 강제집행절차 신청, 국세청 소득자산자료·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열람, 부·모 위치서비스 이용, 친자확인·인지청구·양육비 이행청구 소송대리 등 수행
- 입양, 미혼모·부(미성년 동거부부) 지원 강화
- 원치 않는 임신 방지
 - 학교/사회성교육·성상담 강화
 - 불법 낙태 처벌 강화

○ 낙태 예방

-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강화
- 임신부(부모, 생부 포함) 대상 상담 프로그램 제공(Pregnancy Counseling)
-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에 “경제적·사회적 이유”를 포함시키되, 의사 2인 이상의 허락을 받고, 낙태숙려제 등 제도적 장치 강화를 통한 현실적 낙태 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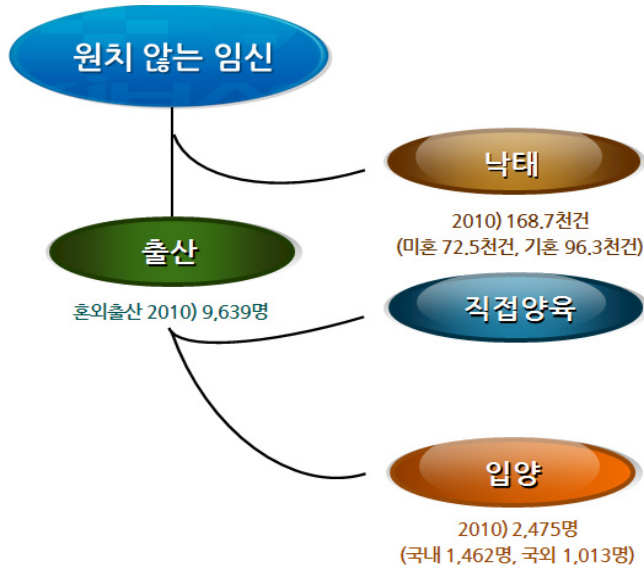
○ 미혼모/부(미성년 동거부부) 지원 강화

- 학습권, 양육권 강화
- 자녀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특수성 인정)
- 사회문화적 차별 철폐(일반 가정으로 인식 제고)
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가구 대상
- 미혼부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
 - 외국 사례 스웨덴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의 양육비 미지급 등 문제시 사회보험청이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며, 자녀와 살지 않는 부모는 사회보험청에 이 금액을 갚아야함

○ 국내입양 활성화

- 입양기피아(장애아, 연장아 등) 양육 가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대학 졸업까지 교육비, 의료비, 양육비 등 전면 지원
 - 장애아의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필요한 의료비 지속 지원
- 인식 개선
 - 정서적, 혈연적 관점이 아닌 사회복지적, 아동복지적 관점 강조

[그림 5-15] 다양한 가정지원 방안



4. 세부인구전략 II: 고용률 제고 및 외국인력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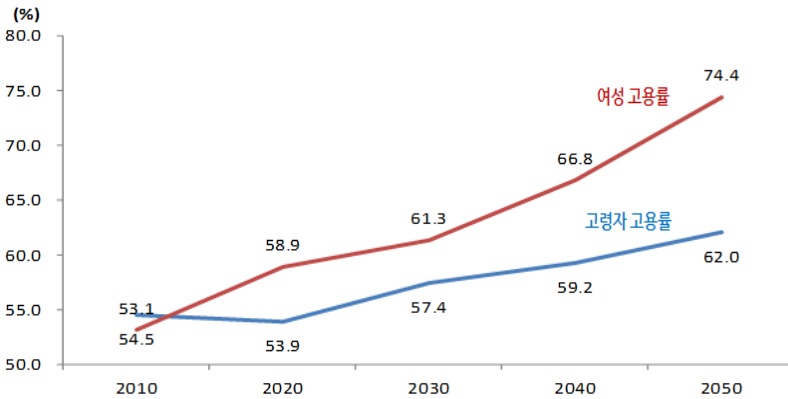
가. 추진전략

- (2010-2030년) 출산율 수준과 상관없이 총량적 인력은 공급초과로 여성인력부족 및 직종간 미스매치 해소에 중점
 - (청년층 고용률 제고) 고졸자 고용 확대를 위한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진로교육 강화, 후진학 체제 구축,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중소기업 지원형 청년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
 - (외국인력 도입) 내국인 기피 직종에 대한 외국인력 제한적 도입

□ (2030-2050년) 총량적 인력 공급부족이 본격화되므로 여성 및 고령자 고용률 제고와 외국인력 도입 필요

□ 적정인구유지를 위한 출산율 수준에 따라 탄력적 적용

[그림 5-16] 고용률 제고 목표(2010-2050)



자료: 이삼식 외(2011), 미래 인구변동에 대응한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 세부정책방안

(1) 청년고용률 제고(2010-2030년)

□ 현황 및 전망

○ 청년층 고용률은 2005년 1분기 45.1%에서 2011년 1분기 40.0%로 감소

-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15-64세)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으나, 그중에서도 청년고용률**(15-24세)은 더 낮은 현실(OECD, 2011)

* 대한민국 63.3%(2010), 미국 70.9%(2008), 일본 70.7%(2008),

OECD 평균 64.8%(2009년)

** 대한민국 22.9%(2009), OECD 평균 40.6%(2009)

- 향후 청년층인구 감소, 고학력화 등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한 미스매치가 심화될 것임에 따라 청년층 고용사정은 개선되지 않을 수 있음.

□ 기본방향

- 향후 인구변동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사정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제 하에 중장기 전략 수립 필요
- 중장기적으로 총량적인 노동공급 부족문제 직종 부문별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될 전망으로 청년층 고용친화적 노동수요 및 공급정책 추진
- 대졸자·대기업 위주의 청년 일자리에서 고졸자·중소기업 중심의 청년 일자리 확대로 정책 전환
 -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와 함께 저출산 지속으로 인한 부족한 노동력 확보, 고학력화와 그에 따른 만혼화 및 저출산 문제 동시 극복에 효과적
 - 결혼하지 않는 사유(남성) : 소득부족 14.3%, 실업·고용불안정 13.9%(이삼식 외, 2009)

□ 정책과제

- 고졸자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반여건 조성
 -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진로교육 강화(학년 단계별 국가 차원의 진로지도·표준모델 개발·보급 등)
 -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후진학(後進學) 체제 구축(사내대

학 활성화, 전문계고 우선 고용제 등) 등

- 중소기업 지원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일자리 유인촉진 방안
 -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형 글로벌 청년인력 양성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 새로운 산업창출과 융복합화에 따른 청년 일자리 공급기반 확대
 - 융합형 일자리 개발, 신규 직업 창출
- 정부주도 일자리창출사업의 효율성 제고 : 청년계층별 특화 정책 수단 개발

(2) 여성고용률 제고(2030-2050년)

□ 현황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고학력 여성인력활용율이 가장 낮은 실정
 - 높은 비정규직 비율, 큰 남녀임금 격차, 수직적 수평적 남녀직종 격리,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일-가정 양립 곤란 등에 기인

□ 정책과제

- 일가정양립지원 강화를 통한 경력단절 방지
 - 모성보호강화, 육아휴직대상 확대, 휴직형태 다양화,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 등
 - 시간제 근로 도입 희망 기업에 컨설팅, 인건비 지원 등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개발 및 확산(이를 위해 인프라 구축, 기업 지원체계 마련, 관련 법 제·개정)

○ 여성취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 부처간 초등학생, 영유아 돌봄지원 사업 등의 사각지대 해소, 사업시행기관의 인력파견형식에서 사회적 기업화하여 상용일 자리로 전환

○ 평등한 고용환경 구축과 인력활용의 다양화

- 시간제에 대한 차별 해소 및 동등처우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단시간·기간제와 통상근로자 전환제도, 사업주지원금제도를 한 시적 도입
- 안정된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 가칭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사업을 현행 ‘제도관리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
 - 정부 우선 도입 후 민간확대
 - 이행여부에 따른 기업컨설팅, 미준수 제재, 인센티브 강화 등

(3) 고령자 고용률 제고(2030-2050년)

□ 기본방향

- 고령 인력에 대한 인식을 사회·국가적 부담(Burden) 및 대체 수단에서 사회적 자원(Resource)과 재출발 주체로 전환
- 노동시장에서는 능력이 있는 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는 사회참여 등 재능 나눔 기회 확대

□ 정책과제

-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도록 지원
 - 기업의 고비용 연공급 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선

- 노사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연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고령자 세대 간 공생 발전 여건 조성
- 시간제 근로전환 지원 등 점진적 퇴직 활성화
- 퇴직준비 및 직업능력개발 강화
 - 퇴직(예정) 근로자에 대한 전직교육을 강화하고, 공공 전직지원 서비스 활성화
 - 경력 등 개별특성을 고려한 재교육 및 훈련지원 강화
 - 평생 재교육과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 체계 개편
- 조기 재취업 및 일자리 지원 강화
 - 저소득, 취업애로 계층에게 시간제 등 틈새 일자리 지원
 - 퇴직 전문인력은 중소·벤처기업에 컨설턴트 또는 재취업으로 연계
 - 예비 창업자에게 교육·컨설팅·자금 지원 및 도시 은퇴자에 대한 귀농·귀촌 서비스 지원 강화
- 사회기여 및 재능 나눔 활성화
 - 노동시장 은퇴 인력이 지식·경험·재능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간 연계 강화 및 통합 정보망 구축

(4) 해외동포 인력활용

□ 기본방향

- 역사적 배경 및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세계 170여 개 국가에 재외동포 분포

- 동포애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한 노동력 부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 마련 필요

□ 현황

-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법 적용 범위의 제한으로 방문취업제 운영하나 여러 문제점 존재
 - 중국 및 구소련지역 6개국 동포에 대하여 자유왕래와 36개 업종의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 가능(2007년 3월 시행)
 - 유효기간 5년의 복수 사증을 발급하지만, 한번에 최장 3년까지만 체류 가능
 -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 등이 있는 동포는 연간 허용인원 제한 없으나 무연고 동포는 연간 허용범위(쿼터) 범위 내에서 한국말 시험 후 기준 점수 도달자 중 무작위 추첨

□ 정책과제

- 재외동포 문제를 노동력 수급차원이 아닌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며, 재외동포법에 대한 전면적 검토 필요
- 방문취업제 체류기간 연장
 - 일본: 1989년부터 브라질, 페루 등 남미국가로부터 외국인동포(넛케이진)에 대해 가족동반이 허용되며 취업활동의 제한이 없는 ‘정주자’, ‘일본인 배우자’ 체류자격 신청 가능, 체류자격 연장 가능(2010년 약 30만명)
- 입국 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거주지 등)
 - 국내 역이민자에 대한 지원: 남해군의 독일마을 지원

(5) 외국인 인력 활용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체류외국인은 2000년 482천명에서 2011년 4월 1,354천명(총인구의 2.5%)로 증가
 - 외국인인력 712천명(비전문 486천명, 전문 43천명), 불법체류자 168천명, 결혼이민자 144천명, 유학생 66천명
- 현재의 외국인력정책은 중장기적 인구변동의 관점보다 인력부족에 대응한 필요인력의 충원이라는 관점에서 단기적 대응방식 유지
 - 대부분 저숙련·단순직종으로 경쟁력 없는 영세기업의 인력난 완화수단으로만 활용될 경우 산업구조조정 지연,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저하 우려
 - 향후 생산기능인력, 단순노무직이나 가사 간병서비스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나 이 부분은 내국인 활용전략과의 상충 가능
 - 동포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사회통합 지원, 외국인 유학생의 노동시장 유입(연계)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전략 미흡

□ 외국사례

- 캐나다
 - 캐나다는 1971년 세계최초로 ‘다문화주의’를 국가의 공식정책으로 채택한 이래 다문화정책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
 -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이민자(주로 비유럽계)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캐나다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모자이크식 다문화주의를 표방함.

- 1967년부터 포인트시스템에 바탕으로 우수 이민자유입 정책을 인구확대방안으로 채택하여 실시함. 최근에는 경제이민을 확대 실시하면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및 경제발전을 도모함.
- 경제이민은 학력, 경력, 나이, 언어 등 점수제(Point System)를 통해 자격을 심사하여 67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2008년 12월에 이민법을 개정하여 IT개발자도 1년 안에 이민 가능, 전문기술인력은 이민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 취득 용이성 제고)
- 지역수요 맞춤형 지자체추천 경제이민(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 허용 : 1991년부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포인트 기준에 따라 노동허가를 받아 들어오는 경제이민 허용. 2008년 현재 전체 경제이민의 16%가 PNP 경제이민임.

○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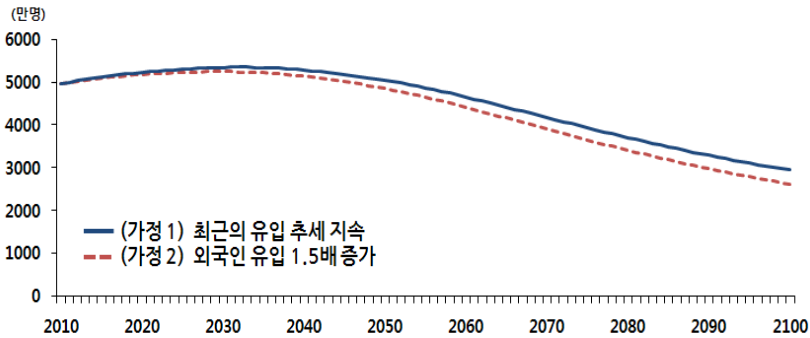
- 일본의 외국인노동자정책은 단순노동자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 하에서 귀국을 전제로 한 외국인노동자정책을 고수하면서 산업연수생제도 유지, 우수인력 유치 등 정책기조 설정
- (단순노동자) 단기순환을 원칙으로 하는 산업연수생제도 유지
- (고도인재) 우수 외국인재 유치를 위해 ‘유학생 30만 명 계획 (문부과학성, 2008년)’ 수립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저출산·고령화의 대책으로서 외국인 수용에 대한 정부부처 및 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는 공식적인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현재 관련 부처가 분산 처리, 지자체 중심 추진).

□ 외국인 유입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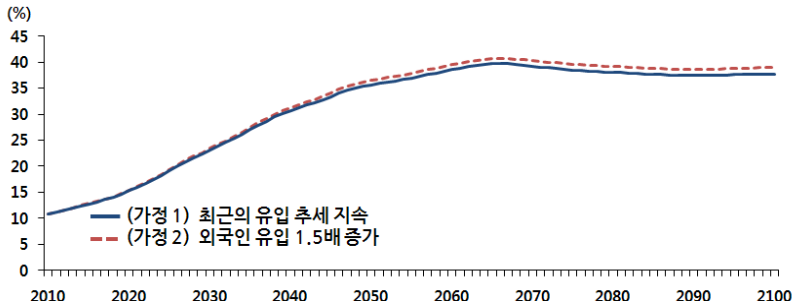
- (인구학적 효과) 총인구 증가, 고령화 다소 완화

[그림 5-17] 외국인 유입의 효과: 총인구



자료: 이삼식 외(2011),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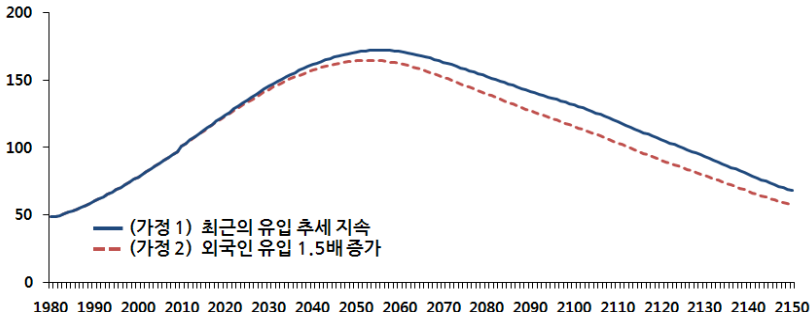
[그림 5-18] 외국인 유입의 효과: 고령화(노인인구비율)



자료: 이삼식 외(2011),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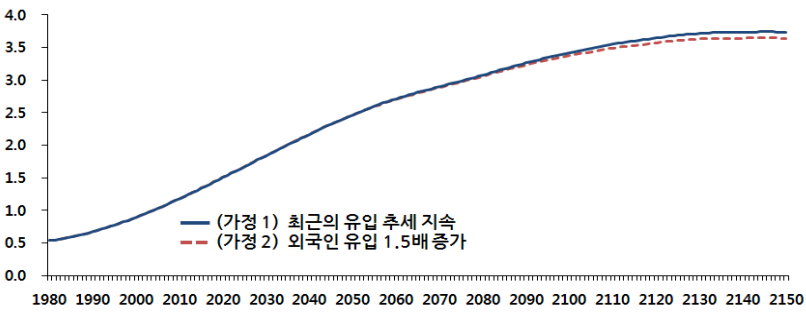
- (경제적 효과) 유입 외국인의 노동생산성이 지나치게 낮지 않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 기여

[그림 5-19] 외국인 유입의 효과: GDP



자료: 이삼식 외(2011),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5-20] 외국인 유입의 효과: 1인당 GDP



자료: 이삼식 외(2011),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회재정 효과) 외국인 유입 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하락 효과 발생

- 최근의 유입 추세 지속 시: 2010년 2.9% → 2070년 22.2% → 2100년 27.1%
- 외국인 유입 1.5배 증가 시 : 2010년 2.9% → 2070년 21.3 % → 2100년 25.7%
- 기금소진연도는 2062년으로 변동 없음

□ 추진전략 : 선별유입정책과 양성형이민정책의 기초 정립

- 선별유입원칙은 인구·산업구조·노동시장 등의 환경변화에 조응한 외국인유입의 사회경제적 편익 제고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노동시장의 불일치 해소와 우수인재 유치로 통한 경쟁력 강화의 Two-Track 접근
 - 인력수급의 질적 불일치(Mis-Match)에 대한 내국인 노동시장 보완성 하에서 필요외국인력 도입
 -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우수 외국인재의 적극 유치
 - 포인트제도 하에 1960년대부터 우수 이민자 유입정책을 펼쳤던 캐나다의 현재 고민은 고학력 이민자의 노동시장 내 저활용으로 인한 인력낭비(Brain Waste) 문제를 해소하는 것임. 따라서 우수인재이더라도 유입허용단계부터 노동시장 수요와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충분히 감안해야함.
- 양성형이민정책은 사회통합 비용이 적게 들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전문인력·연구개발인력·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 유입
 - 유학생의 노동시장이행 촉진, 결혼이민자 및 2세대의 노동시장 통합 지원

□ 정책과제

- 현행 비전문·전문 인력으로 양분되어 있는 외국인력정책을 결혼이민자, 유학생, 단기취업 및 FTA 인력이동을 포괄한 종합적인 정책으로 통합
 - 이를 위해 산업구조,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등 한 국가사회의 중장기 변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정책 추진체계 및 관련제도 정비

- 비이민비자(취업, 유학 등) 소지자가 숙련 기능인력 등으로 발전한 경우에 거주·영주자격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육성형 이민 정책 확대
- 10년 이상 체류하면서 세금 성실납부, 사회봉사 활동,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영주권 부여
- 인재양성·유치를 위한 「점수제(Point System)」 적용대상 확대
 - 비자발급 및 비자연장 등 모든 과정에서 전문 기술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장기비자 발급, 영주권 및 국적 부여
 - 한국에서의 합법적 취업경력, 직업훈련경험, 자격증 취득 등이 국내 영주 및 귀화에 인센티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점수제 활용 확대
 - 국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혁신, 서비스·문화산업 육성, 글로벌 경영 등을 촉진할 해외 우수인재 적극 유치
 - 이민자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유도하면서 우리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는 사회통합정책 추진
 - 이민자 유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위험관리체계 구축
- 외국인력정책 추진체계 정비
 - 현재 부처별·정책대상별로 나뉘어져 있는 외국인인력정책을 사회 변화에 부합하도록 중장기적·종합적 추진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6) 북한인력 활용

□ 장점

- 북한 인구는 일부 식량난이 극심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안정적 추이 유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 남한인구의 저출산·고령화에 다소 완충적인 역할
- 현황
 - 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에서 장기간 유지: 1983년 2.1에서 2008년 2.0으로 안정적 변화
 - 총인구는 2,422만, 고령화는 9.0%
- 전망
 - 총인구는 2,500만 명에서 유지하여 남한인구의 급격한 감소세와 대조적으로 향후 남북한 총인구 중 북한인구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1,780만 명에서 유지할 것으로 북한인력 활용 가능 시 남한의 급격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다소 상쇄하는 효과 발생 가능
 - 북한인구 고령화수준은 20% 내에서 장기적으로 유지하여 남북한 인구 통합 시 전체 고령화 수준 다소 완화하는 효과 발생

□ 단점

- 북한인구는 장기간 경제난, 식량난을 겪으면서 인구자질(교육, 영양, 건강수준 등)이 열악하여 질적으로 북한인력 활용 시 한계성 존재
- 현황

- 북한인구의 평균수명은 오히려 감소: 1993년 72.7세 → 2008년 69.3세
- 특이세대 존재
 - 식량난 등으로 인한 영양상태 악화로 실제로는 노동력 투입이 곤란한 세대(2010년 현재 15세 이하) 및 50세 이상 연령층
 - 1989년 통독 시 동독지역의 장년층, 노년층은 사회주의 속성, 기술개발곤란 등으로 노동력으로 거의 활용 불가능

〈표 5-5〉 북한의 특이세대 규모 및 비중(2015년 통일 가정)

	2015	2025	2035	2045	2055	2065	2075
특이세대인구(천명)	4,261	5,347	5,566	5,445	5,278	3,003	0
북한생산인구 대비 %	24.8	29.9	32.3	32.0	32.1	19.3	0.0
전체생산인구 대비 %	8.0	10.3	11.9	12.8	13.7	8.9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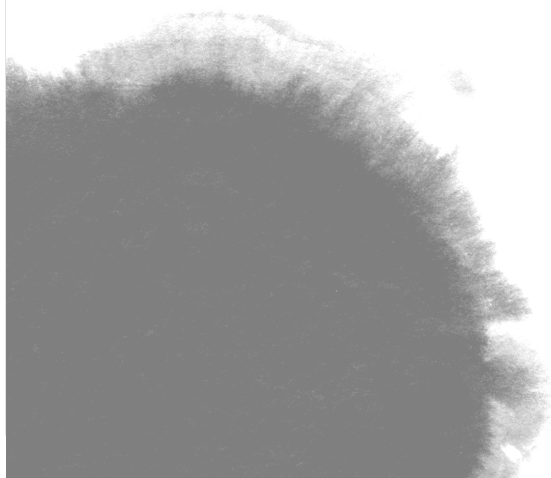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 정책과제

- (통일이전) 북한 노동력을 한국경제의 가용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경제적 기반의 구축
 - 1단계: 기존 형태의 활용 및 확장
 - 개성공단의 자연적 확장, 남북간 위탁가공교역을 발주하는 한국기업의 네트워크화 촉진, 북한의 기업의 지리적, 기술적 클러스터화 유도, 노동력이 풍부한 북한 내륙지역에서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치 등(남포 등 평남 및 함흥 등 함경지역)
 - 2단계: 북한 외부지역에서의 북한 노동력 활용

- 제3국 기업과 협력(예, 러시아 연해주 지역 또는 중국에 진출한 북한 노동력 활용 등), 제3국 대상 북한특구와의 제3국 기업과의 협력
- 3단계: 한국지역으로의 북한 노동력 유입
 - 휴전선 일대의 한국 영토 또는 남북한 공동으로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에 전용공단 설치(예, 니들섬 구상)
 - 교육 연수 등을 통한 북한 인력의 직접적 한국 유입
 - 한국기업에 의한, 한국지역에서의 북한 노동력 유입/활용
- (통일대비) 남북한 인구통합에 따른 ‘특이세대’ 등 단기적인 부정적 영향력 최소화
 - 통일 이전부터 북한주민 대상의 체계적인 인도적 지원 확대(특히 영유아 및 청소년 등 대상)
 - 북한 소도시 농촌 중심의 지역별 개발지원 사업
- 공동학술연구 등 모색
 -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남북한간 공동연구(세미나 개최 등)
 - 남북한 인구통합적 관점에서 사회 경제적 영향 측정
 - 북한인구 자질(건강, 교육 등) 향상을 위한 남북한간 교류·지원
 - 남북한의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 공동 모색

06

국가 인공전략의 기반조성



제6장 국가 인구전략의 기반조성

1. 적정인구유지 관련 ‘(가칭)모성보호육아기금’ 구축

- ☐ 목적 : 적정인구유지관련 저출산 대책에 활용
- ☐ 근거
 - 국가재정법 5조
 - 기금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의 신축적 운용 필요시 법률로써 설치
 -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 가능
- ☐ 방식 및 운영
 - 기금 유형 : 사업성 기금
 - 유사사례(2008년 기준) : 보훈기금(3295억원 조성), 청소년육성기금(2,375억원), 근로자복지진흥기금(2,730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17,583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7,343억), 여성발전기금(234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4,179억원) 등
 - 기금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 주무부처, 위탁운용

〈표 6-1〉 기금조성 내역(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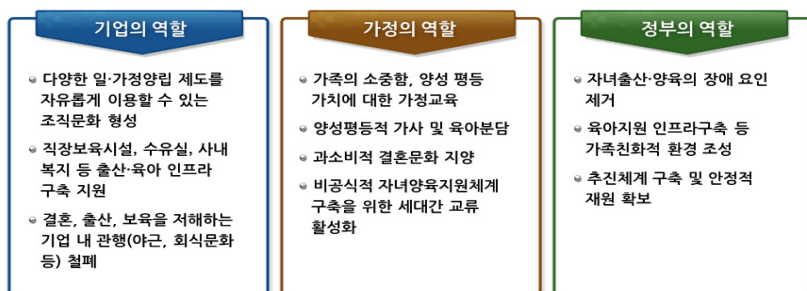
수입	주요내용	지출	주요내용
정부출연금		관리비	
민간 출연금 복권기금 전입금	◦ 기본원칙 - 일·가정양립 저해 요소, 출생이수 증가의 수혜자(영역), 수익금의 미래사회 환원 등 차원에서 기금 부과 ◦ 부과대상 - 후원금(주류업체, 아동업체 등) - 경마, 경륜, 복권 등	사업비	- 취약지역 보육인프라 지원 - 비정규직 등 모성보호(휴가휴직급여) - 다자녀 양육수당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기업 인센티브) 등
목적세	- (기본원칙)일·가정양립 저해요소 등 - (부과대상)주류세 등 * 현재 교육세 부과 중		
부담금	- 기업분담금(일·가정양립관련 의무이행 미흡 업체 등)		

2.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가적 역량결집

□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

- 일·가정양립은 출산·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없이는 현실적으로 실현 곤란
- 생명 존중, 가족의 소중함 등 가족관 변화와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없이는 정부정책 실효성 제고 곤란

[그림 6-1] 저출산 대응을 위한 각 부문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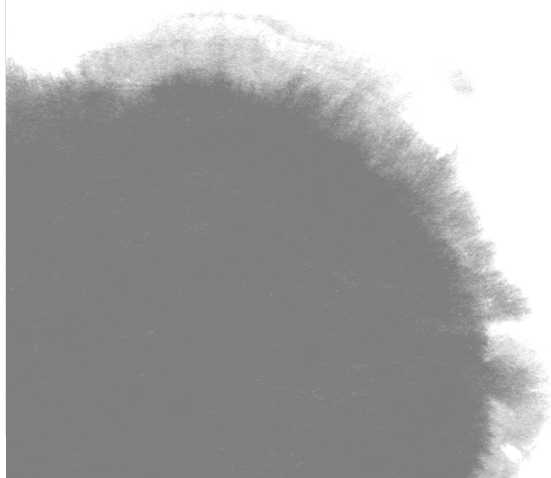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참고 문헌

- 강동욱(2011). “경쟁과 학력 과잉의 미래 대응”, 인구전략과 국가미래 제 2권, 적정인구 가능성 탐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지원(2010), 미국과 독일의 자녀부양체계 및 자녀양육비 이행제도 비교, 보건복지포럼, Vol.161, 70-82.
- 고금자(2009),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상 문제점과 부모재산분여제도 신설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상호(2011). “청년고용 해결 가능성 진단”, 인구전략과 국가미래 제 2권, 적정인구 가능성 탐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원영희·이현송·장혜경(2005).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조애저·김유경·도세록·이건우(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임성은(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진수(2011).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 인구 및 사회보험재정 전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복순(2006), 양육비 확보에 관한 법안 검토, 가족법연구, Vol.20, No.3, 73-102.

- 박호정(2011). “에너지·식량 자원의 한계와 대응”, 인구전략과 국가
미래 제 1권,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인구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법무부(2011). 2010년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 변희순·김혜영·윤홍식·한지숙(2006).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
위 변화, 한국여성개발원.
- 성명기(2009). “저출산 및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저
출산·고령화의 영향과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 신영석(2011).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100세 대응을 위한 미
래 전략 - 인구 및 사회보험재정 전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의철·박종연·이은환·차승현(2011). “질병구조 Evolution”, 인구전
략과 국가 미래 제 5권, 저출산·고령화의 삶의 질,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 여성가족부(2006). 이혼 후 자녀양육 실태에 관한 연구.
- 여성가족부(2011).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 연구.
- 윤석명(2011).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100세 대응을 위한 미
래 전략 - 인구 및 사회보험재정 전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오상훈·이상돈·구성열·최효진(2011). 미래 인구변동에 대응
한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이지혜·최효진·한진희·방하남·김현숙·우석진·최준욱·김
순옥·배성일·박효정·서문희·김혜원·이태진·신윤정·최성은
(2009). 저출산의 파급효과와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전영준·신화연·최효진(2011).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최효진·오영희·서문희·박세경·도세록(2009). 2009년도 전
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최효진·은기수·장형수(2011). 출산율에측모형개발, 한국보건

- 사회연구원.
- 전영준(2011). “출산과 경제 성장의 Dynamics”, 인구전략과 국가 미래
제 1권,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인구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영진(2010).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군 인력관리 방안”, 저출산·고
령화 사회에서의 국방인력 발전방향, 제8회 국방인력 발전 세미나
자료, 한국국방연구원.
- 조관호(2009). 국방개혁에 부응한 인력정책 발전방안, 한국국방연구원.
- 통계청(2010). 2010년 혼인·이혼통계.
- 통계청(2011). KOSIS.
- 통계청(2011). 북한통계 인구일제조사.
- 한국경영자총협회(2008). 대졸 신입사원 채용 및 재교육 현황조사.
- 한국개발연구원(2010). 미래비전 2040 - 미래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국
가발전전략.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2011). 100대 통계지표 - 경제성장률(실질, 계
절조정 전기대비).
- OECD(2011).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 OECD(2011). Factbook 2011 -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OECD(2011). Family Database.
- OECD(2011). Social Expenditure Database.
- OECD(2011). Stat(<http://stats.oecd.org>).
- OECD(2011). Taxing Wages 2009-2010.
- UN(2011). Population Prospects 2010 Revision.
- UN(2011).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0.

부 록



1. 2011년 출산율 추정 및 국민인식조사 개요

□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전국 16개 시도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 통계청 2011년 인구추계 중 20세 이상 인구 대상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법에 의한 층화비례추출법 적용

○ 조사방법

- 전화조사 면접방법

○ 조사기간

- 2011년 10월 24일 ~ 2011년 10월 28일

2. 2011년 출산율 추정 및 국민인식조사 주요 결과

□ 최근 출생아 수 증가 체감 정도

-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느끼는 비율은 전체 약 35%로 높지 않음.

- 가임기인 20~40대 남성, 여성 모두 출생아 수 증가를 크게 느끼지 못함.

- 그러나 현재 시점의 자녀 출산에 가장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 3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출생아 수가 매우 증가했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남성 9.0%, 여성 6.8%) 이는 주변에 있는 동일 연령대의 자녀 출산의 영향 때문으로 볼 수 있음.

〈표 1〉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7개월 동안 출생아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전보다 신생아가 증가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까?

(단위: %, 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잘 모르겠다	계(명)	χ^2
전체	5.2	29.8	43.8	20.6	0.6	100.0(1,000)	18.3
20대	3.4	29.0	43.8	22.7	1.1	100.0(176)	
30대	7.9	32.7	44.9	13.6	0.9	100.0(214)	
40대	3.6	32.7	44.1	19.6	0.0	100.0(220)	
50대이상	5.4	26.9	43.1	24.1	0.5	100.0(390)	
남성	3.9	25.3	47.5	18.3	0.4	100.0(491)	26.3**
20대	1.1	24.4	44.4	27.8	2.2	100.0(90)	
30대	9.0	26.1	50.5	14.4	0.0	100.0(111)	
40대	2.7	29.5	44.6	23.2	0.0	100.0(112)	
50대이상	2.8	22.5	48.9	25.8	0.0	100.0(178)	
여성	6.5	34.2	45.9	28.2	0.8	100.0(509)	11.4
20대	5.8	33.7	43.0	17.4	0.0	100.0(86)	
30대	6.8	39.8	38.8	12.6	1.9	100.0(103)	
40대	4.6	36.1	43.5	15.7	0.0	100.0(108)	
50대이상	7.6	30.7	38.2	22.6	0.9	100.0(212)	

- 최근 사회적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이 신생아 증가에 미치는 영향
- 전체 과반수 이하(49.0%)의 응답자가 출산장려 분위기가 신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여 출산장려 분위기가 신생아수 증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주요 가임층인 30대 여성의 응답비율이 4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인 분위기 형성만으로는 실제 자녀 출산으로 이어지기 어려움을 알 수 있음.

〈표 2〉 최근 사회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귀하는 이것이 신
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잘 모르겠다	계(명)	χ^2
전체	8.3	40.7	42.8	7.5	0.7	100.0(1,000)	21.3*
20대	10.2	39.2	42.1	8.0	0.6	100.0(176)	
30대	3.7	36.0	50.0	9.4	0.9	100.0(214)	
40대	6.8	40.5	42.3	9.6	0.9	100.0(220)	
50대이상	10.8	44.1	39.5	5.1	0.5	100.0(390)	
남성	7.7	38.3	45.4	7.9	0.6	100.0(491)	14.9
20대	13.3	37.8	43.3	5.6	0.0	100.0(90)	
30대	5.4	33.3	50.5	9.9	0.9	100.0(111)	
40대	3.6	37.5	46.4	11.6	0.9	100.0(112)	
50대이상	9.0	42.1	42.7	5.6	0.6	100.0(178)	
여성	8.8	43.0	40.3	7.1	0.8	100.0(509)	16.8
20대	7.0	40.7	40.7	10.5	1.2	100.0(86)	
30대	1.9	38.8	49.5	8.7	1.0	100.0(103)	
40대	10.2	43.5	38.0	7.4	0.9	100.0(108)	
50대이상	12.3	45.8	36.8	4.7	0.5	100.0(212)	

□ 최근 정부 정책지원 강화가 신생아 증가에 미치는 영향

- 전체 응답자 과반수 이하만이(46.7%) 정부 정책지원이 신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함.
- 특히 주요 가임층인 30대의 응답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데, 이는 정책지원의 사각지대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나, 받고 있더라도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음.

〈표 3〉 출산율 증가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정부의 노력이 신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잘 모르겠다	계(명)	χ^2
전체	8.1	38.6	44.6	8.5	0.2	100.0(1,000)	47.6***
20대	11.4	30.1	49.4	8.5	0.6	100.0(176)	
30대	6.1	30.4	49.1	14.5	0.0	100.0(214)	
40대	5.9	37.3	45.9	10.9	0.0	100.0(220)	
50대이상	9.0	47.7	39.2	3.9	0.3	100.0(390)	
남성	7.7	38.3	43.4	10.2	0.4	100.0(491)	26.9**
20대	11.1	27.8	51.1	8.9	1.1	100.0(90)	
30대	6.3	31.5	46.9	15.3	0.0	100.0(111)	
40대	6.3	33.9	47.3	12.5	0.0	100.0(112)	
50대이상	7.9	50.6	34.8	6.2	0.6	100.0(178)	
여성	8.5	38.9	45.8	6.9	0.0	100.0(509)	25.9**
20대	11.6	32.6	47.7	8.1	0.0	100.0(86)	
30대	5.8	29.1	51.5	13.6	0.0	100.0(103)	
40대	5.6	40.7	44.4	9.3	0.0	100.0(108)	
50대이상	9.9	45.3	42.9	1.9	0.0	100.0(212)	

□ 최근 경제성장이 신생아 증가에 미치는 영향

- 전체 응답자의 34.4%만이 경제성장이 신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함.
- 주요 가임층인 30대의 응답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낮게 나타나 경제 성장이 신생아 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표 4〉 2010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귀하는 경제성장이 신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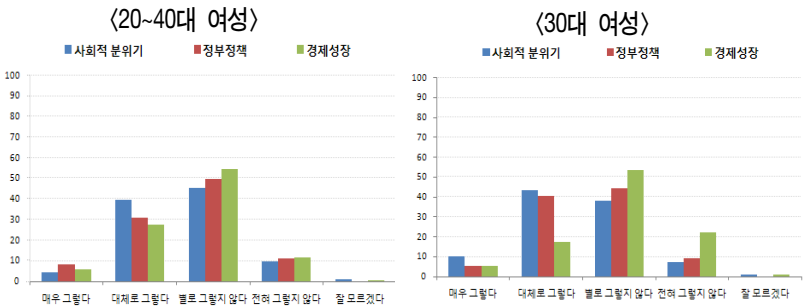
(단위: %, 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계(명)	χ^2
전체	6.1	28.3	50.2	14.6	0.8	100.0(1,000)	18.5
20대	8.0	31.3	48.9	11.4	0.6	100.0(176)	
30대	4.2	24.3	53.7	17.3	0.5	100.0(214)	
40대	4.6	23.6	52.7	18.6	0.5	100.0(220)	
50대이상	7.2	31.8	47.4	12.3	1.3	100.0(390)	
남성	5.3	28.7	49.1	16.7	0.2	100.0(491)	10.7
20대	8.9	31.1	43.3	15.6	1.1	100.0(90)	
30대	3.6	24.3	53.2	18.9	0.0	100.0(111)	
40대	3.6	29.5	51.8	15.2	0.0	100.0(112)	
50대이상	5.6	29.8	47.8	16.9	0.0	100.0(178)	
여성	6.9	27.9	51.3	12.6	1.4	100.0(509)	26.9**
20대	7.0	31.4	54.7	7.0	0.0	100.0(86)	
30대	4.9	24.3	54.4	15.5	1.0	100.0(103)	
40대	5.6	17.6	53.7	22.2	0.9	100.0(108)	
50대이상	8.5	33.5	47.2	8.5	2.4	100.0(212)	

□ 최근 신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0~40대 여성)

- 20~40대 가임기 여성은 사회적 분위기, 정부 정책, 경제성장의 순으로 신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함.
- 주요 가임층인 30대 여성들이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 정책이 신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1] 신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



□ 정부 출산지원정책 강화 시 신생아 증가에 미치는 영향

- 전체 응답자의 다수(76.1%)가 출산지원정책 강화 시 출산 증가를 예상함.
 - 특히 향후 자녀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 20대에서 정부지원정책의 영향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남성 81.1%, 여성 88.4%)

〈표 5〉 정부가 출산지원정책을 지금보다 강화한다면 신생아 출산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잘 모르겠다	계(명)	χ^2
전체	28.0	48.1	19.6	4.1	0.2	100.0(1,000)	34.6***
20대	35.8	48.9	9.1	6.3	0.0	100.0(176)	
30대	26.2	49.5	20.6	3.7	0.0	100.0(214)	
40대	19.1	49.1	26.8	5.0	0.0	100.0(220)	
50대이상	30.5	46.4	19.7	2.8	0.5	100.0(390)	
남성	26.5	49.9	18.7	4.9	0.0	100.0(491)	19.3*
20대	24.4	56.7	10.0	8.9	0.0	100.0(90)	
30대	28.8	48.7	18.9	3.6	0.0	100.0(111)	
40대	17.0	50.9	26.8	5.4	0.0	100.0(112)	
50대이상	32.0	46.6	18.0	3.4	0.0	100.0(178)	
여성	29.5	46.4	20.4	3.3	0.4	100.0(509)	27.3**
20대	47.7	40.7	8.1	3.5	0.0	100.0(86)	
30대	23.3	50.5	22.3	3.9	0.0	100.0(103)	
40대	21.3	47.2	26.9	4.6	0.0	100.0(108)	
50대이상	29.3	46.2	21.2	2.4	0.9	100.0(212)	

□ 신생아 증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정책(1순위)

- 가장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보육료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육아 휴직 활성화 순서로 나타남.
 - 20~30대 여성에서 보육료지원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남성, 여성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이돌보미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 하며, 20~30대에서는 주거 및 보건의료 지원, 육아휴 직 활성화를 중시함.

〈표 6-1〉 다음 출산지원정책 중 신생아 증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순위)

(단위: %, 명)

	보육료 지원	아이 돌보미 지원	신혼부부 다자녀 주거지원	임신출산 보건의료 지원	육아휴직 활성화	가족친화 기업문화	계(명)	χ^2
전체	48.9	19.7	8.7	7.3	11.9	3.5	100.0(1,000)	48.9***
20대	48.9	8.0	11.4	13.6	17.6	0.6	100.0(176)	
30대	50.9	18.2	9.4	7.0	11.7	2.8	100.0(214)	
40대	51.4	20.9	6.8	4.1	11.8	5.0	100.0(220)	
50대이상	46.4	25.1	8.2	6.4	9.5	4.4	100.0(390)	
남성	49.1	16.1	13.0	8.8	8.6	4.5	100.0(491)	27.3*
20대	45.6	7.8	18.9	15.6	11.1	1.1	100.0(90)	
30대	49.6	18.9	11.7	9.9	7.2	2.7	100.0(111)	
40대	57.1	13.4	10.7	3.6	9.8	5.4	100.0(112)	
50대이상	45.5	20.2	12.4	7.9	7.3	6.7	100.0(178)	
여성	48.7	23.2	4.5	5.9	15.1	2.6	100.0(509)	34.9**
20대	52.3	8.1	3.5	11.6	24.4	0.0	100.0(86)	
30대	52.4	17.5	6.8	3.9	16.5	2.9	100.0(103)	
40대	45.4	28.7	2.8	4.6	13.9	4.6	100.0(108)	
50대이상	47.2	29.3	4.7	5.2	11.3	2.4	100.0(212)	

□ 신생아 증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정책(2순위)

- 2순위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아이돌보미 지원, 육아휴직 활성화, 임신, 출산 보건의료 지원의 순서로 나타남.

〈표 6-2〉 다음 출산지원정책 중 신생아 증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순위)

(단위: %, 명)

	보육료 지원	아이 돌보미 지원	신혼부부 다자녀 주거지원	임신출산 보건의료 지원	육아휴직 활성화	가족친화 기업문화	계(명)	χ^2
전체	14.2	24.0	13.9	17.1	21.7	9.1	100.0(1,000)	21.8
20대	13.1	26.1	13.6	13.6	26.1	7.4	100.0(176)	
30대	15.4	19.2	9.8	21.0	22.9	11.7	100.0(214)	
40대	13.6	26.4	15.5	14.1	18.2	12.3	100.0(220)	
50대이상	14.4	24.4	15.4	18.2	21.0	6.7	100.0(390)	
남성	13.7	22.2	17.1	15.3	20.0	11.8	100.0(491)	18.8
20대	12.2	18.9	20.0	14.4	24.4	10.0	100.0(90)	
30대	14.4	18.9	10.8	17.1	25.2	13.5	100.0(111)	
40대	9.8	24.1	18.8	12.5	17.0	17.9	100.0(112)	
50대이상	16.3	24.7	18.5	16.3	16.3	7.9	100.0(178)	
여성	14.7	25.7	10.8	18.9	23.4	6.5	100.0(509)	17.2
20대	14.0	33.7	7.0	12.8	27.9	4.7	100.0(86)	
30대	16.5	19.4	8.7	25.2	20.4	9.7	100.0(103)	
40대	17.6	28.7	12.0	15.7	19.4	6.5	100.0(108)	
50대이상	12.7	24.1	12.7	19.8	25.0	5.7	100.0(212)	

□ 출산율 증가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부의 지원

- 출산율 증가를 위해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기업의 출산지원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30대에서 일-가정 양립 환경과 기업의 출산지원 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7〉 귀하는 우리 사회 출산율 증가를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 외에 어떠한 부분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단위: %, 명)

	기업의 출산지원 노력	출산 사회문화적 지지	출산가능 연령가치관 변화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기타	계(명)	χ^2
전체	29.5	17.0	19.3	33.7	0.5	100.0(1,000)	44.7***
20대	31.3	16.5	17.1	34.7	0.6	100.0(176)	
30대	21.0	20.6	14.0	44.4	0.0	100.0(214)	
40대	24.6	18.2	21.4	34.1	1.8	100.0(220)	
50대이상	36.2	14.6	22.1	27.2	0.0	100.0(390)	
남성	28.5	18.3	21.8	30.8	0.6	100.0(491)	56.5***
20대	27.8	20.0	21.1	31.1	0.0	100.0(90)	
30대	18.9	15.3	14.4	51.4	0.0	100.0(111)	
40대	19.6	20.5	25.9	31.3	2.7	100.0(112)	
50대이상	40.5	18.0	24.2	17.4	0.0	100.0(178)	
여성	30.5	15.7	16.9	36.5	0.4	100.0(509)	18.8†
20대	34.9	12.8	12.8	38.4	1.2	100.0(86)	
30대	23.3	26.2	13.6	36.9	0.0	100.0(103)	
40대	29.6	15.7	16.7	37.0	0.9	100.0(108)	
50대이상	32.6	11.8	20.3	35.4	0.0	100.0(212)	

□ 향후 신생아 수 변화 예측

- 전체 응답자 중 현재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3.1%), 이는 현재의 출산율이 사회적 규범(norm)으로 고착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미 출산을 마친 고연령층에서 낙관적으로 예상하는 경향이 있으나, 가임기 중에서도 30대의 신생아 증가 예상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표 8〉 귀하는 앞으로 신생아 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명)

	매우 증가	다소 증가	현재 수준지속	다소 감소	매우 감소	잘 모르겠다	계(명)	χ^2
전체	2.1	30.3	43.1	21.8	2.6	0.1	100.0(1,000)	53.2* **
20대	3.4	26.7	48.3	18.8	2.8	0.0	100.0(176)	
30대	0.9	18.7	50.0	26.2	4.2	0.0	100.0(214)	
40대	0.5	26.4	45.5	26.4	1.4	0.0	100.0(220)	
50대이상	3.1	40.5	35.6	18.2	2.3	0.3	100.0(390)	
남성	2.4	29.5	43.0	21.8	3.1	0.2	100.0(491)	30.2*
20대	4.4	26.7	46.7	20.0	2.2	0.0	100.0(90)	
30대	0.0	19.8	48.7	26.1	5.4	0.0	100.0(111)	
40대	0.9	25.0	45.5	26.8	1.8	0.0	100.0(112)	
50대이상	3.9	39.9	36.0	16.9	2.8	0.6	100.0(178)	
여성	1.8	31.0	43.2	21.8	2.2	0.0	100.0(509)	26.9* *
20대	2.3	26.7	50.0	17.4	3.5	0.0	100.0(86)	
30대	1.9	17.5	51.5	26.2	2.9	0.0	100.0(103)	
40대	0.0	27.8	45.4	25.9	0.9	0.0	100.0(108)	
50대이상	2.4	41.0	35.4	19.3	1.9	0.0	100.0(212)	

□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없을 때 예상 출산 자녀 수

- 응답자의 연령 및 성별에 상관없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없을 시 평균 2.5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것이라고 예상함.
- 자녀 수 감소에서 소자녀 가치관 보다 양육환경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음.

〈표 9〉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사람들이 보통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명)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평균	계(명)	χ^2
전체	4.7	44.6	43.7	5.4	1.6	2.55	100.0(1,000)	45.4* **
20대	7.4	56.8	33.0	2.3	0.6	2.31	100.0(176)	
30대	5.6	52.3	37.9	4.2	0.0	2.41	100.0(214)	
40대	3.6	38.2	50.9	4.6	2.7	2.65	100.0(220)	
50대이상	3.6	38.5	47.7	8.0	2.3	2.67	100.0(390)	
남성	5.7	46.0	43.4	4.1	0.8	2.48	100.0(491)	27.9* *
20대	11.1	52.2	34.4	2.2	0.0	2.28	100.0(90)	
30대	4.5	58.6	32.4	4.5	0.0	2.37	100.0(111)	
40대	5.4	36.6	54.5	2.7	0.9	2.57	100.0(112)	
50대이상	3.9	41.0	47.8	5.6	1.7	2.60	100.0(178)	
여성	3.7	43.2	44.0	6.7	2.4	2.61	100.0(509)	29.7* *
20대	3.5	61.6	31.4	2.3	1.2	2.36	100.0(86)	
30대	6.8	45.6	43.7	3.9	0.0	2.45	100.0(103)	
40대	1.9	39.8	47.2	6.5	4.6	2.72	100.0(108)	
50대이상	3.3	36.3	47.6	9.9	2.8	2.73	100.0(212)	

□ 국가 안정적 발전 위해 필요한 출산 자녀 수

-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평균 약 2.8명의 자녀가 필요하다고 봄.
-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자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없을 시 출산을 예상하는 자녀수보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평균 약 0.2명 높게 나타남.

〈표 10〉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사람들이 몇 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평균	차이	계(명)	χ^2
전체	1.1	34.8	53.5	8.5	2.1	2.76	-0.21	100.0(1,000)	104.5***
20대	0.6	52.8	43.2	2.3	1.1	2.51	-0.20	100.0(176)	
30대	1.4	44.9	50.9	2.8	0.0	2.55	-0.14	100.0(214)	
40대	1.8	36.4	50.9	10.5	0.5	2.71	-0.06	100.0(220)	
50대이상	0.8	20.3	61.0	13.3	4.6	3.01	-0.34	100.0(390)	
남성	1.0	37.1	54.6	6.3	1.0	2.69	-0.21	100.0(491)	42.4***
20대	1.1	52.2	42.2	2.2	2.2	2.52	-0.24	100.0(90)	
30대	0.9	47.8	49.6	1.8	0.0	2.52	-0.15	100.0(111)	
40대	1.8	37.5	53.6	7.1	0.0	2.66	-0.09	100.0(112)	
50대이상	0.6	22.5	64.6	10.7	1.7	2.90	-0.30	100.0(178)	
여성	1.2	32.6	52.5	10.6	3.1	2.82	-0.21	100.0(509)	66.3***
20대	0.0	53.5	44.2	2.3	0.0	2.49	-0.13	100.0(86)	
30대	1.9	41.8	52.4	3.9	0.0	2.58	-0.13	100.0(103)	
40대	1.9	35.2	48.2	13.9	0.9	2.77	-0.05	100.0(108)	
50대이상	0.9	18.4	58.0	15.6	7.1	3.09	-0.36	100.0(212)	

□ 현재 대한민국 인구밀도에 대한 의견

- 현재 대한민국 인구밀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2.7%가 다소 높거나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역시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1〉 귀하는 현재 대한민국(남한)의 인구밀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명)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잘 모르겠다	계(명)	χ^2
전체	13.0	39.7	42.0	4.6	0.7	100.0(1,000)	16.2
20대	15.3	37.5	42.6	4.6	0.0	100.0(176)	
30대	12.6	43.0	40.2	4.2	0.0	100.0(214)	
40대	14.6	40.5	39.1	5.9	0.0	100.0(220)	
50대이상	11.3	38.5	44.4	4.1	1.8	100.0(390)	
남성	16.5	40.1	37.9	5.3	0.2	100.0(491)	8.1
20대	20.0	35.6	40.0	4.4	0.0	100.0(90)	
30대	14.4	46.9	34.2	4.5	0.0	100.0(111)	
40대	17.9	39.3	34.8	8.0	0.0	100.0(112)	
50대이상	15.2	38.8	41.0	4.5	0.6	100.0(178)	
여성	9.6	39.3	46.0	3.9	1.2	100.0(509)	10.0
20대	10.5	39.5	45.4	4.7	0.0	100.0(86)	
30대	10.7	38.8	46.6	3.9	0.0	100.0(103)	
40대	11.1	41.7	43.5	3.7	0.0	100.0(108)	
50대이상	8.0	38.2	47.2	3.8	2.8	100.0(212)	

□ 미래 한국의 적정인구 규모 예상

- 한국의 적정인구 규모로는 현 수준의 인구 유지(4천만~5천만)을
응답한 비율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약 80%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보다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음.

〈표 12〉 미래 한국의 적정인구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명)

	2천만~3천만	3천만~4천만	4천만~5천만	5천만~6천만	기타	계(명)	χ^2
전체	3.2	18.6	42.7	33.9	1.6	100.0(1,000)	19.8*
20대	2.8	23.3	44.9	26.1	2.8	100.0(176)	
30대	3.3	21.0	41.6	33.6	0.5	100.0(214)	
40대	5.5	17.3	37.7	38.2	1.4	100.0(220)	
50대이상	2.1	15.9	45.1	35.1	1.8	100.0(390)	
남성	2.7	15.5	41.3	37.3	3.3	100.0(491)	13.1
20대	1.1	16.7	50.0	26.7	5.6	100.0(90)	
30대	1.8	18.0	38.7	40.5	0.9	100.0(111)	
40대	4.5	16.1	37.5	39.3	2.7	100.0(112)	
50대이상	2.8	12.9	41.0	39.3	3.9	100.0(178)	
여성	3.7	21.6	44.0	30.7	0.0	100.0(509)	15.8*
20대	4.7	30.2	39.5	25.6	0.0	100.0(86)	
30대	4.9	24.3	44.7	26.2	0.0	100.0(103)	
40대	6.5	18.5	38.0	37.0	0.0	100.0(108)	
50대이상	1.4	18.4	48.6	31.6	0.0	100.0(212)	

3. 2011년 출산율 추정 및 국민인식 조사표

최근 출산동향 관련 국민인식조사

ID

--	--	--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하는 것으로, 최근 출산 동향과 관련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향후 출산관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귀중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응답 내용은 익명으로 전산 처리되어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소	동 / 읍 / 면		조사원 이름	
시군구	명칭			
	코드	('시=1, 군=2, 구=3'으로 기입)		
동·읍·면	명칭			
	코드	('동=1, 읍=2, 면=3'으로 기입)		
응답자 성별	① 남 ② 여		응답자 연령	만 _____ 세
전화번호				

1.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7개월 동안 출생아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주변에서 이전보다 신생아가 증가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별로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잘 모르겠다

2. 최근 사회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귀하는 이것이 신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별로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잘 모르겠다

3. 출산율 증가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이 신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별로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잘 모르겠다

4. 2010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귀하는 경제성장이 신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별로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잘 모르겠다

5. 정부가 출산지원정책을 지금보다 강화한다면 신생아 출산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별로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잘 모르겠다

6. 다음의 출산지원정책 중 신생아 증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주십시오)

- ☐① 보육료 지원
- ☐② 아이돌보미 지원
- ☐③ 신혼부부, 다자녀주거 지원
- ☐④ 임신과 출산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
- ☐⑤ 육아휴직 활성화
- ☐⑥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 ☐⑦ 잘 모르겠다

7. 귀하는 우리 사회 출산율 증가를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 외에 어떠한 부분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기업들의 출산 지원 노력
- ☐② 출산에 대한 사회문화적 지지
- ☐③ 출산가능 연령 남녀의 가치관 변화
- ☐④ 일·가정 양립 환경의 조성
- ☐⑤ 기타

8. 귀하는 앞으로 신생아 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증가할 것이다
- ☐② 다소 증가할 것이다
- ☐③ 현재 수준이 지속될 것이다
- ☐④ 다소 감소할 것이다
- ☐⑤ 매우 감소할 것이다
- ☐⑥ 잘 모르겠다

9.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사람들이 보통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

10. 귀하는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사람들이 몇 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

11. 귀하는 현재 대한민국(남한)의 인구밀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다소 그렇다
- ☐③ 별로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잘 모르겠다

12. 미래 한국의 적정인구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2천만~3천만 규모
- ☐② 3천만~4천만 규모
- ☐③ 4천만~5천만 규모
- ☐④ 5천만~6천만 규모
- ☐⑤ 기타

13. 귀하는 만으로 몇 세이십니까?

만 세

14. 응답자 성별 (조사원 체크)

- ☐① 남성
- ☐② 여성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